

월간

재정포럼 12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0년 12월호 제174호

현안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이은경
- 국제조세회피 방지 관련 정보교환 논의와 현안과제 / 홍범교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와 활용: 알리오시스템을 중심으로 / 허경선

정책토론포트

- 제2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녹색재정개혁(Green Fiscal Reform)의 추진을... · 구정모
현안분석	06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 이은경 26 국제조세회피 방지 관련 정보교환 논의와 현안과제 · 홍범교 44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와 활용: 알리오시스템을 중심으로 · 허경선
정책토론포트	76 제2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87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공공정책포럼	97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정운동 방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102 이탈리아, 피지배외국회사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발표 외
정책흐름	117 2011년 예산 국회 확정 주요 내용 120 2010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128 서민생활 밀접품목 물가동향 및 대책 130 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 예고 133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품목 확대 136 OECD, 경제전망 발표
재정통계	140 OECD 국가의 총 조세 세입 변동 추이
이슈 & 포커스	144 가족친화 중소기업에 법인세 4% 감면해야 외

녹색재정개혁(Green Fiscal Reform)의 추진을...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들어 인류사회는 경제, 환경 및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범세계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1930년대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추락과 실업의 급증을 가져온 대공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야심찬 뉴딜(New Deal)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는 경제위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합적 정책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엔(UN)이나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강조해 왔고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재확인한 바 있다.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와 자원 고갈이 이미 우리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되면 실업이나 빈곤이 전례 없이 악화될지도 모르지만 이 역시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전략적 과제는 경제활동, 자원이용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리하여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녹색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개화된’ 정치적 전략이 필요

지난 2년간 구미 각국 및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막대한 공공자금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몇몇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었고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 가능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실 엄청난 규모의 재정자금 투입이 보다 지속가능한 형태로 ‘경제의 녹색화(greening the economy)’와 생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생태적 전환을 기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한다. 이는 물론 쉽지 않은 과제이며

‘개화된(enlightened)’ 정치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즉 ‘녹색뉴딜’의 추진을 위해 가장 적합한 부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가장 잘 실천하도록 했어야 했다.

지난 2년여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녹색성장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얼마나 ‘개화된’ 정치적 전략으로 추진하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집행 따로, 녹색성장정책 예산 따로 집행이 된 것은 아닌지, 중복 지출이나 투자는 없었는지, 칸막이성 정책 추진은 아니었는지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꼼꼼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복합적 위기극복 대응, 통합적 정책 추진으로 접근해야

작금의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및 환경보전을 위한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통합적 정책의 추진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는 종래의 재정정책의 틀로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녹색화(greenization) 즉 지속가능한 녹색재정개혁(green fiscal reform)이 추진되어야 한다. 녹색재정개혁은 녹색예산 및 조세개혁(green budget and tax reform)을 의미하며, 녹색예산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분야의 즉각적인 회복을 위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녹색화하고, 생태적 현대화와 생산 및 소비부문의 구조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장을 지원할지 등 보다 실천적 정책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녹색재정개혁의 또 하나의 축인 녹색 또는 에코 조세개혁은 조세부담을 전형적인 조세 즉 일자리, 소득 및 이윤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조세를 환경오염 및 파괴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세로 전가시키는 국세체계의 개혁을 의미한다. 이는 “태우는 것은 지불하고, 버는 것은 지불하지 않는다(Pay as you burn, not pay as you earn).”라는 정치적 공식이 그대로 적용 되는 사례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행위(goods)보다는 나쁜 행위(bads)에 보다 많은 세부담을 시켜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적절한 시그널링을 보내고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서 전체적인 세부담이 바람직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데 있다.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은 지난 20년간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근에

.....
 지난 2년여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녹색성장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얼마나 ‘개화된’
 정치적 전략으로
 추진하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녹색가교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녹색재정개혁 추진에
 시급히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이다.

.....

는 영국, 독일 및 북구 국가는 녹색재정개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경제 전체의 별다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격히 줄어들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신산업이 발굴·육성되고, 경제위기 후 재정안정을 가져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종래의 어떤 정책도 이루지 못한 성과라 할 수 있는데,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를 감축해야 하고, 일자리도 늘려야 하고, 신성장동력도 창출해야 하고, 재정건전성도 제고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더구나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녹색가교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녹색재정개혁 추진에 시급히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이은경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제조세회피 방지 관련 정보교환 논의와
현안과제
홍범교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와 활용:
알리오시스템을 중심으로
허경선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eklee@kipf.re.kr)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노인부양 관련 재정 요구액이 증가하고 노인의 건강증진, 생활안정 등 개인적인 욕구에서부터 고용, 사회통합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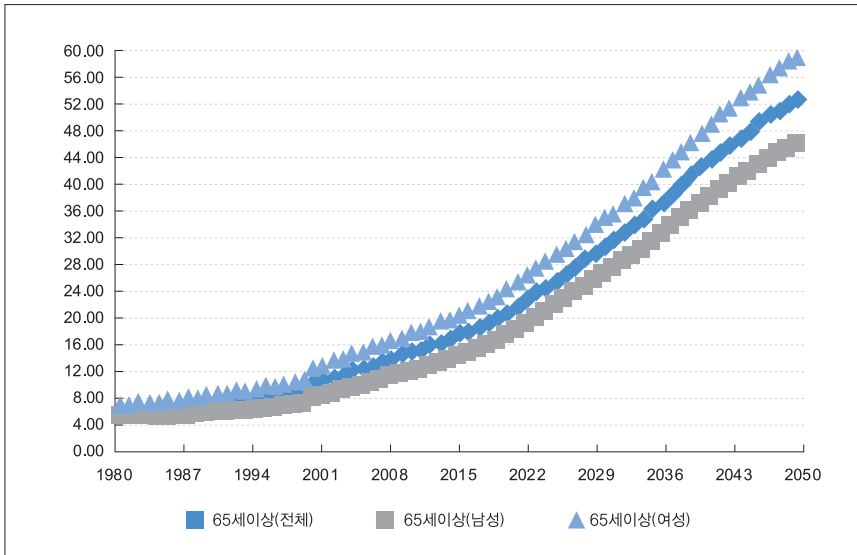
I.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대를 넘어 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9년 현재 그 비율이 10.5%까지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인구에 속할 전망이다 ([그림 1 참조]). 노인인구 비율이 14%이면 고령사회, 20%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함에 따라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불과 8년 후인 2026년에 초고령 사회를 맞을 전망이다. 이는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노인부양 관련 재정 요구액이 증가하고 노인의 건강증진, 생활안정 등 개인적인 욕구에서부터 고용, 사회통합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경제적 문제(41.4%)와 건강문제(40.3%)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화하기 위해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및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 추이

(단위: %)



출처: 통계청 kosis 자료 (연령별 전국 추계 인구)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노인인구의 의료비 증가가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 1>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 진행 상황

국 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연수	
	고령화(7%)	고령(14%)	초고령(20%)	7% → 14%	14% → 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스웨덴	1887	1972	2014	85	42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노인인구의 의료비 증가가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200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30.5% 차지). 그런데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소비뿐만 아니라 고령에 의해, 혹은 고령에 따르는 질병으로 인해 제대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노인들을 수발하는 요양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은 단기적 치료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동안은 자녀나 배우자가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높았는데, 사회가 발전하고 여성들의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대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도입되었고, 제도 도입 3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 이 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하고,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동 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II.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1. 도입 목적

노인장기요양법 제1장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노인 수발 서비스를 사회화하여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을 의미한다(윤희숙 외, 2010).

동 제도와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동 제도는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달리, 대상범위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를 선정, 이용자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정부 및 지자체뿐만 아니라 보험료와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¹⁾.

2. 기대효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제 전반 및 재정의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의 건강기능이 개선되어 의료서비스 이용량(입원일수 및 진료 강도) 감소를 통해 노인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노인의료비가 큰 부담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제도 시행 2년 후 평가자료(2010)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 까지 연속하여 요양서비스를 이용중인 23,000명(3년 연속 등급판정)에 대해 기능상태 변화 조사결과, 요양등급이 개선(2.38 등급 → 2.43 등급, 등급이 낮을 수록 중증환자)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의 행동(망상, 길잃음 등)이나 의사소통 장애의 호전, 시설이용자의 경우 욕창 발생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6.3% → 3.7%). 그리고 이들의 연간 입원일수도 감소하였는데, 재가이용자의 경우 연간 8.87일에서 6.41일로, 시설이용자의 경우 연간 7.45일에서 2.21일로 감소하였다. 또한 입원을 자체도 제도 시행 이전인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22.3%에서 17.5%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1년간 총 1,475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09. 12, 건강보험공단)하고 있다.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입원일수 및 입원을 감소에 인과 효과(causal effect)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효과의 크기는 얼마인지 등은 단순히 두 시점 간 숫자 비교를 통해서만 대답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건강개선 효과,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시 데이터를 이용해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후 실증분석을 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과제라고 판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두 번째 기대효과는, 동 보험의 도입으로 그동안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했던 자녀 및 배우자의 신체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대신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기대효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요양 관련 일자리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및 그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24만개 증가(2010년 4월 기준)하였고, 경제 전반에 창출된 부가가치는 2010년 3.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기능이 개선되어 의료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통해 노인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노인의료비가 큰 부담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1)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정의한다.

3. 급여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²⁾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³⁾로 정의한다. 이를 판정하기 위해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지표화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출한 후 상위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로 지정한다.

〈표 2〉 장기요양 판정등급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일상생활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최중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상상태로 스스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 •중증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문제행동을 보임 	전적	95점 이상
2등급 (중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상태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의 행동을 가끔 보임 	상당 부분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중등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가사일, 외출 등에 있어 도움 필요 	부분적	55점 이상 75점 미만

출처: 박형수 · 전병목 (2009), <http://www.longtermcare.or.kr/>

2008년 7월 제도 수립 당시에는 65세 인구의 3.1%(14만명)를 급여대상자로 추정하였으나 2008년 말 4.3%, 2009년 말 5.2%, 2010년 4월 현재에는 5.6% 까지 급여대상자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급여대상자가 당초 예측보다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제도 시행 직후 실제 급여대상자보다 적은 수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그 적체된 수요가 시간에 걸쳐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적체 수요가 해소되기 전까지 급여대상자 수는 일정기간 계속 증가하되 감소하는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주로 80세 이상 후기노령인구(45%)이고, 치매·중풍 질환자(54%)가 다수이며, 성비에서는 평균수명이 긴 여성(71%) 수혜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의해서 살펴볼 점은 급여대상자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모두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인데, 급여대상자 추세가 증가하면서 실제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2)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3)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중등증(요양 1등급~3등급) 대상으로 실시

〈표 3〉 적용인구(가입자)

구 분		'08. 7월	'08. 12월	'09	'10. 4월
대상자	인정자	14만명(노인인구의 2.9%)	21만명 (4.3%)	26만명 (5.2%)	30만명 (5.6%)
	이용자	7만명	15만명	18만명	26만명
	이용률	52.2%	69.4%	69.2%	86.7%

출처: 2010년 6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 『국민의 삶』 좋아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내용은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고, 현물급여는 다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4. 급여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6조에 잘 정리되어 있다. 요약하면 급여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고, 현물급여는 다시 재가급여(집에서 요양서비스 받음)와 시설급여(노인요양 전문시설에서 서비스 받음)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다시 6가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 현금급여는 다시 3가지(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분한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 소개는 〈표 4〉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내용

급여 종류	급여 내용	
재가 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료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 관련 지원하는 급여 *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특별 급여	가족 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현금 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출처: <http://www.longtermcare.or.kr/>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의 경우에는 방문시간당 요금이 부과되고, 단기보호는 등급별로 방문간호는 치료장소에 따라 요금이 차별화된다.

5. 급여비용(수가)

각각 급여종류에 따른 급여비용 수가는 <표 5>에 정리해 놓았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의 경우에는 방문시간당 요금이 부과되고, 단기보호는 등급별로, 방문간호는 치료장소에 따라 요금이 차별화된다. 시설급여 역시 등급과 요양시설별로 요금체계가 달라진다. 현금급여에서 가족요양비의 경우에는 등급에 상관없이 1개월당 15만원씩 지급한다.

<표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용(수가)

급여 종류		급여 비용							
재가 급여	방문요양	방문시간당 요금부과(단위: 원)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0,680	16,120	21,360	26,700	30,200	33,500	36,600	39,500
		주: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방문목욕	차량 이용시 (1회당)			차량 미이용시 (1회당)				
		71,290원			39,590원				
재가 급여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대상자가 병원방문			의사가 가정방문				
		의료기관(보건의료원포함)			15,760원		50,780원		
		보건기관(보건소및보건지소)			4,170원		9,370원		
		간호시간 < 30분		30분 ≤ 간호시간 < 60분		60분 ≤ 간호시간			
	28,700원		36,650원		44,600원				
	주: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재가 급여	주·야간보호	1일당 보호시간 (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4,960	22,740	19,14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33,280	30,320	25,52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41,600	37,900	31,90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45,760	41,690	35,090			
	12시간 이상		49,920	45,480	38,280				
재가 급여	단기보호	1등급		2등급		3등급			
		43,300원		39,600원		35,900원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시설급여	구분 (1일당) (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노인요양시설(구노인복지법)			38,610	34,980	31,34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43,300	39,600	35,9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48,900	45,290	41,6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900	45,290	41,670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1등급		2등급		3등급			
				150,000원 / 1개월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출처: <http://www.longtermcare.or.kr/>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현황과 추계

1.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국고, 본인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가.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일정 비율(2010년 현재 6.55%)로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장기요양 보험료율에 변동에 없더라도 건강보험료액(건강보험료율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원)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장애인 1~2등급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수급자가 되지 못한 자(등급자)는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과 건강보험료는 통합되어 고지되지만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과 건강보험료는 통합되어 고지되지만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표 6〉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일시	보험료율
2007. 12. 31(2008년)	건강보험료액의 4.05%(소득 대비 약 0.2% 수준)
2008. 12. 31(2009년)	건강보험료액의 4.78%, 평균 3090원(소득 대비로는 0.206%에서 0.243%로 인상)
2009. 12. 31(2010년)	건강보험료액의 6.55%, 평균 4439원(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인상)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나. 국고(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와 지방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80%)와 지방자치단체(20%)가 나누어 부담한다(서울시만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분권교부세, 지방비 등을 재원으로 급여비용 등을 부담한다.

2009년 장기요양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30만명
정도이고 총요양비로 2조원가량
지출되었다. 2010년 총지출
규모는 GDP 대비
0.26% 정도로 예상된다.

다. 환자의 본인부담금

급여수혜자는 시설급여의 경우 급여비의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본인
이 부담해야 한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해주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이 면제된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
용, 이·미용비, 원거리 외출시 교통비, 여가활동 소요 비용 등)과 장기요양급
여의 월 한도액 초과비용에 한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표 7〉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2008. 7. 1 ~ 2008. 12. 31	1,097,000원	879,000원	760,000원
2009. 1. 1 ~	1,140,600원	971,200원	814,700원

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
출처: <http://www.longtermcare.or.kr>

2. 재정현황

2009년 노인장기요양의 등급별/성별 요양비 지출 현황은 〈표 8〉와 같다. 장
기요양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30만명 정도이고 총요양비로 2조원가량
지출되었다. 이 중 재가서비스 혜택을 받은 수혜자의 수는 22만명으로 급여자
의 77%에 해당하는데, 재가서비스의 총요양비는 1.1조원으로 총요양비 지출의
56%에 불과하다. 또한 등급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일수록 (등급이 낮을
수록) 1인당 요양비 지출이 크며, 여성이 남성보다 1인당 요양비 지출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2010년 총지출 규모는 GDP 대비 0.26% 정도로 예상된다(〈표 9〉
참조).

〈표 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현황(2009)

(단위: 명, 일, 시간, 천원)

구 분		계		재 가		시 설	
		실인원	총요양비	실인원	총요양비	실인원	총요양비
계	합계	291,389	1,971,789,476	223,560	1,115,678,604	85,585	856,110,872
	남자	86,724	516,446,685	70,862	331,692,530	20,998	184,754,155
	여자	204,667	1,455,342,791	152,699	783,986,074	64,588	671,356,716
1등급	합계	68,517	541,671,004	38,346	201,406,939	35,658	340,264,065
	남자	21,340	140,516,765	14,677	72,165,232	8,405	68,351,534
	여자	47,178	401,154,239	23,669	129,241,707	27,254	271,912,532
2등급	합계	89,243	592,807,259	53,569	238,667,801	44,296	354,139,458
	남자	26,039	152,745,325	17,702	73,715,577	10,811	79,029,748
	여자	63,204	440,061,933	35,867	164,952,224	33,485	275,109,709
3등급	합계	169,274	837,311,213	151,224	675,603,865	19,480	161,707,348
	남자	48,566	223,184,594	44,370	185,811,721	4,561	37,372,873
	여자	120,708	614,126,618	106,854	489,792,143	14,919	124,334,475

주: 지급기준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2009

2009년 결산기준 보험료 수입은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수지 흑자(3,234억원)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도 누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표 9〉 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 비율

(단위: %)

구 분	'08	'09	'10
GDP대비 장기요양 지출비율	0.07	0.19	0.26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 『국민의 삶』 좋아졌다)

2009년 결산기준 보험료 수입은 〈표 10〉과 같다. 보험료 부과액은 1조 2,059억원(직장 9,153억원, 지역 2,906억원)이고, 이 중 징수된 금액은 1조 1,612억원(직장 9,055억원, 지역 2,556억원)이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기초, 의료급여 제외) 개인부담 기준 3,120원(직장 3,177원, 지역 3,035원)이었다. 국고지원금은 200억원, 의료급여는 국가가 42억원, 지자체가 618억원을 나누어 부담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수지 흑자(3,234억원)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도 누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아직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초기 단계로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0〉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 현황(2008, 2009)

(단위: 천원)

구 분	보험료		국고지원			
	부 과	징 수	국고 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		
	계	계		계	국가부담	지자체 부담금
2008년	478,412,915	452,348,744	41,259,836	194,036,164	-	194,036,164
7월	79,532,879	71,670,880	41,259,836	79,808,022	-	79,808,022
8월	79,522,097	74,613,814	-	13,248,842	-	13,248,842
9월	78,288,248	75,701,060	-	9,318,911	-	9,318,911
10월	78,161,731	75,398,603	-	74,261,193	-	74,261,193
11월	80,913,683	77,197,203	-	17,399,196	-	17,399,196
12월	81,994,278	77,767,183	-	-	-	-
2009년	1,205,919,730	1,161,242,163	204,351,491	660,082,482	41,596,687	618,485,795
1월	96,493,918	89,821,736	30,000,000	138,424,318	11,339,023	127,085,295
2월	95,418,452	90,128,800	30,000,000	42,948,646	20,000,000	22,948,646
3월	96,617,451	91,914,621	40,000,000	34,622,810	9,900,000	24,722,810
4월	115,453,036	111,007,502	40,000,000	132,617,112	-	132,617,112
5월	99,235,795	96,928,753	30,000,000	21,464,402	-	21,464,402
6월	100,883,348	98,147,036	33,528,000	111,226,937	-	111,226,937
7월	99,901,221	96,182,973	-	27,830,663	-	27,830,663
8월	99,281,868	97,186,118	-	2,330,352	-	2,330,352
9월	100,470,781	97,356,242	-	3,664,300	-	3,664,300
10월	99,437,949	96,547,780	-	58,665,228	-	58,665,228
11월	100,948,548	97,924,013	-	33,493,436	-	33,493,436
12월	101,777,363	98,096,588	823,491	52,794,278	357,664	52,436,614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2009

3. 재정추계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노인의 건강한 삶 영위를 돕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아직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초기 단계로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추계와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추계는 비교적 간단하나, 비용추계는 추정기간, 사용 데이터 종류, 사용변수 등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을 택할

수 있다.

도입된 지 2년 남짓된 신생 제도인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다. 박형수·전병목(2009)이 2050년까지 수입과 지출을 모두 추계하였고, 나머지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비 혹은 지출만 추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급여비 추계를 가장 완결적으로 한 연구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윤희숙·권형준(2010)의 논문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영국의 PSSRU 셀방식 접근법(연령 5세 단위, 성별, 독거 여부, 만성질환 유병률, 시설/재가 구분)과 OECD 접근법(인구과 비인구적 요인을 고려)을 종합하여 18개 시나리오별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논문이 가장 정교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서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국민을 샘플링하여 그들의 요양서비스 이용 정보를 가지고 미래 예측치를 구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 1%를 추출하여, 그들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이용 정보를 가지고 각 셀별로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을 구하고, 서비스별 단가를 곱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윤희숙·권형준(2010)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만 추계하여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총급여비를 추계하여 그들의 논문에서 제시한 수치와 비교해보고, 지출과 수입 추계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윤희숙·권형준(2010)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의 미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량변수 추이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추계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추정방법이 단순하고 여러 정책 변수들이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등 추계치에 오차 범위가 넓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가정이 변동함에 따라 추계방법이나 추계모형부터 추계결과까지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추계를 통해 개괄적인 재정동향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추계를 시도하였다.

재정추계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 각각 시행하기로 한다. 수입은 보험료, 국고보조, 지자체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보험료는 건강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이고, 국고보조금은 장기요양 보험료액의 20%에 해당하며, 지자체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일정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지출은 급여비와 운영관리비로 구분한다. 먼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비를 추계하고, 총지출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관리운영비를 계산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총량변수 추이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추계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추정방법이 단순하고 여러 정책 변수들이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등 추계치에 오차 범위가 넓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는
 대상노인수×서비스제공량×
 비용단가 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대상노인수는 다시
 등급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서비스 형태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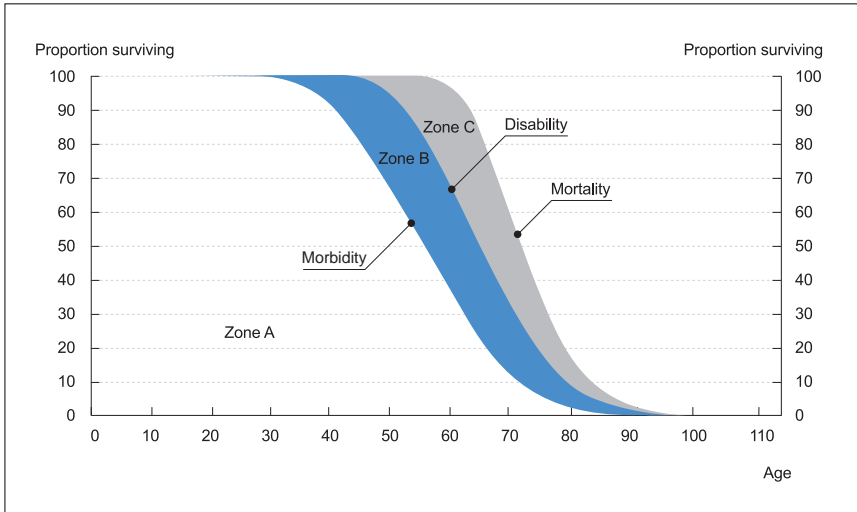
가. 지출추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는 ‘대상노인수×서비스제공량×비용단가’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대상노인수는 다시 등급별(1~3등급), 성별(남, 여), 연령별(65세 미만, 65세 이상도 5세 단위로 다시 세분화), 지역별(시도별), 서비스 형태별(재가/시설/현금서비스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에서 세부 급여종류별 구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노인수는 ‘노인인구×ADL 발생률(장애발생률)×수발필요확률’로 구한다. 노인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정치를 사용하였고,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수발필요확률은 1로 가정하였다. 장애발생률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함께 결정하는 함수인데, 개인적 요소로 건강에 대한 정보(유전, 건강상태, health behavior), 사회·경제적 요소(소득, 교육 수준), 주거형태, 가족구성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공공보건적 요소로는 의학기술 발달 정도, 평균기대수명, 사망률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래 생존곡선(survival curve)에서 보면 Zone A는 건강한 상태, 질병곡선(morbidity curve)을 넘어서는 Zone B는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아직 장애가 오지는 않은 상태, 장애곡선(disability curve)을 넘어서 사망곡선(mortality curve)까지 분포해 있는 Zone C가 바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애상태이다. 만약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곡선(mortality curve)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Zone C의 크기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의학기술의 발달 및 웰빙·건강에 대한 의식과 노력 확산으로 인해 장애곡선(disability curve) 역시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Zone C의 크기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알 수 없다. 본고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Zone C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의 구체화를 위해 재가급여 및 현금급여의 경우 세부 종류별로 구분하면 좋겠지만, 하위 단위까지 포함하는 데이터를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남녀와 65세 이상/미만으로 구분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셀 내에서 재가와 시설로 구분하였다.

[그림 2] 생존 곡선(survival curve)



출처: OECD(2000), 원본은 Manton and Soldo(1985)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2010년에는 노인 전체인구의 5.4%(29만명) 정도가 요양보험 수혜자였으나 2050년에는 133만명(노인 전체인구의 8.24%)으로 증가하였다.

그러기 위해 먼저 2009년 현재를 기준으로 총노인인구 대비 수혜자로 선정된 사람의 비율을 연령별(5년 단위), 성별 단위로 계산하였다. 65세 미만은 총인구 중 약 0.05%가 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로 선정되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남자는 4%, 여자는 7%가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계산된 비율을 2010년부터 2050년까지 각 셀별로 곱하여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를 추계하였다 (<표 12>참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2010년에는 노인 전체인구의 5.4%(29만명) 정도가 요양보험 수혜자였으나 2050년에는 133만명(노인 전체인구의 8.24%)으로 증가하였다.

<표 11>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비율 (2009년)

연 령	남 자	여 자
<65세	0.0006	0.0005
65 ~ 69세	0.02	0.02
70~74세	0.03	0.04
75 ~ 79세	0.04	0.07
80 ~ 84세	0.08	0.13
85+세	0.14	0.23

연령에 상관없이 3등급
환자 비율이 가장 높는데,
65세 이상은 1등급보다 2등급
환자 비율이 높으나 65세 미만의
경우 1등급 환자 비율이 2등급
환자 비율보다 높았다.

〈표 12〉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비율 (2010~2050년)

(단위: 명, %)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65세 이상 노인인구	65세 미만 노인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65세 미만 노인인구 세율
2010	288,991	23,647	5.41	0.05
2020	461,716	22,691	6.01	0.05
2030	694,736	20,124	5.90	0.05
2040	1,028,139	17,147	6.85	0.05
2050	1,327,457	14,345	8.24	0.05

다음으로는 2009년 장기요양 주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 성별로 셀 내 등급출현율을 계산하였다. 연령에 상관없이 3등급 환자 비율이 가장 높는데, 65세 이상은 1등급보다 2등급 환자 비율이 높으나 65세 미만의 경우 1등급 환자 비율이 2등급 환자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성별간 등급출현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에 따른 등급출현율을 사용하였다.

〈표 13〉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출현율

등급출현율	1등급	2등급	3등급
65세 이상	0.16	0.26	0.58
65세 미만	0.22	0.21	0.57

다음으로 각 셀 내에서 시설과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자를 구분하기 위해 2009년 성별, 연령별로 재가수급자 비율을 계산하였다. 시설수급자 비율은 1에서 재가수급자 비율을 빼면 된다. 중증요양환자일수록 시설이용이 더 많으며, 65세 이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설 이용이 더 많았다.

〈표 14〉 장기요양보험 수혜자의 재가수급자 비율

	65세 미만			65세 이상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남자	0.70	0.66	0.93	0.63	0.62	0.90
여자	0.62	0.66	0.93	0.46	0.51	0.88

다음으로는 <표 15>에 있는 연간 1인당 평균 급여비를 각 셀에 곱해 해당 그룹별 급여비 지출액을 추정하고, 이를 모두 더하여 총급여비 지출액을 계산하였다. 이 때 급여비는 물가상승률(의료비 물가상승률 3%)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렇게 계산한 급여비에 관리운영비를 더하면 총지출액이 결정되는데, 관리운영비는 총지출액의 20%인 경우(2008년 수치)와 10%인 경우(2009년 수치)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표 16>에 정리했다.

[그림 3]은 급여비와 총지출 추이인데, 급여비와 총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급여비와 총지출 추이를 보면, 급여비와 총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등급별 연간 1인당 급여비

(단위: 천원)

		1등급		2등급		3등급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65세 미만	남자	4,953	7,467	4,157	7,069	4,084	7,072
	여자	5,213	8,576	4,526	7,119	4,333	7,224
65세 이상	남자	4,170	6,918	3,569	6,179	3,645	7,618
	여자	4,747	8,712	4,016	7,112	4,072	7,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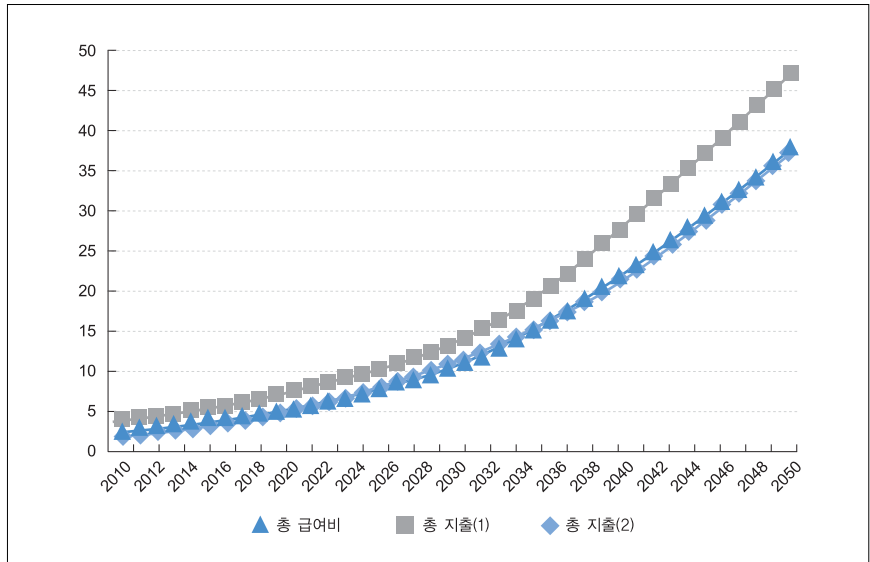
<표 16> 2010 ~ 205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지출 추정치

(단위: 조원, %)

	총급여비	관리비가 20%인 경우 관리운영비	관리비가 10%인 경우 관리운영비	GDP 대비 비중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1	시나리오2
2010	2.68	3.35	2.71	0.30	0.25
2020	5.56	6.95	5.62	0.33	0.27
2030	11.01	13.76	11.13	0.42	0.34
2040	21.60	27.00	21.84	0.59	0.48
2050	37.23	46.54	37.64	0.81	0.6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그림 3] 총급여비, 총지출 (시나리오 1, 2)



이상의 급여비 추계결과를 윤희숙·권형준(2010)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수치는 그들이 제시한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비관적인 시나리오 사이에 있었다.

<표 17> 기존 연구와의 비교

(단위: 조원)

	윤희숙 & 권형준(2009)	본 연구
2010	3.1612 ~ 3.2561	2.6782
2015	4.0331 ~ 6.7599	5.5594
2020	4.9855 ~ 13.5575	11.0052
2030	7.3536 ~ 28.4015	21.5974
2040	10.9216 ~ 57.8813	37.2312
2050	-	37.3631

나. 수입추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2010년 6.65%)로 구해지므로 건강보험료 수입 추정액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수입은 2010년 상반기 결산 건

강보험 보험료(143,480억)를 두배하여 2010년 건강보험 연간 보험료 수입을 구하고, 박형수·전병목(2009)의 1인당 소득증가율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정책변수인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현재와 같은 6.65%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국고지원, 국고지원금의 2.25배(2009년 국고지원 대비 지자체 부담금 비율)로 계산한 지자체 의료급여부담금 등 총수입을 <표 18>에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입과 지출을 종합하여 당기수지(GDP 대비 %)를 구해서 <표 19>에 정리하였다. 2010년의 경우 당기수지는 GDP 대비 -0.02~0.04%로 예상되지만 곧 적자로 돌아서 2050년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GDP 대비 0.33~0.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의 경우 당기수지는 GDP 대비 -0.02~0.04%로 예상되지만 곧 적자로 돌아서 2050년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GDP 대비 0.33~0.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8>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수입 추정치(2010~2050)

(단위: 조원)

연도	보험료	국고지원	지자체	총수입 (C)
2010	1.88	0.38	0.85	3.10
2020	3.51	0.70	1.58	5.79
2030	5.64	1.13	2.54	9.30
2040	8.12	1.62	3.65	13.39
2050	11.17	2.23	5.03	18.43

<표 19> 2010~2050년 당기수지

(GDP 대비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박형수 & 전병목 (2009)
2010	-0.02	0.04	0
2020	-0.06	0.01	-0.17
2030	-0.13	-0.06	-0.37
2040	-0.30	-0.19	-0.54
2050	-0.49	-0.33	-0.6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GDP 대비 당기적자를 박형수·전병목(2009)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추정치는 20~50%가량 과소추정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지출이 가장 큰 추정치를 사용하여 당기적자를 측정하였으므로, 지출 추정치가 작은 시나리오를 사용한다면 본 연구결과와 차이는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정추계치는 어디까지나 주어진 데이터의 제약하에서 일정한 가정과 일정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추정되었으며, 제반 환경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추정치가 가변적일 수 있다.

IV. 결론

이상에서는 장기노인요양보험 재정추계를 통해 향후 노인 요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기존 연구자들의 추계를 종합해 보았을 때,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향후 2050년까지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건강보험처럼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정추계치는 어디까지나 주어진 데이터의 제약하에서 일정한 가정과 일정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추정되었으며, 제반 환경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추정치가 가변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특히,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재정추계시 여러 가지 정책변수와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현재 시점의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다는 점이다. 정책변수로는 수혜조건, 수혜자가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 서비스 단가, 급여 수가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및 국고지원금이 영향을 받게 되고, 지자체의 지원 범위도 수입을 변화시키는 정책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율이나 국고 및 지자체 지원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급여비가 정책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급여비는 ‘급여노인수×서비스 양×서비스 단가’로 계산되는데, 급여대상의 경우 수혜자 범위 확대(요양대상자 자격조건 완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으로 자격 확대)가 정책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정책변수는 아니지만 장애기간 변동도 급여비에 영향을 미친다(평균수명 연장으로 장애기간이 길어진다는가 혹은 의학기술 발달로 장애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또한 보험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양을 증가시켜 보장성을 늘리는 경우 급여비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가나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도록 정책을 변경한다면 급여비 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비정책적 요인들이 변동한다면 사실상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이제 도입 3년째를 맞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초기 단계로서 아직은 재정적 압박보다는 보장성 확대, 서비스의 질 제고 등에 관심이 모아져 있다. 그러나 향후 건강보험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재정 여건을 파악하고, 재원의 다양화, 수요 및 공급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 지출 효율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당기수지 적

자가 누적되어 국민의 부담이 높아지고, 건강보험과 같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과 따로 떼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네덜란드처럼 노인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연계되어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선진국과 비교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입되었고, 정착과정 또한 빠른 편이다. 미국과 같이 노인요양시설(nursing home)이 보편화 되는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그 수요에 대응하고,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였을 때 개인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보험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KIPF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과 따로 떼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네덜란드처럼 노인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연계되어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 “국민의 삶” 좋아졌다」, 2010년 6월 29일
- 서동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구조와 전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8
- 윤희숙, 권형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중장기 추계」, 『보건행정학회지』, 제20권 제1호, 2010년 3월, pp. 37~63
- 최인덕, 이상립, 이정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시설, 인력 추계」,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 2010년 5월 pp. 375~400
-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0년 업로드
-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0년 업로드
- CBO Memorandum, Projections of Expenditures for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March 1999.
- CBO, Financing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CBO paper, April 2004
- European Study of Long-Term Care Expenditure, PSSRU Discussion paper 1840, Feb. 2003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Growing Demand and Cost of Services Are Straining Federal and State Budgets, Long-Term Care Financing, April 2005.
- Gkeckman, Howard, *Long-Term Care Financing Reform: Lessons From the U.S. and Abroad*, Urban Institute, Feb. 2010

국제조세회피 방지 관련 정보교환 논의와 현안과제¹⁾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hong@kipf.re.kr)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의 결과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26조의 정보교환 항목은 자국 정부의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조약국의 과세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I. 서론

21세기의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국제화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과 규제완화로 인하여 국가간 물질·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각국간 경제의 동조화도 이제는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그 방식이 편리해짐에 따라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조세회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그 속성상 어려운 일이지만, 거래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하여 아직도 과세당국의 자국민 경제활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징세권, 조사권 등이 매우 제한적이며, 과세당국 간의 협력도 생각보다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각국 과세당국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특히 OECD에서는 일찍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여 왔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과세당국 간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논의가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 은행의 고객정보유출 사건은 각국 과세당국 간의 협조가 급물살을 타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의 결과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26조의 정보교환 항목은 자국 정부의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조약국의 과세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은행비

1) 본고는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3호(2010. 9)에 게재된 홍범교·한상국의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국제 동향과 우리의 대응을 일부 축약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밀주의 등을 이유로 정보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주요국들은 물론이고 과거 조세피난처였던 소국들도 최근 OECD의 이러한 기준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국제조세회피의 유형 및 대응

1. 국제조세회피의 유형

국제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조세회피가 일어나고 있다. 조세회피의 유형은 크게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방법,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방법,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²⁾.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매우 낮은 세금만을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을 조세피난처라고 하는데³⁾, 이들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거래를 하거나, 거주지 또는 기업의 본사를 이들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 첫 번째 방식이다. 과거 유럽의 소국들이나 카리브해 연안의 도서국가 또는 지역 등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였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될 소득을 조세피난처의 명목회사로 귀속시킴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은 두 국가 간에 상호 원천징수세율을 감면하고 특정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한편, 이중적인 비과세를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진다. 그런데 제3국의 거주자가 자기에게 부여되지 않은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방식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조약의 일방 체약국에 도관회사(conduit company)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조약의 혜택을 누리는 treaty shopping을 들 수 있다⁴⁾.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의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조세조약 남용과 조세피난처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경제활동이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국적기업은 개별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절한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세전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각국의 세율 격차

국제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조세회피가 일어나고 있다.

조세회피의 유형은 크게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방법,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방법,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안종석·최준욱(2003)은 전형적인 조세회피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잘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요약한다.

3) 현재는 이들 국가나 지역들이 OECD의 기준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조세피난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Treaty Shopping에 대한 보다 자세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안종석·홍범교(2006) 참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제도를 유지하는 한, 자국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는 방안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세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단가를 조작하여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이다.

2.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조세회피에 대한 각각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제도를 유지하는 한, 자국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는 방안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는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뿐 아니라 국내자본의 국외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부담 인하와 더불어 자국의 제도 정비, 국제적 공조 등을 통해 조세피난처의 활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제도 정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피지배 외국법인(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에 대한 과세제도를 들 수 있다. 피지배 외국법인이란 자국민이 지배하는 외국법을 의미하며, 피지배 외국법인의 소득 중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소득이 아닌 것, 즉, 수동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즉시 그것이 국내로 환수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국조법으로 칭함)에서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의 조세피난처 자회사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⁵⁾. 국제공조를 통한 세무정보 교환도 조세피난처에 대한 유용한 대응 수단이다.

한편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가 지분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⁶⁾ 신탁 등 법인 외의 형태로 투자기구를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국외포트폴리오 투자를 이용한 배당에 대해서도 CFC와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FIF: Foreign Investment Funds)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세조약 남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세조약에 남용방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조약 체결국의 거주자 명의를 빌려 조약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조세조약 남용방지 조항도 조세조약 체결국뿐만 아니라 다른

5) 국조법 제7조

6)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시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조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20% 미만을 보유하거나 신탁 등 법인 외의 형태로 설립할 경우 CFC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 그 밖에 소득의 원천이 되는 국가나 지역에서 원천징수세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대책은 이전가격 과세제도이다. OECD의 이전가격지침을 기준으로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국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가격법, 원가가산법 등이 있다. 이들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각 거래 당사자들이 이익 창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사전검증을 통하여 이전가격 조작을 미리 예방하는 제도로서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가 있다. 사전승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미리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는 제도이다. 즉 과세당국은 조약 상대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를 거쳐 동 방법을 승인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상호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인하기도 한다.

〈표 1〉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의 조세회피 대응방안으로서 공통적인 것은 과세당국 간의 정보교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에 마련된 방지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최근에 보다 강조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정보교환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국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OECD는 유해조세경쟁에 대한 보고서를 시발점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과세당국 간의 협조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보교환을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표 1〉 국제조세 회피의 유형 및 특징

	조세피난처 활용	조세조약 남용	이전가격 조작
회피대상 소득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회피대상 세목	거주지 과세	원천지 과세	거주지 과세
투자에 주는 영향	거주자의 해외투자 촉진	거주자의 해외투자 촉진 비거주자의 국내투자 촉진	국내투자 촉진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FC, FIF 과세제도 •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 적용 • OECD의 공조노력 • 정보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조약 남용방지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과세규정의 실효성 제고 - 혜택 제한(LOB) 강화 • 원천징수세 강화 • 정보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가격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승인제도 (APA) • 정보교환

자료: 안중석·최준옥(2003), p. 61 (표 II-2)를 기본으로 일부 보완

III. 투명성 제고와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적 노력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당국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OECD는 유해조세경쟁에 대한 보고서를 시발점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과세당국 간의 협조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보교환을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1. OECD 논의의 출발점: 유해조세경쟁에 대한 보고서

G7의 요청에 의하여 시작된 투명성과 정보교환을 위한 OECD에서의 논의는 2년에 걸친 논의와 연구의 결과 1998년에 유해조세경쟁에 대한 보고서(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로 발표되었다. 동 보고서는 지역적인 이동이 손쉬운 금융, 서비스, 무형재의 공급과 같은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회원국 특혜지역, 조세피난처, 비회원국의 세 분야로 나누어 국제조세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또한 조세피난처를 정의하는 4가지 요소로서 ① 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명목적인 과세 ②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부재 ③ 투명성의 부족 ④ 실질적 활동의 결여 등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2000년 발표된 Towards Global Tax Co-operation: Progress i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에서는 1998년 이후 진

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OECD 회원국 내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47개의 지역을 적시하고 조세피난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35개 국가(지역) 등을 등재하고 있다.

2000년에 처음 지적된 47개의 유해조세지역은 그 후 46개가 유해성을 해소하고 1929년법에 따른 룩셈부르크 지주회사 건만이 특혜로 남았으나, 이것도 2006년 이후 룩셈부르크의 법적 조치에 의하여 일정 기간을 거쳐 사라질 전망이다.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35개 지역은 2010년 현재 모두 효과적인 정보교환과 투명성 제고에 동의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하였다.

2002년에는 국제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정보교환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Model Agreement on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Matters를 발표하였다. 동 모델은 OECD 모델 조약 제26조의 개정을 통하여 정보교환에 대한 범위를 확장시키게 되었으며, 여기서 강조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⁷⁾.

- 조약 상대국의 국내세법 집행에 있어 “예측 가능하게 관련(foreseeably relevant)” 되는 경우,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응해야 한다.
- 은행비밀주의 또는 자국 조세목적상의 필요성이 정보교환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 신뢰할 만한 정보의 확보 및 취득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교환된 정보에 대하여 엄격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OECD에서는 동 주제에 대한 진전 보고서(Progress Report)의 지속적 발행을 통하여 실태보고를 갱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진전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보고를 통하여 OECD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일종의 압박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2. OECD Global Forum의 성과

OECD는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에 있어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가능케 하고, 또한 논의된 결과의 준수를 촉구하는 것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2000년에 비회원국을 포함한 Global Forum을 출범시켰다. 투명성 제고와 정보교환을 위한 OECD의 논의는 동 포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Global Forum on Taxation⁸⁾이라는 이름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35개 지역은

2010년 현재 모두

효과적인 정보교환과

투명성 제고에 동의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하였다.

7) OECD(2010a), p. 4

8) 2009년 9월에 동 포럼은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로 개칭되었다.

OECD 모델조약 제26조는 조약 상대국의 요청에 응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해당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수단이다.

으로 출발한 포럼이 위에서 언급한 Model Agreement on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Matters 작성의 주역이었다. Forum의 활동 결과, OECD는 2005년에 모델조약 제26조를 개정하여 정보의 활용 가능성과 신뢰성에 관한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이후 매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진전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가. 정보교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환의 종류는 크게 보아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적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⁹⁾. OECD 모델조약 제26조는 조약 상대국의 요청에 응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해당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수단이다. 동 조약의 내용은 2005년도에 본 조항 및 주석서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되었는데, 과거와 차이점은 요청 정보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상대국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과 은행비밀주의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⁰⁾. 동 조항은 민형사상 세금에 대한 정보요청시,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정보에는 모든 은행과 신탁관련 정보가 포함되지만 정보사냥(fishing expedition)¹¹⁾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소득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 국가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자동정보교환'의 대표적인 예가 EU의 Savings Directive(2003/48/EC)이다.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동 지침은 EU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거주지국에 통보하는 것이다.

회원국 이외에도 EC는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노, 스위스와 이자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협정을 맺었다. 이 5개 국가의 지불기관은 EU 거주자인 실질적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를 징수한다. 원천징수에 따른 세수는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에 25:75로 분배한다. 2005년 7월부터 처음 3년간은 원천징수세율을 15%로 하고, 그 다음 3년은 20%, 그리고 그 이후에는 35%로 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불기관으로 하여금, 지불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에 신고하게 하고, 동 과세당국이 실질적 소유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면 된다.

자발적 정보교환이란 특정조사를 통해 상대방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자발적으로 그 정보를 상대방 국가에 전달하는

9) OECD 모델조약 주석서 §26-9
 10) 2005년에 추가된 OECD 모델조약 제26조 4항과 5항의 내용
 11) 정보사냥이란 일반적으로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광범위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우를 말한다.

나. 최근의 진전

OECD(2009)에 따르면 2008년 이후 Global Forum의 모델에 기반한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이 75개 이상 체결되었다. 또한 2009년 3월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4개국이 마지막으로 제26조에 대한 유보를 취소함으로써 OECD 기준은 Forum에 참가하는 91개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들 4개국은 이미 12개 이상의 조약을 개정함으로써 OECD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브루나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필리핀, 우루과이도 OECD 기준을 승인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Global Forum이 조사한 모든 국가가 동 기준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진전 상황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현재 14개국(지역)이 동 기준에 동의는 하였으나, 상당한 정도로 실행하고(substantially implementing)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Global Forum은 상호평가(peer review)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러한 기준의 실질적 실행을 독려하고 있다. 2010년 3월부터 시작된 제1단계 검토는 참여국의 법적 규제의 질을 평가하고 제2단계에서는 실제 운영상태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인데, 모든 참여국에 대하여 2012년 6월까지 제1단계 검토를 그리고 2014년 6월까지 제2단계 검토를 끝낼 예정이다.

다.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 사건

OECD의 정보교환 기준을 모든 나라들이 받아들일도록 하는 노력이 최근 들어 급속한 성과를 보이게 된 것은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기여한 바가 크다¹³⁾.

1) 사건의 개요

2002년에 리히텐슈타인 LGT(Lichtenstein Global Trust) 은행직원이 1,250명 고객의 계좌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6년에 독일은 비밀계좌명단을 수록한 자료(CD 1장)를 420만유로에 취득하여, 탈세자 약 160명을 적발하였다. 이 정보는 미국 과세당국과 공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각국 정부들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¹⁴⁾.

OECD(2009)에 따르면 2008년 이후 Global Forum의 모델에 기반한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이 75개 이상 체결되었다. 또한 OECD 기준은 Forum에 참가하는 91개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12) 상당한 정도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12개의 OECD 회원국과 정보교환에 대한 조약 또는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08년 10월에 정해진 동 기준은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2개 이상의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13) US Senate(2008) 참조

14)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08/mar/02/tax.personalfinancenews>

〈표 2〉 OECD 기준을 따르는 국가(2010년 5월 19일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된 과세 기준을 따르는 국가(지역)			
안도라	체코	일본	세인트 루시아
앵귤라	덴마크	저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도미니카	한국	사모아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아루바	핀란드	룩셈부르크	세이셸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독일	몰타	슬로바키아
바하마	지브롤터	모리셔스	슬로베니아
바레인	그리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모나코	스페인
벨기에	건지	네덜란드	스웨덴
버뮤다	헝가리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	스위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터키
캐나다	인도	노르웨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케이맨제도	아일랜드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칠레	맨섬	포르투갈	영국
중국 ¹⁾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
키프로스	이탈리아	세인트 키츠 네비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국제적으로 합의된 과세 기준을 따르기로 하였으나, 아직 실천이 완전치 못한 국가(지역)					
국가(지역)	합의 연도	체결 조약 수	국가(지역)	합의 연도	체결 조약 수
조세피난처 (Tax Havens)					
브라질	2002	(4)	나우루	2003	(0)
쿡제도	2002	(11)	니우에	2002	(0)
라이베리아	2007	(0)	파나마	2002	(1)
마셜	2007	(2)	바누아투	2003	(2)
몬트세라트	2002	(3)			
기타 금융 센터					
브루나이	2009	(9)	필리핀	2009	(0)
코스타리카	2009	(1)	우루과이	2009	(5)
과테말라	2009	(0)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따르지 않기로 한 국가(지역)			
국가(지역)	체결 조약 수	국가(지역)	체결 조약 수
Global Forum에 의해 조사된 모든 국가는 동 기준을 따르기로 함			

주: 일부 특수행정구역은 과세기준을 따르기로 하되, 아직 실천이 완전치 못한
 자료: OECD(2010a), p. 16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08년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UBS(Union Bank of Switzerland)에서도 발생하였다. 전직 UBS 자산운용 담당자였던 Bradley Birkenfeld는 UBS가 약 200억달러 상당의 비실명계좌를 약 2만명의 미국 납세자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UBS 직원들이 미국 고객들이 자산을 은닉할 수 있도록 역외 명목회사를 설립해 주고 이 역외회사가 자산을 소유하는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제보하였다.

2) 진행 과정 및 결과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LGT 사건으로 인해, 2008년 12월 8일 미국과 과세 정보교환협정(TIEA)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에 따라 리히텐슈타인은 향후 미국에 미국 세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은 민형사 사건 모두에서 모든 형태의 연방세에 관련된 정보를 리히텐슈타인에 요청할 수 있다¹⁵⁾. 요청받은 나라가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심지어 요청받은 정보가 비거주자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요청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교환된 과세정보는 오로지 특정한 과세당국만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협약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오로지 과세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스위스 UBS 사건의 경우, 미국 법원은 2008년 7월에 UBS에 대하여 스위스 계좌를 이용하여 미국 세금을 포탈한 미국 고객들에 관한 계좌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해 달라는 미국 법무성의 요청을 승인하였다. 또한 미국 법무성은 UBS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1만 9,000여명의 미국인들에 대하여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세청도 미국 납세자들에게 1만달러 이상의 비실명계좌를 신고하고 탈루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라고 독려했다. 이는 미국법상 세무조사나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납세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은 결국 미국 상원의 청문회¹⁶⁾로 연결되어, UBS의 국제 자산관리 부분 CFO인 Mark Branson은 동 청문회에 출석하여 Birkenfeld의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시인하고, 향후 재발방지 및 스위스 정부가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¹⁷⁾.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은행이 고객의 금융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외국의 과세당국을 포함하여)에게 제공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정한 자국의 은행비밀보호법을 빌미로, 자국의 은행제도 안에서 발생한 미국법 위반에 대해서는

OECD의 정보교환

기준을 모든 나라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노력이 최근 들어 급속한 성과를 보이게 된 것은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기여한 바가 크다.

15) 종전까지 미국과 리히텐슈타인은 상호 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에 근거하여 조세포탈 형사사건에 관련된 정보만을 교환하고 있었다.

16) '조세피난처 은행과 미국시민의 납세순응(tax haven banks and US tax compliance)' 청문회

17) http://hsgac.senate.gov/public/_files/071708PSIReport.pdf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조법 제31조 제2항에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추가하여 OECD의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조약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아무런 언급 없이, UBS가 고객들의 정보를 미국에게 넘겨준다면 이는 스위스 국내법¹⁸⁾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은 2009년 스위스 UBS를 상대로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자국민 5만 2천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UBS는 처음에 스위스의 '은행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였으나 소송이 본격화되자 250명의 고객정보만 공개하고 대신 벌금으로 7억 8,000만달러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세 수위를 높여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 스위스 UBS에 예치된 자국민 위탁자금 규모를 148억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미국은 OECD에 스위스를 버진 아일랜드·버뮤다 등과 함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을 검토하는 등 압박을 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스위스는 정부 차원의 행정협조를 통한 정보 제공에 합의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스위스에 예금을 갖고 있는 미국인의 계좌정보 제공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고, 그 결과 2009년 8월 미국과 스위스는, 스위스의 법률과 주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 정부에 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합의하였다. 위 합의사항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미국과 스위스 정부 사이에 이미 체결된 조세조약 제26조에 따라 스위스 국세청에 행정협조를 구하여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UBS 은행에 있는 미국인의 계좌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

라. 각국 조세조약 개정의 움직임

2009년을 기점으로 OECD의 Global Forum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델 조약 제26조를 중심으로 한 정보교환 기준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물론 <표 2>에서 보듯이 동 기준을 채택하기로 동의한 것이 실천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들 국가들이 맺고 있는 조세조약에 새로운 기준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조법 제31조 제2항에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추가하여 OECD의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조약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거주지국 과세를 통하여 자국민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제26조를 포함한 새로운 미국의 모델조약(US Model Tax Convention)을 2006년 11월에 발표하여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UBS 사건의

18) 스위스법은 명백한 범죄 목적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만 고객계좌정보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여파로 스위스는 미국과의 정보교환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스위스의 법률과 주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와 같은 조건은 앞으로 양국 간의 정보 교환에 있어서 제약을 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은행비밀주의를 고수하던 스위스, 룩셈부르크와 같은 나라와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조약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들도 원칙에는 동의하였으나 다양한 제약을 통하여 실천의 범위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던 많은 소규모 국가(지역)들도 OECD의 기준에 따르기로 동의하였으나, 이들 지역과의 협상을 거쳐 정보교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본다.

3. 자발적 신고와 조세사면정책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조세사면정책도 국제조세회피를 막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조세사면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역외소득의 신고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세수가 증가하고 징세비용은 감소하며 조세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2000년 OECD Bank Report¹⁹⁾는 해외 소득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세사면정책을 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2003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의 자발적 신고 유도는 조세사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조세사면은 형사처벌의 면제에 더하여 가산세, 이자, 탈루세금 각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범위에 그 정도에 차이가 난다²⁰⁾. 조세사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소통에 있는데, 사면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순응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OECD(2010b)에서는 역외소득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하여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역외소득의 신고제도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단기 세수의 증대 및 장기적인 납세순응 증진과 해외에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조세사면정책도 국제조세회피를 막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

19) Improving Access to Bank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20) 최병철(2002) 참조

형사처벌의 면제 외에
가산세, 이자, 탈루세금에 있어
어느 범위까지의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 조세사면의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축적된 자산의 본국 송금 유도 등이 대표적인 목적인데, 동 정책이 목표로 하는
특정 납세자 집단과 전체 납세자들에게 정책의 목적과 이에 상응하는 조세사면
제도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주요국의 사례

조세사면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
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형사처벌의 면제 외에 가산세, 이자, 탈루
세금에 있어 어느 범위까지의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 조세사면의 내용은 나라
마다 차이가 있다. <표 3>은 과거에 시행된 여러 나라의 조세사면 사례를 보여주
고 있다. 최병철(2002)은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고 세무행정의 발전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조세사면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세법집행의 강화조치가 동시에 수
행되어야 효과가 있으며, 조세사면이 반복되어서는 오히려 납세순응도에 부정
적인 영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표 3> 역외소득에 대한 조세사면 사례

국 가	자발신고프로그램	노출 자산금액/세수		추정 여부
		자국 화폐단위 기준	유로 기준 ¹⁾	
호 주	2007 and Onwards Tax Amnesty-Project Wickenby	세수 및 벌금 3억호주달러 이상	2억 5백만 이상	실제액
벨 기 예	2004 Tax Amnesty	세수 4억 9,600만유로		추정액
캐 나 다	Voluntary Disclosures 2004~2005	세수 3억 1,800만캐나다달러 (6,632건)	2억 3,300만	실제액
독 일	2004 Tax Amnesty	세수 9억 100만유로		실제액
그 리 스	2004 Tax Amnesty	노출자산 200억유로		추정액
아 일 랜 드	2004 Voluntary Disclosure of Offshore Accounts	세수 8억 5,600만유로 (15,000명)		실제액
이 탈 리 아	2002~2003 Tax Shield	세수 21억유로		실제액
	2009~2010 Tax Shield	2009년 12월 15일 현재 노출자산 950억유로 세수 47억 5천만유로		실제액
포 르 투 갈	2005 Tax Amnesty	세수 4,100만유로		실제액
남 아 공	2003 Tax Amnesty	노출자산 650억랜드 세수 4억랜드	66억 4,100만	실제액 추정액
영 국	2007 Voluntary Disclosure Facility	세수 4억파운드	4억 4,700만	실제액
미 국	2003 Voluntary Compliance Initiative	세수 및 벌금 2억 7,000만달러 (1,300명)	2억 200만	실제액

주: 1) 2010년 3월 24일 환율 기준
자료: OECD(2010b), p. 31

IV. 우리나라의 정보교환 확대와 독자적 노력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에 국조법을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법률은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제도, 상호합의, 정보교환 등 국가간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국조법이 제정된 이후의 국제거래 환경 및 국제과세규범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는 OECD Global Forum의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보교환 강화와 역외정보 확보를 위한 독자적 노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금융정보 교환의 확대

우리나라는 2002년 12월에 과거에 형식적으로 마련되었던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항을 실질적으로 보완하였다²¹⁾. 이에 따라 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관련 정보를 계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이 금융정보를 요청하면 상호주의 원칙하에 금융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2010년 1월에는 동 조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 교환 대상에 비거주자·외국법인 외에 거주자·내국법인을 추가하였다. 이는 OECD 등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확대하여 역외탈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청장은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 및 제공내역 등을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²²⁾. 다만 당해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그 밖에 비밀유지조항을 두어 권한 있는 당국 외에는 그러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³⁾. 현재 우리나라는 80여개국과 정보교환조항을 포함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²⁴⁾, Cook Islands, Samoa, Bahamas, Cayman Islands 등 8개 지역과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국조법이 제정된 이후의 국제거래 환경 및 국제과세규범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 국조법 제31조

22) 국조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23) 국조법 제31조 제3항~제5항, 제31의2

24)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에는 현재 정보교환협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국가와는 서명 후 발효 전 또는 가서명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은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독자적 노력의 하나로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2.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은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독자적 노력의 하나로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을 구축하여 2010년부터 가동하고 있다²⁵⁾. 종전에는 기업의 재무분석을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업종별 표준재무제표나 결산서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건별로 조회하였다. 또한 국외기업 재무정보 등은 조세피난처의 경우 접근이 불가능하였고,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주로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에 의존해야 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활용 가능하였다. 그러나 ICAS에서는 세무신고자료, 여타 행정자료와 함께 국내·외 기업의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 등을 통합, 전산구축함으로써 국내·외 거래에 대한 상호연계 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ICAS에는 상장 및 외부감사대상 국내법인 2만개의 모든 재무자료 일체와 우리나라 투자기업을 포함한 5,700만개의 국외기업 재무자료 일체 등이 수록되어 있다²⁶⁾. 동 시스템에서 지역, 회사명, 주주, 업종 등의 조건으로 국외기업 검색이 가능하며 재무제표, 임원, 자회사 현황 등 해당기업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국제거래 관련 신고자료와 국내외 공시자료 등을 상호연계 검증할 수 있게 되어 국제거래 분석·조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모기업이 국가 간 정보자료 교환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한 후,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할 때 국내 모기업에 지분투자 처분손실을 계상하였으나, ICAS 확인 결과 신고사실과 달리 현지법인은 흑자 청산한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또 국내 모기업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지분 및 대부투자 해외송금을 하고 세무신고하였으나, ICAS 국외기업 DB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송금액이 해외 현지법인에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ICAS DB 보강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 노력은 과세당국 간의 정보교환과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통하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 국세청 보도자료(2010) 참조

26) 외국자료의 경우 상용 DB도 이용한다.

V. 현안과제 및 결론

OECD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교환을 위한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0년 11월의 서울 G20 정상회의도 OECD의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고 모든 지역들이 적절한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⁷⁾. 군소 국가(지역)를 포함한 Global Forum의 전 참가국이 OECD의 기준을 승인한 것은 총체적인 면에서 성과라고 하겠지만, 아직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실행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김유찬(2010)은 스위스가 12개 이상의 국가들과 정보교환협정을 맺어 OECD의 기준을 상당히 실행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정보교환협정의 내용은 나라에 따라 상이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와의 조약의 경우에는 탈세혐의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스위스 내 관리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제시하여야 스위스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프랑스와의 조약에서는 프랑스가 이러한 이름과 주소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를 제시할 수 있으나 동자료가 없어도 스위스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정보교환에 관한 조항을 조세조약에 포함시키는 협정을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덴마크식의 결론을, 우리나라는 프랑스식의 결론을 선호하고 있으나, 최종 결론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스위스뿐 아니라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도 국제적인 압력에 의하여 OECD의 기준을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금융이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 조약 등을 통한 적용에 있어서는 가능한 그들의 입장을 견지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들이 조약체결에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것은 정보교환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OECD 정보교환기준의 의도를 훼손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은 체결당사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 개입 또는 다자간 협상 방식의 적용은 불가하다. 그러나 만일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과거 은행비밀주의를 고수하던 국가들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Global Forum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다수의 국가가 협력하여 이러한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조약체결에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것은 정보교환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OECD 정보교환기준의 의도를 훼손하는 것이다.

27)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문 문단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의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납세자에 의한 역외계좌신고제도도 그러한 방안의 하나이다.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의 정보교환이 필수적이거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납세자에 의한 역외계좌신고제도도 그러한 방안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역외계좌신고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역외계좌신고제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 호주,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의 5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자본수출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시민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징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역외계좌신고제도(FBAR)는 1만달러 이상의 잔고를 가진 미국 시민 소유의 역외계좌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호주의 제도는 순자산 3천만달러 이상을 가진 고소득자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나라마다 독자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영국에서도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과 정치경제학적인 이유 등으로 그 도입을 유보한 바 있으며, 일본에서도 제도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은 그 실효성의 확보를 위한 수단을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세당국 간의 정보교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동 제도도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식의 QI(Qualified Intermediary) 제도는 과세당국 간의 직접적 정보교환이 아니라 제3자를 거치는 또 하나의 보완적 대안이 될 수 있다²⁸⁾. QI제도는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이 역외금융기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역외금융기관이고 이들이 국가에 따라 은행비밀법에 직면한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최근 국제적인 은행비밀주의의 약화와 함께 유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QI는 Know-Your-Customer 절차에 따라 계좌의 소유주가 수익적 소유자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집합정보(pooled information)만을 전달함으로써 개별 고객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즉 QI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가 하는 것은 외부감사인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과세당국이 QI의 원시 정보에 직접 접근하지는 못하게 된다. QI 제도는 거주지국 과세당국을 대신하여 제3자가 원천징수를 해주는 대신, 과세당국은 개별 납세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조세사면정책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 세금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현재

28) 홍범교 외(2009) 참조

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국제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의 직접 정보교환, 납세자 신고를 통한 정보접근, QI와 같은 제3자를 통한 정보획득 등의 방식이 서로 보완적이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re나 Leeds Castle Group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공조 노력도 함께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의체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Egmont Group 등과의 원활한 정보공유도 주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KIP

국제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의 직접 정보교환, 납세자 신고를 통한 정보접근, QI와 같은 제3자를 통한 정보획득 등의 방식이 서로 보완적이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국세청 보도자료,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구축·가동」, 2010. 1. 14.
- 김유찬, 「불법취득 정보의 구매와 탈세자 처벌」, 『재정포럼』 제165호, 2010. 3, pp.62~72.
- 안중석·최준욱, 『국제조세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안중석·홍범교,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최병철, 『조세사면: 한국에서의 정책적 유용성』, 한국조세연구원, 2002
- 홍범교·구자은·마정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연구제도개선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9
- OECD, *Improving Access to Bank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The 2007 Progress Report*, 2007
- _____, *Tax Co-operation 2009: Towards a Level Playing Field*, 2009
- _____, *Promoting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A Background Information Brief*, May 19, 2010a
- _____, *OECD's Current Tax Agenda*, 2010b
- US Senate, *Tax Haven Banks and US Tax Compliance*,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 Staff Report, July 17, 2008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와 활용: 알리오시스템을 중심으로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kheo@kipf.re.kr)

우리나라는 2005년 말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공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12월
현재 285개 공공기관의 33개
항목 120여개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 서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청되었으며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199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존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는 경영정보의 공개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을 통해 주인-대리인 문제를 줄여줄 것으로 예측했으며, 더불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에 대한 기대효과로 인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고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가 요청되어 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설계에 관해 바이블처럼 사용되고 있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OECD, 2005)에서는 외부 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공시하고 공기업 전체에 대한 통합 연례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말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l Public Information System in One, 알리오시스템: <http://www.alio.go.kr>)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공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12월 현재 285개 공공기관의 33개 항목 120여개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알리오시스템의 도입 이전까지는 25년에 걸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외부 지배구조의 주된 방법이었으나, 2007년 4월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에 경영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외부지배구조 기능을

강화하였다. 알리오시스템을 통한 상시적인 정보공개는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주인-대리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방만경영의 문제를 줄이고 책임경영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민간기업의 경영정보 공시와 중앙정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경영정보 공개의 효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알리오시스템을 통한 국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Ⅱ장에서는 알리오시스템을 비롯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공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공공기관 투명경영 제고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Ⅲ장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시스템의 도입과 변천, 특징과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알리오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활용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정보공개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알리오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본 후 제Ⅴ장에서는 개선방안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주인-대리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방만경영의 문제를 줄이고 책임경영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1. 정보공개제도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가 1989년 9월 ‘국민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알 권리는 헌법 제10조에 의한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 정보 공개는 공공부문 운영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도입되었다. 1996년 12월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 및 기타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국민은 누구라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199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보공개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 및 기타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안병철, 2009)로서 국민은 누구라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는 목적과 필요성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란 국가나 사회에서 방해 없이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정보의 자유'라는 소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서 적극적 측면을 포함하는 권리를 말한다(안병철, 2009). 이것은 공공기관이 공표하는 공개된 정보의 수집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운영은 국민의 의사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국민의 의사결정에 전제가 되는 것이 정확한 정보의 제고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의사결정을 도와 행정참여도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김철용, 2003, p.342). 세 번째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처리 과정과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공공기관의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안병철, 2009). 또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감시와 감독기능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의 국정통제가 가능해진다(김승태, 2009). 정보 공개는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감독기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기능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책임경영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장지원·문신용, 2004). 넷째, 정보공개는 부정부패의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내부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와 비밀주의를 지양하고 비밀주의에 따른 폐해를 불식하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행동을 제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안병철, 2009, pp.133~160).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적극적인 도입 등에 따라 다

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대상 정보 선정의 주체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명진·문명재, 20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주체적으로 선정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II 유형의 사전정보공개제도와 수동적으로 요청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IV 유형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알리오시스템의 정보공개방식은 법에서 지정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IV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주체적으로 선정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II 유형의 사전정보공개제도와 수동적으로 요청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IV 유형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표 II-1〉 정보공개 유형분류

공개할 정보의 선정 \ 정보공개	자발적 공개	의무적 공개
주체적 정보 선정	I 유형	II 유형
수동적 정보 선정	III 유형	IV 유형

출처: 이명진·문명재, 2010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에는 알리오시스템 이외에도 정보공개제도의 공식 사이트인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공공기관의 출장기록을 공개하는 ‘해외출장정보사이트’(www.visit.go.kr), 정책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연구정보 서비스 ‘프리즘’(www.prism.go.kr),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내고장 살림’(www.lais.go.kr, 2007년 1월),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클린아이’(www.cleaneye.go.kr, 2007년 12월) 등이 있다.

〈표 II-2〉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표적인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제도 포털사이트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에 서비스 시작 - 20,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 정보목록 검색, 정보공개 청구, 공개자료 열람 - 기관별로 정보공개에 차이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출장정보사이트 (www.visit.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출장기록을 공개하는 해외출장정보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정보서비스 (www.prism.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서비스 시작 - 중앙부처에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수행하는 연구 용역을 관리하고 그 결과물을 국민에게 알리는 시스템 	

2. 정보공개제도 선행연구

경영정보 공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민간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이 경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주인-대리인 문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인-대리인 문

제는 외부자가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경영을 위임받은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외부자의 투자자금을 착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이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Akerlof, 1970)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즉, 기업 경영자가 외부자보다 사업 투자 기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경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문제를 완화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정보공개는 기업에 투자를 한 외부자가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보공개에 관한 국내연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98)」에 기반한 정부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정부의 정보공개 행태를 분석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안병철(2009)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규범적, 제도적, 행태적 접근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규범적 접근은 1998년 정보공개법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으며 주로 이론적 측면에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운식, 1991; 최창학, 1994). 두 번째, 제도적 접근은 1998년 정보공개법 실시 이후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실태 및 정보공개 효과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성도경 외, 2001; 문종열, 2002; 임진수, 2006; 김승태, 2006). 이근주(2003)는 서울특별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OPEN system)을 중심으로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행태적 접근으로 실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접근 방식은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성격(이용정, 1998), 공공기관의 청렴도, 민원접수, 고객만족도, 정보청구건수(장지원 외, 2004), 부처의 기능(이명진, 2010), 수행업무의 성격, 부서의 권력 여부(안병철, 2009)등의 변수의 영향력이 분석되었다.

안병철(2009)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영향요인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43개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의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정보공개현황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부기능 및 행정부처별 특성에 따른 정보공개 행태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행태는 권력부서이면서 기획업무 수행기관일수록 회피 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를 보이며, 비권력부서이면서 집행업무 수행기관일수록 공개 지

정보공개에 관한 국내연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98)」에 기반한 정부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는 정보공개 효과와 정보공개제도 실시에 따른 기관의 정보공개 행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민간기업과 중앙정부부처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적 성향으로 인해 적극적 정보공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원·문신용(2004)은 33개의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을 중심으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각 변수들이 정보공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정보공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태(2009)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명진·문명재(2010)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의 정보공개 운영현황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정보공개 회피요인과 부처기능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기관의 정보공개 행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관의 정보공개 행태가 기관이 사용하는 수단이나 업무 성격, 기능에 의하여 체계적인(systemic)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는 정보공개 효과와 정보공개제도 실시에 따른 기관의 정보공개 행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민간기업과 중앙정부부처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사점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와 행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기관 특성과 행태적 차이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와 공공기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관리방안의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이용도와 활용이 점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OECD, 2005)은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권장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공공기관 관리방안 개선을 위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권장사항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일반대중과 의회, 대중매체에 공개하는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정보공개에 대한 권장이 알리오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알리오시스템은 공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제규범을 따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공기업 정보공개에 대한 요청에 의해 도입되

었다고 볼 수 있다.

OECD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항목은 크게 정보공개
의 주요 방법으로 종합연례보고서라는 방식을 제시한 것과, 정보공개에 포함되
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제시이다. 우리나라는 알리오시스템을 도입하여
OECD의 권장사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인 공시항목
과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OECD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봄으로
써 알리오시스템에서 차후에 추가공시항목으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생
각해볼 수 있다.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기업이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높은 투명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의 조정기관 혹은 소
유기관에서 공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종합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출판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종합연례보고서는 일반대중과 의회, 대중매체에 대
한 핵심 정보공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종합연례보고
서에서는 공기업의 전반적인 성과와 변화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
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종합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공기업 조정기관이나
소유기관은 공기업의 성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공기업 정책을 명
확하게 할 수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공기업의 종합연례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 <표 II-3>에 제시된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가 포함되어
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항목 중에서 민간기업이나 정
부의 연례보고서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공공기관과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
는 항목이다. 공공기관의 소유주인 국가의 소유권 정책과 소유권 이행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유권이 기능하는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요청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권장사항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일반대중과 의회, 대중매체에
공개하는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 서면으로 출판되는 연례종합보고서의 형태와는 별도로 일부 국가에서 공기업의 조정기관이나 소유기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일반대중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표 II-3〉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종합연례보고서의 항목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소유권 정책과 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정보 • 소유권 기능의 구조 • 공기업 발전에 대한 설명 • 요약된 재무정보: 회전율, 순익, 현금흐름, 총투자, 자기자본 순이익률 (Return On Equity, ROE), 자본/자산 비율, 배당, 자료를 요약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 이사회회의 변화 • 중요한 공기업에 대한 개별 보고서
--

OECD 가이드라인은 더욱 구체적으로,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개별 공기업은 연례보고서에서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소유주로서의 국가와 일반대중이 가질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1) 공기업의 목적과 성취에 대한 명확한 기술, (2) 공기업의 소유권과 의사결정구조, (3) 금전적 위험 요소와 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4) 정부의 지불보증을 포함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과 같은 재정보조에 대해 기술, (5) 출자기관 등 관련된 기관과의 금전적 거래발생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것을 권장한다.

OECD 가이드라인은 서면으로 출판되는 연례종합보고서의 형태와는 별도로 일부 국가에서 공기업의 조정기관이나 소유기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일반대중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공개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ECD 가이드라인은 공기업도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회계조사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높은 수준의 회계와 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공기업 이사와 최고경영자가 재무보고서에 서명하고 공기업의 운영과 재무에 대한 정보가 올바르게 바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는 수준의 정보공개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경우 더욱 유용

하며 국가예산과 국가 재정위기,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큰 경우 더더욱 중요하다. EU의 경우 정부 보조를 받는 기업은 정부사업에 대해 별도로 회계 계정을 관리해야 함도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OECD의 권장사항은 현재 알리오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통합공시제도에 있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공시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이다. 공시되는 정보에 대한 높은 수준의 회계조사와 감사의 의무화,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책임지는 시스템은 공시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에 대한 설명, 소유권 정책, 정부의 재정지원 등에 대한 항목은 향후 알리오시스템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례보고서의 발간은 기관간, 연도별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고 데이터의 축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내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Ⅲ. 공공기관 정보공개 현황

1.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경영정보 통합공시제도가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외부 지배구조는 지난 25년간 주로 경영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왔으나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도입으로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2005년 발간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경영정보 공개에 대한 항목을 근거로 하여 추진되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내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는 2005년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 12월부터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All Public Information System in One, Alio, www.alio.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후 2007년 4월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 중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제

알리오 시스템이 민간의 경영정보공시시스템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무정보 이외에 임직원의 보수와 노동조합, 이사회 활동 등에 대한 내부 운영정보를 공시한다는 것이다.

12조(통합공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13개의 경영공시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는 <별표1>에서 공시대상인 33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공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을 거쳐 통합공시기준 등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2005년~2009년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2007년 경영공시의 의무화 이후 공개되는 경영정보의 양과 더불어 품질관리가 향상되고 있다.

<표 Ⅲ-1> 알리오시스템 연혁

연도	변동사항
2005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PUBMIS :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구축완료. 서비스제공 시작 300여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영정보를 공개하기 시작
2006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공공기관 알리오(Alio)시스템'으로 확대·개편 (공시항목 확대 : 20개 → 27개)
2007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에 경영공시를 의무화하였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
2007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개선 신고센터', '채용정보시스템' 등 기능을 보완하여 혁신포털로 확대·개편

알리오시스템의 특징은 사용자의 정보요청 없이 사전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방식으로 항시적인 정보검색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의 재무정보뿐 아니라 보수, 노동조합, 이사회 활동, 채용정보 등의 비재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건검색과 기관비교 등의 기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알리오 시스템이 민간의 경영정보공시시스템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무정보 이외에 임직원의 보수와 노동조합, 이사회 활동 등에 대한 내부 운영정보를 공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지적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던 사항으로 보수와 노조활동, 이사회 활동 등을 알리오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관의 자체적인 점검 노력을 촉구하고, 외부의 감시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2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은 <표 Ⅲ-2>와 같이

일반현황과 인원, 경영성과, 재무현황 등 33개 항목에 대해 120여개 경영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표 Ⅲ-2〉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2010년 2월 기준)

대항목	항 목	기 준	공시주기
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소개, 주요기능 및 역할, 경영목표 및 전략, 기관소재지, 설립근거, 소관 주무기관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2. 임직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수 직원수(정원/현원, 정규직/비정규직) 직급별 인원수 	- 정기공시 : 연4회(분기별)
II. 기관운영	3. 임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별 성명, 직위, 직책, 임기, 주요경력, 선임절차 	- 수시공시
	4. 신규채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채용 실적 여성·장애인·이공계 신규채용 실적 청년인턴사원 채용현황 	- 정기공시 : 연4회(분기별)
	5. 임원연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별 기본급(기본연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상여금, 기타 성과 상여금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6. 직원 평균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1인당 기본급, 수당 등, 경영평가상여금, 기타 성과 상여금 직원 평균근속년수 신입직원 평균보수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7. 기관장 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8. 복리후생비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급여성·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 국외출장 정보, 출장보고서 	- 수시공시
	10. 노동조합 관련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조합 가입범위, 노동조합 가입율, 전임자수, 상급노조 	- 정기공시 : 연4회(분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협약 노사간 별도로 합의한 모든 사항 등 	- 수시공시
	11. 취업규칙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복무, 징계, 보수, 직제 등 관련 규정 	- 수시공시

〈표 Ⅲ-2〉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2010년 2월 기준) 〈계속〉

대항목	항 목	기 준	공시주기
Ⅲ. 경영성과 및 주요사업	12. 요약 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상 주요항목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13. 요약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 주요항목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14. 수입 · 지출현황	• 수입 - 정부지원, 자체수입 내역 등 • 지출 -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15. 주요사업	• 주요사업명 및 사업비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16. 투자집행내역	• 투자 집행 내역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 주주명, 납입자본금, 지분율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18. 장단기 차입금현황	•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 정기공시 : 연2회 (4월, 10월말)
	19. 투자 및 출자현황	• 타법인 투 · 출자 현황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 출자회사 정보 - 퇴직임원 취업현황, 거래내역, 채무보증 현황 등	- 수시공시 및 정기공시 연1회(4월말)
		• 신규 시설투자	- 수시공시
	20. 연간 출연 및 증여	• 액수, 대상물, 주요내용, 상세내역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21. 경영부담 비용추계	• 담보제공현황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 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현황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 수시공시	
Ⅳ. 대내외 평가	22. 국회 지적사항	• 국회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및 계획	- 수시공시
	23. 감사원 / 주무부처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감사원/주무부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및 계획	- 수시공시
	24. 경영실적 평가결과	•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
	25. 경영평가 지적사항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지표별 평가등급 D를 받은 경우) 및 개선결과	- 정기공시 : 연2회 (4월, 10월말)
	2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
	27.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
	28. 이사회회의록, 내부감사결과	• 이사회 회의록, 내부 · 외부 감사결과 등	- 수시공시
	Ⅴ. 공시사항	29. 경영혁신사례	• 인사 · 노사관리 합리화, 고객만족도 제고 등 혁신 성공사례
30. 채용정보		• 직원 신규채용 정보	- 수시공시
31. 입찰정보		• 기관별 영역 등 공개입찰정보	- 수시공시
32. 연구보고서		• 기관 운영 및 활동 관련 연구보고서	- 수시공시
33. 기타정보공개		• 사회공헌활동 및 기관 운영 관련, 공개 필요사항	- 수시공시

주: 1) '09. 9월 복리후생비, 노동조합 관련현황을 세분화하여 공시하도록 개선
 - (복리후생비) 학자금, 주택자금, 사내복지기금 이외에 의료비, 경조비, 행사지원비 등 추가
 - (단체협약) 산업별, 지부별 협약, 보충협약, 임금협약, 노사합의 사항 등 추가
 2) 취업규칙은 인사 · 복무 · 보수 · 직제 등 근로조건 관련 규정으로서 '10. 4월에 공시항목으로 신설 (기존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정보 공시' 폐지로 전체 공시항목 수는 33개로 동일)

알리오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http://www.alio.go.kr>) 상시적으로 접속이 가능하며 알리오 소개, 경영공시, 정보센터, 참여마당의 네 가지 메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알리오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http://www.alio.go.kr>) 상시적으로 접속이 가능하며 알리오 소개, 경영공시, 정보센터, 참여마당의 네 가지 메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I-1] 알리오시스템 첫 페이지



<표 III-3> 알리오시스템의 세부 구성

구 성	상세내용
알리오 소개	알리오시스템 소개, 연혁, 자료 이용 시 주의사항 등 공지
경영공시	공공기관의 정의 및 목록,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조건검색, 기관별 비교 등
정보센터	공지사항, 채용정보센터, 입찰정보, 연구보고서, 해명자료공시, 창의경영사례 등
참여마당	경영신고센터, 자유게시판

경영정보 공시의 기본 전제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알리오시스템의 경우, 공시정보의 품질관리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2. 공시정보의 품질관리

경영정보 공시의 기본 전제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알리오시스템의 경우, 공시정보의 품질관리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공시정보의 입력방식은 공공기관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공시정보 입력기간 동안에 직접 입력하고 있다. 공시정보의 입력 완료 후 입력된 정보의 오류 확인 및 품질검사를 위해 규정되어 있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알리오시스템의 관리부서에서 정보의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인해 전 기관에 대해 충분한 정확도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의 정확성과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는 현재 공시정보의 담당자를 명시하는 것과, 불성실 공시가 발견된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사후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8조 및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라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기관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불성실 공시를 사후적으로 발견한 경우, 현재 제도상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1~5점 사이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벌점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불성실 공시에는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공시변경 등이 포함되는데 공시불이행은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보다 늦게 공시하는 경우이며, 허위공시는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에 해당된다. 공시변경은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이다.

〈표 Ⅲ-4〉 불성실 공시 유형별 벌점

불성실 유형	위반내용	벌점
1. 공시불이행	• 공시사항을 미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	5점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6개월 경과 이후 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	4점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개월 경과 이후 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	3점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경과 이후 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	2점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	1점
2.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항목별 과점	5점
3. 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수정 횟수당 과점	1~5점

공시정보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성실 공시를 줄이거나 불성실 공시를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불성실 공시로 인해 받은 연간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기관주의’를 줄 수 있으며, 연간 벌점이 20점 이상이 되는 기관은 불성실기관 지정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불성실 공시에 관한 조치는 2010년 2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개정안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는데, 2년 연속 ‘기관주의’ 이상에 해당되는 연간 벌점을 10점 이상 받은 경우에도 불성실 기관 지정 및 관련자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후조치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은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 Ⅲ-5〉 불성실 공시 벌점별 사후조치(2010. 2월 기준)

벌점 기준	사후조치
연간 벌점 10점 초과	기관주의
연간 벌점 20점 초과	불성실기관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2년 연속 ‘기관주의’ 이상에 해당되는 10점 이상인 경우	불성실기관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그러나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불성실 공시가 있는 경우 바로바로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모든 기관의 불성실 공시를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시정보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성실 공시를 줄이거나 불성실 공시를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경영공시제도의 시행 이후 6년이 경과됨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인 중요성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IV. 알리오시스템의 활용 및 이슈

1.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활용

공공기관 경영공시제도의 시행 이후 6년이 경과됨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인 중요성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알리오시스템을 통한 상시적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학계, 언론 등에서 공공기관 기초 자료의 정보원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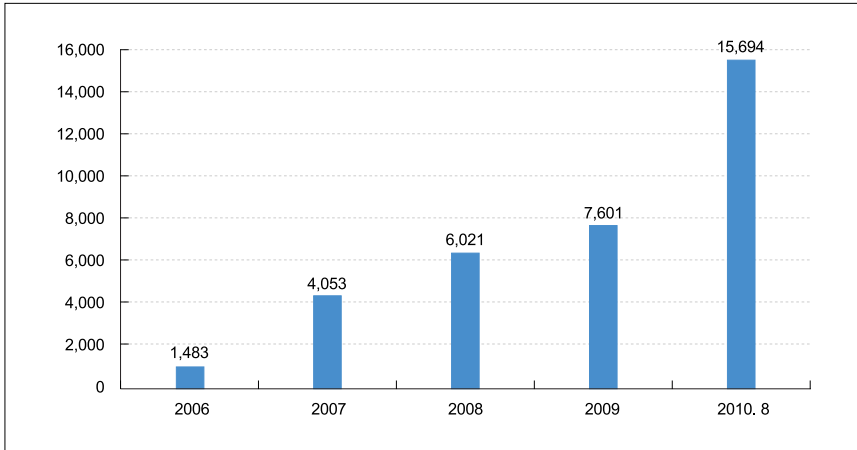
언론과 국회에서는 알리오시스템에 공개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분석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정감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알리오시스템의 정보를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수시로 지적하고 있는데 2010년 9월까지 알리오시스템의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공공기관의 기사 457건을 찾을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경영평가단에서도 본격적인 경영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기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알리오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한다. 알리오시스템의 공공기관 경영정보는 정부와 학계 등에서 공공기관의 현황분석, 정책의 효과분석과 개선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임직원 수와 평균보수 등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현행 보수 및 복리후생 분석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본장에서는 알리오 홈페이지 접속자료를 분석하여 알리오시스템의 연도별 월별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메뉴별 접속건수를 분석하며 각각의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분석한다. 더불어 알리오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작성된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언론에서 활용되는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알리오 홈페이지 접속자료 분석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알리오 홈페이지의 이용자 수(접속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일평균 접속 건수가 2006년에는 1,483건이었으나 2010년 8월 기준 15,694건으로 열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알리오시스템이 공공기관 정보를 습득하는 장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1] 알리오시스템 일평균 접속건수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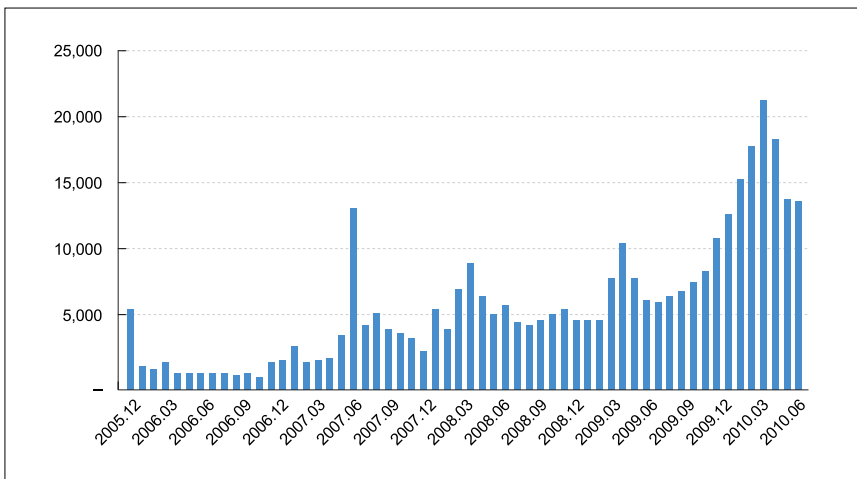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의 월별 접속건수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접속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공시일 직후인 4~6월에 접속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알리오시스템의 월별 접속건수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접속건수(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공시일 (4월 1일) 직후인 4~6월에 접속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그림 IV-2] 알리오시스템 일평균 접속건수 (월별)



출처: 기획재정부

알리오 홈페이지에는 알리오소개, 경영공시, 정보센터, 참여마당의 4개 메인 메뉴가 있으며,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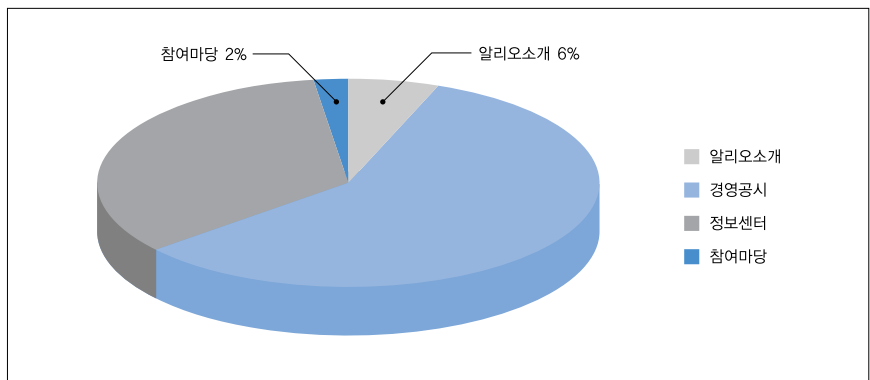
알리오 홈페이지에는 알리오소개, 경영공시, 정보센터, 참여마당의 4개 메인 메뉴가 있으며,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의 기간동안 메뉴별 방문자 수로 살펴본 이용현황은 경영공시가 가장 높고(58%), 정보센터의 이용도(34%)가 그 다음으로 높으며, 알리오소개(6%), 참여마당(2%)의 순서이다.

〈표 IV-1〉 알리오시스템 메뉴별 이용현황 (2009.12~2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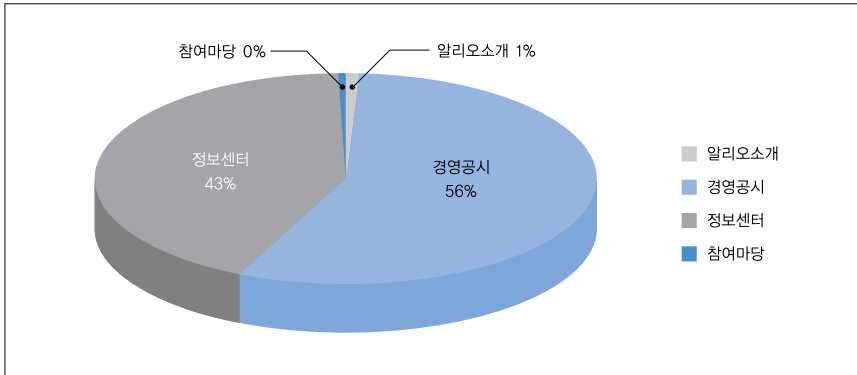
(단위: 명, %, 건)

메뉴	방문자수	비중	페이지뷰	비중
알리오소개	21,193	6	35,281	1
경영공시	211,217	58	2,289,035	56
정보센터	123,460	34	1,735,092	43
참여마당	6,850	2	11,175	0

[그림 IV-3] 알리오시스템 페이지별 방문자 수



[그림 IV-4] 알리오시스템 페이지별 조회 수



알리오시스템 경영공시메뉴 중에서도 기관의 일반현황, 직원평균보수, 임직원 수, 복리후생비, 임원연봉, 임원현황, 수입·지출현황 등의 순으로 이용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 사이의 알리오시스템의 접속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영공시메뉴에 속하는 각 상세 메뉴에 대한 페이지뷰의 크기에 따라 각각의 이용도를 알 수 있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알리오시스템 경영공시메뉴 중에서도 기관의 일반현황, 직원평균보수, 임직원 수, 복리후생비, 임원연봉, 임원현황, 수입·지출현황 등의 순으로 이용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보센터의 소메뉴에 대한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채용정보에 대한 접속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고(35.7%), 입찰정보(17.9%), 연구보고서(11.1%), 기관별 공지사항(9.1%), 이사회 회의록 내부감사결과(8.8%)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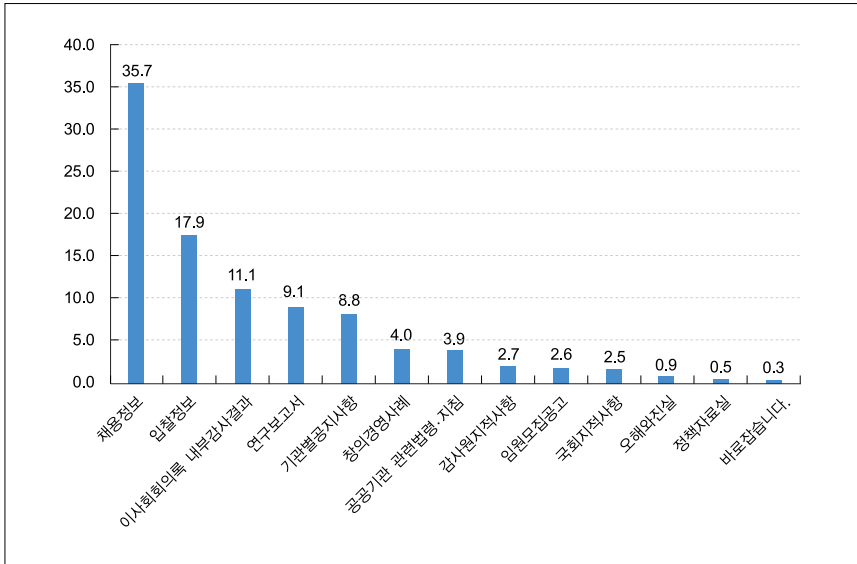
〈표 IV-2〉 경영공시 상세메뉴에 대한 이용현황 분석 (2009.12~2010.9)

(단위: 건, %)

알리오시스템		페이지뷰 합계	비 중	조회순위	
대항목	소항목				
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364,705	25.06	1	
	2. 임직원 수	130,207	8.95	3	
II. 기관운영	3. 임원현황	65,508	4.50	6	
	4. 신규채용 현황	38,944	2.68	9	
	5. 임원연봉	96,376	6.62	5	
	6. 직원 평균보수	250,291	17.20	2	
	7. 기관장 업무추진비	13,990	0.96	19	
	8. 복리후생비	102,980	7.08	4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9,666	0.66	24	
	10. 노동조합 관련현황	40,766	2.80	8	
	11. 취업규칙	N/A			
	III. 경영성과 및 주요 사업	12. 요약 대차대조표	38,016	2.61	10
		13. 요약 손익계산서	29,232	2.01	12
14. 수입·지출현황		43,954	3.02	7	
15. 주요사업		15,077	1.04	17	
16. 투자집행 내역		6,444	0.44	29	
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13,354	0.92	21	
18. 장단기 차입금현황		6,938	0.48	28	
19. 투자 및 출자현황		16,485	1.13	14	
20. 연간 출연 및 증여		6,328	0.43	30	
21. 경영부담 비용추계		7,489	0.51	26	
IV. 대내외 평가		22. 국회 지적사항	11,618	0.80	22
	23.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13,475	0.93	20	
	24. 경영실적 평가결과	15,995	1.10	16	
	25. 경영평가 지적사항	7,529	0.52	25	
	2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6,952	0.48	27	
	27.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5,443	0.37	31	
	28. 이사회회의록, 내부감사결과	23,412	1.61	13	
	V. 공지사향	29. 경영혁신사례	10,086	0.69	23
30. 채용정보		33,259	2.29	11	
31. 입찰정보		14,355	0.99	18	
32. 연구보고서		16,409	1.13	15	
33. 기타정보공개					
합 계		1,455,283	100.0		

출처: 기획재정부

[그림 IV-5] 정보센터 소메뉴에 대한 이용현황 분석



출처: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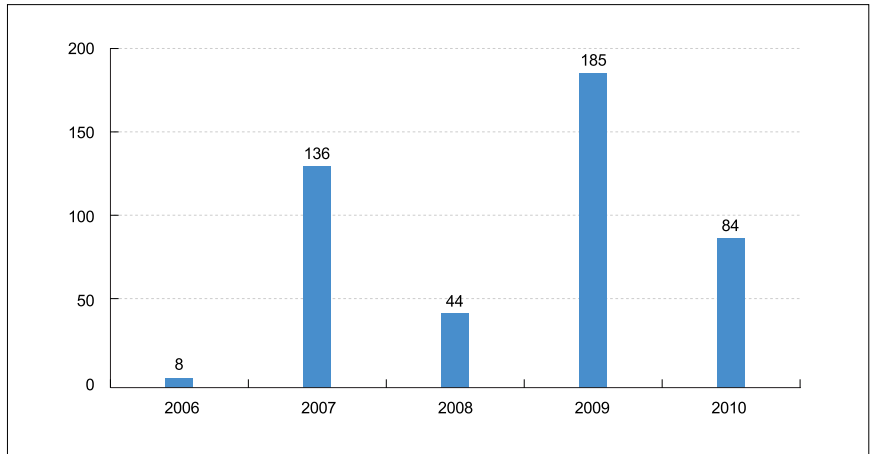
한국언론진흥재단의 KINDS 기사통합검색기능을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 2006년 이후 2010년 9월까지 457개의 신문기사에서 알리오시스템이 인용된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나. 언론에서의 활용도

알리오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알리오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신문 기사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KINDS 기사통합검색기능을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 2006년 이후 2010년 9월까지 457개의 신문기사에서 알리오시스템이 인용된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시스템이 개통된 직후인 2006년에는 알리오시스템을 인용한 기사가 몇건 되지 않았으나 2007년에 급증하여 136건에 달했다. 2008년에는 오히려 기사의 숫자가 감소하여 44건으로 줄었고 2009년에는 185건으로 다시 급증했으며 2010년은 9월까지 84건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공공기관 임금에 대한
기사는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임금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간혹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림 IV-6] 알리오시스템을 인용한 신문기사의 수



출처: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인용하여 작성된 신문기사 457건을 기사의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임금에 대한 기사가 183건(4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방만경영이 100건(21.9%), 공공기관 채용이 47건(10.3%), 부채 및 적자경영이 39건(8.5%)임을 알 수 있었다. 공공기관 임금에 대한 기사는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임금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간혹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방만경영에 대한 기사의 경우 공공기관의 지나치게 높은 복리후생비와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채용에 관한 기사는 공공기관의 채용실적, 현황, 계획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 및 적자에 대한 기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 및 적자의 현황과 원인,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표 IV-3> 알리오시스템을 인용한 신문기사의 주제별 분류

(단위: 건, %)

기사 주제	공공기관 임금	방만경영	채용	부채 및 적자경영
기사 수	183	100	47	39
비율	40.0	21.9	10.3	8.5

주: 신문기사는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각각의 주제로 분류되었으므로, 기사의 합이 전체 기사수와 일치하지 않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알리오시스템을 인용한 신문기사는 높은 임금, 방만 경영, 부채 및 적자경영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기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경영정보들이 공개되면서 민간기업의 근로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보수와 복리후생, 또 이와 더불어 부진한 경영 실적 등이 부각된 결과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인용한 부정적 기사의 작성 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 및 증가하였고, 이는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는 외부 압력의 기제로 작용하였다.

알리오시스템은 누구나 공공기관 정보에 대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국민감시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의 효과

인터넷을 통한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공시하는 알리오시스템은 누구나 공공기관 정보에 대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국민감시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효과는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사회 회의록, 노사합의 사항과 취업규칙 등 공공기관 운영 정보의 상세한 공개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는 것이다. 기관의 상세 운영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외부에서 보기에 비난의 여지가 있는 경영의 행태는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일례로서 이사회 회의록이 알리오시스템에 공개되면서 이사회 운영이 이전보다는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알리오시스템의 또 다른 효과는 언론이 알리오시스템에서 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경영개선을 추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융공기업의 높은 연봉수준이 계속적인 비판을 받은 후에 주요 금융공기업은 2006년 10월 인건비 개선안을 포함한 경영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연봉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여론의 형성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인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표 IV-4〉는 2006년 직원 평균 보수 상위 10개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2005~2009년의 1인당 평균 보수와 보수 증가율을 보여준다. 평균 보수 상위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8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알리오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10개 기관은 2007년 경영공시가 의무화된 이후 언론에서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임을 보여주는 예로 자주 인용되었다. 부정적 여론의 집중적인 표적이었던 이 10개 기관의 2007~2009년 사이의 평균보수 증가율을 보면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 증가율(1.7%)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유형별 평균 보수 증가율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거센 외부 압력에 대응하여 10개 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융공기업이 보수수준을 낮추려는 인건비 개선안을 내놓는 등 자체적인 개선 노력에 의한 것일 수 있다¹⁾. 그러나 예상과 달리 비난의 대상이었던 기관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공시를 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나치게 높은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의 기관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을 줄여서 허위로 공시를 했다가 발각되어 지적을 받은 경우이다.

알리오시스템은 공공기관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중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 방안에 해당하며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 알리오시스템 사례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8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알리오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1) 이러한 결론은 연도별 평균보수의 단순 비교에 근거한 것이며, 보수증가율의 변화가 알리오시스템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동기간 동안 발생한 기관의 직원 수 및 직원 구성의 변동과 같은 내부요인의 변화여부, 감사원 감사, 기관 평가 등에서 평균보수에 대한 지적 및 규제 여부와 같은 외생적 요인, 평균보수 상위기관의 동기간 이외의 보수증가율 추세 등도 기관의 보수증가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이러한 요인이 충분히 통제되어야 알리오시스템으로 인한 순 효과를 알 수 있다.

〈표 IV-4〉 2006년 기준 공공기관 1인당 평균보수 상위기관

(단위: 백만원, %)

2006 Rank	2009 Rank	주무부처	기관유형	기관명	1인당 평균보수					보수증가율			전체 공공기관 보수증가율 2007~2009	유형별 공공기관 보수증가율 2007~2009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5~2007	2005~2009			
1	1	금융위원회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한국거래소*	92	93	108	103	106	15.22	17.39	-1.85	1.7	3.7
2	6	금융위원회	기타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87	91	93	93	89	2.30	6.90	-4.30		5.2
3	3	금융위원회	기타공공기관	코스콤	76	90	92	84	94	23.68	21.05	2.17		5.2
4	4	금융위원회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한국예탁결제원*	85	90	98	92	93	9.41	15.29	-5.10		3.7
5	11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	85	87	89	88	82	-3.53	4.71	-7.87		5.2
6	8	지식경제부	기타공공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0	79	84	85	85	21.43	20.00	1.19		5.2
7	12	금융위원회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은행	76	79	85	83	82	7.89	11.84	-3.53		5.2
8	5	지식경제부	기타공공기관	한국전기연구원	80	78	87	82	92	15.00	8.75	5.75		5.2
9	15	지식경제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한국전력거래소	77	78	81	82	81	5.19	5.19	0.00		3.7
10	20	문화체육관광부	공기업 (준시장형)	한국방송광고공사	74	78	81	82	78	5.41	9.46	-3.70		0.0

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1인당 평균보수를 하위로 공시하여 적발되었음. 표에 나타난 자료는 이후에 정정된 자료를 반영함.
출처: 알리오시스템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지침은 있지만 정보품질관리가 기본적으로 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어, 지속적인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3. 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의 이슈

알리오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오시스템에 등록되는 정보의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 왔다. 특히 공시정보의 미입력, 입력상의 오류, 부실 입력 등으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이다. 알리오시스템의 도입 초기에는 자료 미입력의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34개 기관이 2005년 12월 이후 2007년 5월까지 아무런 정보도 입력하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발견되어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2007년 경영정보 공시가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자료 미입력의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었으나 자료입력상의 단순 오류,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지나치게 단순화한 입력 등은 지속적인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관장 업무추진비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총액만 공개한다거나 복리후생비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 입력함으로써 기관에 대한 정보에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는 알리오시스템이 공공기관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이 의심받고 알리오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후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자체적인 개선책을 추구하기보다 고의적인 허위정보를 공시할 우려가 항상 있다는 것이다. 앞의 <표 IV-4>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1인당 평균보수를 허위로 공시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시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조사기관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반면, 관리기관의 담당인원은 매우 소수이고 업무에 배당된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보의 공시와 품질은 전적으로 기관의 책임에 맡겨져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허위정보 공시의 예방이 어려운 형편이다.

앞 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지침은 있지만 정보품질관리가 기본적으로 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어, 지속적인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자료의 부실 문제와 허위 입력 자료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알리오시스템 개선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이다.

또 다른 이슈는 알리오시스템 공시항목의 대표성 여부에서 발생한다. 정부 회계기준과 공공기관의 회계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공공기관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정부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알리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을 살펴보면, 현재 알리오를 통해 공시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33개 항목 120여개의 정보는 단순 정

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유의미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알리오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정보의 제공 이외에도 관련 있는 여러 정보를 비교하여 보여주거나 의미 있는 재무비율 등을 같이 보여주어 유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V. 결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5년 12월에 도입된 알리오시스템은 전 공공기관에 대해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 등 33개항의 정보를 공시하는 경영정보 통합공시시스템이다. 알리오시스템은 매년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심도와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온라인으로 통합 공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프랑스와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주로 재무정보에 중점을 두어 제공하고 있다. 최근 포르투갈과 헝가리, 그리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재무정보와 더불어 임원급의 보수정보도 함께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알리오시스템은 전 공공기관에 대해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포함하여 폭넓은 정보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외의 다른 시스템에 뒤지지 않은 선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확실한 선진사례로 알리오시스템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 및 품질 검증을 위한 개선방안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소수 인원만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과 재원을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알리오시스템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알리오시스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관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의 종합, 분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단편적인 정보의 제공에서 더욱 추가하여 필요한 정보의 종합 및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지표정보의 생산 및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익성, 성장성, 재무안정성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중요지표 및 자주 보는 정보에 대한 강조와 차

알리오시스템은 해외의 다른 시스템에 뒤지지 않은 선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확실한 선진사례로 알리오시스템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 및 품질 검증을 위한 개선방안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알리오시스템을
이용한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공시는
향후 그 활용도와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별화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현재 공시되는 경영정보는 기관의 수익성에 치중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총체적인 성과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수익성과 공익성 사업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사업별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공공기관의 기여도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공공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보공개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 목적과 운영목표, 사업방법이 상이하므로 공시되는 정보의 종류가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공기업의 경우 투자자와 소비자를 위하여 재무현황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정책의 집행을 주로 담당하는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수익성에 대한 항목은 기본 재무정보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의 공익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정보공시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의 통합 및 종합 통계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현재 알리오시스템은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상세하게 제공하지만,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된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및 기관의 유형별, 업종별 다양한 구분에 따른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눈에 공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자료 축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연례보고서의 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알리오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 외에도 전 공공기관의 정보를 담은 통합 연차보고서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정보뿐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연례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연도별 비교가 가능해지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적으로도 의미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연례보고서는 현재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되는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고,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을 추가한다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알리오시스템을 이용한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공시는 향후 그 활용도와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시정보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알리오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앞에서 제시했던 개선과제 역시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KIP

<참고문헌>

- 김승태,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한계」,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2009, pp. 119~147.
-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한국학술정보, 2006
-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3
- 문종열, 「기업환경오염 통제수단으로서 환경정보공개정책의 장단점」, 『환경정책』, 10(3), 2002, pp. 89~113
- 성도경 외,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추진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3), 2001, pp. 281~294.
- 안병철, 「정부관료제의 정보공개행태 분석-43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2002-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2009, pp. 133~160.
- 이근주, 「정부투명성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2003년 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3
- 이명진·문명재,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4(1), 2010, pp. 121~146.
- 이용정,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 결정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8
- 이윤식, 「정보공개제도의 한국적 모형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행정학보』, 25(1), 1991, pp. 245~272
- 임진수,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 현황 및 기준분석」, 『한국기록관리학지』, 6(2), 2006, pp. 87~111.
- 장지원·문신용, 「행정정보공개에의 관련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연구』, 13(1), 2004, pp. 170~202.
- 최창학,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연구」, 『대구경북행정학회보』, 6(20), 1994, pp. 63~85.
- 허경선·김태훈,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및 매뉴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
- Akerlof, G.,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0, 1970, pp. 629~650.

- Craig, R., and Diga, J., “Corporate Accounting Disclosure in ASEAN,”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9(3), 1998, pp. 246~274.
- Eng, L., and Mak, Y., “Corporate governance and voluntary disclos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2, 2003, pp. 325~345
- Healy, P., and Palepu K., “Information asymmetry, corporate disclosure, and the capital markets: A review of the empirical disclosure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 2001, pp. 405~440.
- Jensen, M., and Meckling W.,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1976, pp. 305~360.
- OECD,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05
- OECD, Policy Brief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Asia, 2010



정책토론회리포트

- 제2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제2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정책 토론회 개요

- 주 제 제2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 일 시 2010년 11월 26일(금) 14:00~16:45
-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
- 진행순서
 - 14:00~14:15 개회사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4:15~14:30 정리 및 휴식
 - 14:30~15:30 제1주제: 조세 I (컨퍼런스룸 203호)
 - 사 회 자 홍기택 홍익대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I-1 재정패널자료의 소득이동성 고찰: 소득이동성의 추정 및 KLIPS 자료와의 비교 연구
 - 발 표 자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자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I-2 순조세부담의 경제적·정책적 효과 분석: 동태적 미시모의실험모형 2차 구축작업을 중심으로
 - 발 표 자 김경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동준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위원
 - 전승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자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4:30~15:30 제2주제: 재정 I (컨퍼런스룸 208A호)
 - 사 회 자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본부장
 - II-1 가구에 대한 정부지출의 소득계층별 혜택 분석
 - 발 표 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토 론 자 홍석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II-2 재정패널을 이용한 공적소득이전의 행태적 반응 분석
 - 발 표 자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 론 자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15:30~15:45 중간 휴식
 - 15:45~16:45 제3주제: 조세 II (컨퍼런스룸 203호)
 - 사 회 자 이봉호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III-1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세제효과 분석
 - 발 표 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III-2 가계의 주택수요능력과 중부세 부담 간의 상호관계 연구
 - 발 표 자 노상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토 론 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15:45~16:45 제4주제: 재정 II (컨퍼런스룸 208A호)
 - 사 회 자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 IV-1 담뱃세 인상의 가계재정 및 소득분배 파급효과 분석
 - 발 표 자 윤형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자 김상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IV-2 재정패널조사의 대체표본 특성 분석
 - 발 표 자 송현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 론 자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 순)

16:45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11월 26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개최한 「제2회 재정패널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제1주제 - 1 요약

재정패널자료의 소득이동성 고찰: 소득이동성의 추정 및 KLIPS 자료와의 비교 연구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상호 비교하면서 소득이동성을 분석하였다. 소득이동성은 두 기간 사이에 각 가구별 소득순위 변화에 기초하여 연속함수 가정하에서 소득이행변수의 분산 형태로 측정하였다. 재정패널자료와 KLIPS 자료의 연령별 소그룹의 가구소득이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르며, 그러한 특성은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득이행규칙과 소득이행변수를 정의하고 소득이행변수의 분산 형태로 소득이동성을 표현하였다.

재정패널자료 추정 결과, 소득이행변수의 분산은 0.114로 KLIPS 기준의 추정치 0.106과 비슷하다. KLIPS 자료 분석 결과, 소득이행변수의 분산은 1999년 0.183에서 2008년 0.106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소득이행변수 분산의 통계적 특성에 기초하여 분산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가설검정을 실시해 본 결과 10년의 변화 가운데 8번에 걸쳐 소득이동성이 유의하게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이동성을 변화(하락)시킨 요인은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인구고령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하락, 기술편향적 발전, 각종 규제 등이 시계열적으로 소득이동성을 하락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토론 요약

소득을 계층 간 연속함수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

강신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분배구조가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원인에 우리 사회가 통제 가능한 요인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이 심해지는 요인이 있다면 모든 계층들이 위험에 같이 노출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정태적 분배 특성뿐만 아니라 소득이동성과 같은 동태적 특성에서의 관점으로 살펴본 연구로서 학문적 의미가 높다.

본 연구의 특징은 첫째 재정패널자료를 사용, 둘째 소득이동성에 대한 기존 연구와 달리 소득을 계층 간의 migration matrix로 본 것이 아니라 연속함수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다만, 구간 부분을 매우 세분화하여 연속적으로 나누게 될 경우 소득이동이 관측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이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득이동보다 약간 over estimate될 확률이 높다. 또한 소득을 연속변수로 파악하게 되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10분위로 파악하게 되어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구간 부분을 상대화시키게 되면 자신의 특성이 아닌 상대적 특성으로 본인의 지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변동과 동시에 절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하다.

또한 소득집단을 연령별로 구분하였고, t시점에 비하여 t+1시점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인구학적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경제활

동 상태 및 고용상, 종사상의 지위 등은 변화가 클 가능성이 있고, 이는 소득지위의 변동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령은 같은 집단의 특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호트 효과를 계속 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연령이 아닌 다른 변수로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와의 비교 등이 추가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소득이동성의 해석에 있어서, 노동유연성의 저하를 들었는데 분석대상이 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중반 기간 동안은 외환위기 등으로 인한 이동성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빈곤층 진입률 및 퇴출률을 조건부 확률로 해석하여 결과를 보여준다면 좀 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한다.

제1주제 - 2 요약

순조세부담의 경제적·정책적 효과분석: 동태적 미시모의실험 모형 2차 구축작업을 중심으로

김경아/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동준/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위원
전승훈/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module, 소득변화 module, 소비변화 module 등의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태적 미시모의실험모형을 사용하여 소득세가 노동공급, 가계소득,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을 기준선으로 200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과 2010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그리고 2012년 이후 귀속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세율 인하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세전소득 및 가계의 소비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크기가 아주 미미하여 실제로는 소득세율 인하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토론 요약

유의성의 정의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추정했으면 하는 아쉬움 남다

성명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논문은 dynamic model을 제안하였는데 재정패널과 같은 경우 데이터 setting의 문제 때문에 동태적 모형은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 우려가 있어 정태적 모형에 주력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방법이다.

모형의 종류나 모습에 대해 구체적인 모습, 즉 simulation을 함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계층별 변화 등을 알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세계개편 효과에 있어서 개편 전과 개편 후의 gini index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면 더욱 흥미로운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각론으로 살펴보자면 노동공급탄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 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가 매우 작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전적으로 탄력성의 크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유의성의 종류에 따라 결론을 다르게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탄력성의 크기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따를 것이냐, 경제학적인 유의성

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소득세 탄력성이 0.0126으로 나타났는데, 재정패널을 사용해 본 결과 탄력성을 외생적으로 정의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유의성의 정의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추정해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재정패널은 가계조사와 달리 지출에 대한 자세한 응답 요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실제 감춰진 소득공제액이 클 수 있고 실제 세부담보다 과다하게 세부담을 도출해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의 추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제2주제 - 1 요약

가구에 대한 정부지출의 소득계층별 혜택 분석

김태일 /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가구에 대한 재원 이전의 소득계층별 혜택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보조금 등 명시적인 재원 이전만을 분석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출(근로소득공제)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10개 계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는 보조금(공적연금 제외)의 소득계층별 혜택은 누진적인 데 비하여 조세지출(근로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혜택은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세지출 혜택 규모가 보조금 혜택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총혜택의 소득계층별 배분은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혜택의 지니계수는 0.39(사회보험급여 포함할 경우 0.3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한 재원 사용에서 소득공제와 보조금 지출의 선택에 대한 것을 논

의하였다. 예를 들어 자녀 수에 따른 인적공제 보육료 소득공제와 같은 소득공제와, 보육수당 같은 보조금 지출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소득계층별 혜택은 판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보조금이 소득공제보다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토론 요약

가족소득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 고려돼야

홍석철 교수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우리나라에서 복지재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 측면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에서 이 논문은 의의가 있다.

논문을 요약해 보면,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을 소득계층을 10분위로 나누어 소득공제와 공적이전(보조금, 사회보험)에 대해 구분을 하고, 그 불평등도에 대해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재정지출의 혜택이 상당히 역진적이며 이는 고소득 계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에 있어서 역진성이 공적이전소득의 누진성보다도 더 많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주는 시사점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공제액이 동일하더라도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므로 그 결과는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공제항목 중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 폐지하고 대신 세액감면이나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양가족공제보다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부양가족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가족수당의 도입을 크게 다루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소득공제가 있는데 가족공제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 발췌하여 근로소득공제의 규모를 공식을 통하여 추정해 보았다. 전체 근로소득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 중에서 가족소득공제의 비중을 보면 저소득계층에서 가족소득공제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며, 만약 소득공제에서 가족수당으로 전환하게 되면 누진적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족소득수당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가구원의 수에 비례해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소득계층의 비중을 감안하여 디스카운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소득계층별로 가구원의 수를 보면, 독신이나 고령층에 많이 분포하여 가구원의 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소득층은 가구원의 수가 많이 분포한다. 따라서 가구원의 수에 비례하여 매גיע 된다면 역진성이 크게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다.

논문에서 아쉬운 점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점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은 각주 9번에 있다고 판단되며, '타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한다. 즉, 소득재분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타당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실, 소득공제항목이 다양한데, 이 항목들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항목과 정부정책 관련 항목이 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 다자녀공제, 장애인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등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항목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 자료에서 각 소득공제항목별로 혜택의 규모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것을 소득공제 각 항목별

로 혜택의 규모가 어떠한지, 비중이 어떠한지 확인한 후 만약 역진적 특성을 가진 항목이 있다면 보조금이나 세액감면으로 전환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시뮬레이션으로 해 보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구와 가구변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구변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고령층의 경우 비근로소득의 비중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 간의 이전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표본 중에서 비슷한 소득계층, 가구 수를 추출하여 분석해 본다면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재정정책의 시사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공제가 감소하게 되면 의료비, 교육비의 혜택이 감소할 수 있으며 고령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적 측면과의 연계성이 어떠한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의 본래 취지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조세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주요 목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의 일부를 전환한다면 그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늘어나는 이유가 면세점이 낮아져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압박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소득공제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면 면세점이 높아져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

제2주제 - 2 요약

재정패널을 이용한 공적소득이전의 행태적 반응 분석

김희삼 /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적소득이전은 정책당국이 의도하지 않았을 민간의 행태적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공적소득이전이 가구의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하였다. 고정효과 패널모형의 분석 결과, 공적이전소득 총액 1만원당 근로소득이 4천원, 사업소득이 5천원 감소하였다. 사적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 총액 1만원당 1천원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층 대상 현금지원은 1만원당 사적이전소득을 5천원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구축효과가 존재하였다.

공적소득이전 수급가구의 취업가구원 수와 가구원 중 취업자 비율도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와 함께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효과의 절대적 크기는 작았다. 한편 공적소득이전이 가구지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 현금지원인 유가환급금에서 뚜렷했는데, 특히 여행·스포츠·레저 등 여가와 관련된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토론 요약

가구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변수 도입 필요

석상훈 /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과 관련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영향, 이전소득에 있어서의 구축효과, 취업자 비율과 노동공급의 감소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요소가 다루어졌다. 또한 지출에 대한 효과까지 살펴본 우수한 연구이다. 다만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행태분석은 통상 개별단위로 분석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단위로 분석을 하였다. 가구는 개인과는 달리 상당히 이질적이고 시간의 변함에 따라 가구의 형태가 많이 변하게 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를 해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분석에서 가구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분석에서 자산, 소득 등의 변수값을 수준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수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노동공급을 원해도 시장에서 받아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정책적 효과에서 고정효과모형보다는 이중차감법(DID)이 더 효과적인 분석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더라도 분석에서와 같이 금액의 변화만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의 수급 여부에 대한 효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주제 - 1 요약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세제효과 분석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는 저출산 대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세제를 통한 지원 대책의 실질 혜택을 재정패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새로마지플랜 2015에서 제시된 다자녀추가공제의 경우 약 4만원 정도의 소득지원 효과에 지나지 않아 공제금액에 비해 실제 지원효과는 작았다. 또한 지원금액이 소득 상위분위가 하위분위에 비해서 커 지원 효과가 매우 역진적이었다. 다자녀추가공제를 폐지하고 환급 가능한 아동세액공제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역진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 요약

자녀세액공제제도가 소득공제 확대보다 세수감소가 더 클 수 있어

김현숙/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본 논문은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아동수당을 비교 분석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평균 세수감소 효과를 4만원 정도로 도출하였다. 다만, 분석시 도출한 세수감소분이 사용한 자료의 관측치 수(1,837 가구)의 평균값인가 혹은 다자녀가 있는 가구만인가 등의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점이 아쉽다.

또한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세제효과를 소득세를 중심으로 분석하다 보니, 누진적인 성격을 가진 소득세에 대한 정부지원의 역진적인 성격 해소가 주요 목적 인지 논문의 목적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잡는 것이 좋을 듯하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의 한계세율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므로, 소득세를 통한 정부의 출산지원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출산 해소를 위한 기본해법으로는 조금 불명확한 점이 있다. 오히려 출산 및 육아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소득세가 0인 가구에도 지원되는 자녀세액공제제도가 소득공제 확대보다 세수감소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제도의 design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에 보다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자녀가구이거나, 가입기 여성의 노동공급과 연동하여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다른 가정이 없을 경우 현행의 lump sum 형식인 아동수당과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결국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법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 및 소득에 따른 여성노동공급, EITC와의 연계 방법 등 다방면으로의 분석 방법을 추천한다.

제3주제 - 2 요약

가계의 주택수요능력과 중부세 부담 간의 상호관계 연구

노상윤/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구의 주택수요능력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력, 그리고 가계신용에 초점을 두고 가구의 주택소유 가능성과 관련 조세부담 가능성

을 살펴본 것이다. 주택수요 분석 결과, 주택소유 결정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PTI이고, 이어서 세대주 연령, 성, DTA, 월평균총소득규모, 거주지역, 가구원 수, 주거면적, LTV, HDT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만약 여타 조건은 동일하고 DTA 또는 LTV를 상승시켜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주택소유 가능성은 점차로 하락하게 되는데, 그 영향은 DTA가 LTV보다 컸다.

반대로 PTI의 개선에 따른 영향은 주택소유의 가능성을 점차 증가시키는데, 동일 폭의 변화에 있어 PTI의 개선이 주택소유 가능성을 가장 상승시켰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 설명변수들로는 우선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총액, 취업가구원 수,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구간 등이었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월평균소득구간, 자가임대 여부, 종사상 직위, 취업가구원 수, 최종학력 졸업 여부, 기타 자산시가 총액, 총가구원 수, 연령그룹, 이자 및 배당소득 순으로 조사되었다.

토론 요약

Research question을 분명히 하고 대답을 제시해야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논평을 먼저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research question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본 연구의 research question이 분명하고 적절하게 설정되었다면, 동 research question을 다루고자 할 때 필요한

data는 무엇인지 밝히고, 재정패널이 그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 주면 연구의 기여와 한계가 분명해질 것이다.

둘째로, 제목은 가계의 주택수요능력과 종부세 부담 간의 상호관계 연구이지만 논문에서는 상호관계에 대한 기술이 결여되어 있어서 두 부분이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주택수요능력의 분석단위는 가계인 반면 종부세의 부과단위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고 본다.

본 논문의 세부적인 것에 대한 논평을 연구 목차별로 하면 다음과 같다.

제I장 서론에서 연구배경을 기술하고 있는데, 앞서 밝힌 것처럼 research question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왜 이런 research question에 대한 답이 중요한지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rewriting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덧붙여서 선행연구 고찰의 경우에도 단순히 국내의 논문을 열거하기보다는 국내외 논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기존 문헌의 한계를 적시하여 본 논문을 차별화시키는 작업, 즉 본 논문의 기여도를 부각시키는 작업이 수행되면 좋을 것이다.

제II장 '가구 주택수요능력'에서는 주택수요능력이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정의하고 시작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수요가 주택소유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거서비스의 수요를 말하는지, 아니면 자거거주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동 장에서는 각종 cross tables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 사용하는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cross tables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각종 변수(예: 부동산 자산수준, LTV 등)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기존 문

현의 정의와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자산수준에는 자가거주용 주택의 가치, 토지의 가치 등이 포함되었는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LTV의 경우 1보다 큰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런 이상한 현상이 정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LTV는 부동산 자산가치 대비 가계 대출로 정의하고 있어서 주택의 구입과 관련이 없을 수 있는 반면, 통상의 LTV 개념은 주택 구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념상 불일치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유사 개념의 DTI와 PTI의 수준별 세대분포에서 총세대 수가 각각 1,795세대와 178세대로 큰 차이가 존재하는 점에 대해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DTA, DTI, LTV 등과 같은 변수들의 최대값이 각각 375배, 600배, 600배이므로 응답오류 및 data entry error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상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택소유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연소득 대비 연 상환액 비율인 PTI로 제시하고 있는데, 연 상환액이 학자금 대출과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의 합계액이므로 주택소유 여부와 PTI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설명변수인 PTI와 종속변수인 주택소유 여부 간에 내생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주제 - 1 요약

담뱃세 인상의 가계재정 및 소득분배 파급효과 분석

윤형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병인 /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는 2009년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첫째, 소득분위별로 담배지출액과 담배지출액비율을 분석하고, 현행 담배소비세가 흡연가구의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고, 둘째, 담배소비의 소득계층별 가격탄력성을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전제한 뒤, 담뱃값 인상폭이 소득분위별로 소득에서 담배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으며, 셋째, 둘째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담배가격 인상 후에 소득계층별로 지불하는 담배소비세를 추정해 보고 담배소비세 납부 이후에 초래될 소득불평등 변화와 역진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가구 기준의 1분위 담배지출액 비율인 3.87%와 흡연가구 기준의 1분위의 비율인 13.35%를 비교하면, 저소득 흡연가구들이 담배소비에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흡연가구의 5분위 기준 담배지출액 비율 계산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담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담배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 반해, 주류는 소득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담배지출액과 주류지출액이 소득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였다.

셋째, 기존 연구의 탄력성 수치를 활용하여 담배지출액 비율을 계산한 결과, 50% 가격인상시 1-3분위의 담배지출액 비율은 이전에 비해 부담이 증가하였고, 100% 인상률일 경우 저소득가구의 담배지출액 비

율은 이전과 같은 데 비해 비저소득가구들의 담배지출액 비율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할 때, 담배가격 인상이 저소득계층의 담배지출액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가격인상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정당화시켜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흡연가구 기준으로 볼 때, 현행 담배소비세는 세후소득 분배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소비세 납부 이후의 지니계수인 0.344에 비해 담배소비세 50% 인상은 0.344, 100% 인상은 0.346으로 인상시켜 세후소득 분배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akwani 지수 측정결과에서도 담배소비세는 역진적인 조세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배가격 인상시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토론 요약

담뱃세 관련 형평성 측면 분석에 의의

김상헌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세제와 관련하여 분석시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담뱃세와 관련하여 형평성의 측면을 분석한 논문이 부족하지만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론적인 분석이 아니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였다. 예를 들어, 가격이 오르면 수요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달라지나 현재 이 논문은 공급자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하여 조세부가가 되는 부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균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약점으로 보일 수 있다. 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이 얼마나 변동할 때

지출이 변하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것이 선행될 때 소득을 쓰지 않고 지출 대비를 쓰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담배지출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 흡연가구와 전체가구로 나누었을 때, 조세효과 전체를 보고자 할 때 흡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개념에 더 맞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흡연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때 지니계수가 더 좋아지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탄력성에 대한 가정을 0.5와 0.2로 설정하였는데, 연구의 결과가 여기에 매우 민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전 가구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Kakwani 지수에서는 그 차이가 나타난다. Kakwani 지수를 바탕으로 담배소비세를 높일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제4주제 - 2 요약

재정패널조사의 대체표본 특성 분석

송헌재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재정패널은 2차년도 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원표본을 대체하는 대체표본을 발굴하여 조사하였다. 2차년도에 대체된 표본은 3차년도 조사에서도 반복·조사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할 계획에 있다. 패널조사 2차년도 시점에서 대체표본을 발굴하여 조사한 경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이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 2차년도 가구 자료를 재정패널 2차년도에서 이탈한 원표본 가구와 이를 대체한 대체

표본가구 간에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체표본은 원표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고 자녀 수가 많은 가구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았고 자영업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의 비율이 낮고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가구경제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표본은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측면에서 비교적 원표본의 특성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자가 보유 비율이 원표본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원표본이 갖고 있던 부동산 자산규모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였다. 즉, 부동산 자산규모가 큰 가구의 체계적인 이탈이 발생하였고 대체표본만으로는 이러한 이탈에 의해 발생하는 편의를 올바르게 고려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표본의 자가 보유 비율 및 순자산의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체표본에서 소득증빙서류 제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3차년도 조사에서 93%의 높은 유지율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대체표본은 재정패널의 패널 유지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부동산 부분에 대한 차이는 outlier에 의한 영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봐야 한다.

둘째로, 패널데이터에서 표본이탈은 크게 두 가지 이탈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강력거절에 의한 이탈과 사망 및 이민에 의한 이탈이다. 특히, 사망 및 이민에 의한 이탈은 모집단의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이 두 가지 이탈은 다른 성격이라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이때 강력거절의 경우에는 가중치의 응답률에서 반영하여야 하고, 사망 및 이민의 경우에는 가중치의 사후층화에서 보정하여야 한다.

셋째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원표본 손실분과 대체표본의 특성을 보면 systematic하게 다른 표본이 대체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 단계에서 랜덤추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대체표본이 응답한 경우 실제 응답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추출과정에서 응답하기가 용이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systematic error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패널의 표본이 얼마나 우리나라 가구를 잘 대표하느냐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2차 조사에서 남은 표본을 사용하는 경우, 2차 조사에서 남은 표본과 대체표본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중 어떤 경우가 우리나라 가구의 모집단을 더 잘 대표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물론 적절한 가중치의 사용이 중요하다. 

토론 요약

대체표본과 원표본의 비교를 분석했다는 데 의의

강석훈 /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대체표본과 원표본의 비교를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논문이었다.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14:00~16:20
- 장 소 COEX 컨퍼런스룸(남) 300호
- 진행순서
 - 14:00~14:10 개회사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4:10~16:0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 회 자 최용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 발 표 자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 ▶ 토 론 자 김낙희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가나다 순)

16:00~16:2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6:20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12월 1일 한국조세연구원이 COEX 컨퍼런스룸(남) 300호에서 개최한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주제 발표 요약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손원익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본 연구는 준조세의 범위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준조세의 추이를 파악하고, 준조세가 GDP 및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였음.
 - 또한 준조세가 법인세수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여 조금 더 미시적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의 부담규모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각 기부금별로 산출하였으며, 이를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하여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였음.
- 조세 이외의 모든 부담을 포함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부담금 및 비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기준 그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합하고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20조 7,167억원에 이룸
 -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의 총합계에서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11조 5,477억원에 해당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 부담금 11조 5,477억원을 합계한 것으로 32조 2,644억원에 이룸.
-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① 사업자가 받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②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정의함.
 - 따라서 협의의 준조세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회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비자발적 기부금이 포함됨.
 - 협의의 준조세 정의를 기준으로 준조세 규모를 산출하면 부담금 2조 3,822억원,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으로 23조 989억원에 이룸.
- GDP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보면,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는 광의는 약 3.04%, 협의는 약 2.17%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총조세 대비 비중을 보면, 협의의 준조세는 2007년 일시적으로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협의 및 광의의 준조세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기준 광의는 15.39%, 협의는 11.0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법인세수 대비 준조세의 비중은 법인세수의 등락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광의의 경우 2007년 9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

- 여 조세 이외의 부담이 거의 법인세수와 유사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8년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준조세의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원인이 있음.
 - 협의의 준조세도 연도별 추세는 광의와 유사하며, 2008년 기준 법인세수 대비 57.27%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 대비 준조세 비중을 보면 광의의 준조세는 2004년 21.14%까지 상승하였다가 2005년 이후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의의 경우 약 13% 수준에서 광의의 준조세 비중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매출 300억원 이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부금 지출의 비자발성 정도를 파악하고, 실제 기부금 지출액 중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산출함.
 - 기부금 중 준조세 성격의 금액은 기부금 총액에 ‘완전 강제적’ 과 ‘다소 강제적’ 이라고 응답한 업체 수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함.
 - 다른 기부금에 비해 법정기부금이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이며, 지출동기가 ‘완전강제적’ 또는 ‘다소강제적’ 이라는 의견은 법정기부금에서는 8.2%, 특례기부금에서는 2.5%, 지정기부금에서는 1.3%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비자발성을 ‘중립적’ 이라는 응답까지 확대하는 경우, 비자발성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18.2%, 특례기부금은 12.2%, 지정기부금은 11.3%로 확대됨.
 - 업종별로 기부금의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정기부금의 경우 건설업에서 기부금의 강제성에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음.
 - 기부금의 비자발성을 ‘다소강제적’ 이상으로 할 경우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각각 6.1%, 6.5%의 비중을 보이며, ‘중립적’ 까지 포함하면 건설업의 경우 20.0%이고, 금융업의 경우 19.6%로 제조업 10.0%, 도소매업 12.5%에 비해 비자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부금의 자발성을 법인규모별로 보면, ‘다소강제적’ 이상은 대기업의 경우 4.6%, 중소기업의 경우 1.9%의 비중을 보이고, ‘중립적’ 까지 확대할 경우 대기업은 17%, 중소기업은 11.3%로 대기업의 비자발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분야별로 기부금의 자발성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기부 분야 중 가장 강제성이 높은 분야는 ‘환경 생태계 보전’ 영역으로 ‘다소강제적’ 이상에 응답한 기업이 33.3%를 차지하며, ‘중립적’ 에 응답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부 기업의 44.4%가 기부금이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두 번째로 강제성이 높은 분야는 ‘지역사회발전’ 영역으로 ‘다소강제적’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4.6%에 불과하지만, ‘중립적’ 까지 확대할 경우 33.5%의 기업이 해당 기부금이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지출 동기가 ‘완전강제적’ 또는 ‘다소강제적’ 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을 이용하여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추정하면 943억원에 이룸.
 - 비자발적 기부금의 범위를 ‘중립적’ 으로 응답한 기부금으로 확대할 경우 준조세에 포함되는 기부금의 규모는 3,573억원에 해당함.

- 이상에서 산출한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앞에서 구한 준조세의 규모에 추가하여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면 최대 32조 6,217억원에 이릅니다.
 - 광의의 정의를 기준으로 준조세 규모를 산출하면,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 부담금 11조 5,47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943억원 또는 3,573억원을 합계한 것으로 32조 3,587억원 또는 32조 6,217억원에 이릅니다.
 - 협의의 준조세 정의를 기준으로 준조세 규모를 산출하면 부담금 2조 3,822억원,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943억원 또는 3,573억원으로 총 23조 1,932억원 또는 23조 4,562억원에 이릅니다.
- 기업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를 조세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기업이 지는 부담으로 정의하였지만, 수익자부담원칙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의 경우 외부효과의 교정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담으로 분류되고, 사회보험료의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 또는 유사한 형태로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의 규모는 2조 3,822억원 정도입니다.
 -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추가하면 전체 규모가 2조 4,765억원 또는 2조 7,395억원에 해당합니다.
-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정확한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은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과 관련된 조세정

책 및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조세 이외의 부담과 관련된 정책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선이 요구되는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된 부담금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협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부담금 운영이 도입 취지 및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이 요구됩니다.
 - 현재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부담금관리 기본법 도입 이후 부담금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담금이 상당수 있으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 개별 부담금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생략함.
 - 개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부담금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부담금 부과 취지인 국민건강증진사업에는 31.3%가 사용되는 반면,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51.7%가 사용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경우도 대부분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담금보다는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도입 취지를 보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입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담금의 취지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부담금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또한 부과대상을 보면, 시설물사용자가 아닌 시설물소유자가 부과대상이며, 경유자동차의 경우도 경유자동차 사용에 대한 부과가 아니고 소유에 대한 부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해당하지 않음.
- 추가로 부과방법을 보면, 부담금 도입 취지에서 밝힌 오염저감을 통한 환경개선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므로 본 부담금은 환경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준조세를 축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음.
- 기업의 부담을 덜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부과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지출도 예산의 틀 내에서 결정할 수 있어서 부과 및 지출 모두 근거가 명확해지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음.



토론 요약

기업환경 및 국민부담 영향 등 구체적 연구 필요

김상헌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준조세의 가장 큰 문제는 지출과 수입의 측면에서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준조세에 관한 연구는 미비했으며, 발표자의 연구가 거의 전부이다. 준조세 규모를 추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연구였으며, 수치를 사회보험료와 기부금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까지 준조세에 관한 연구는 준조세의 개념을 어떻게 잡는지와 그 개념에 기초해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연구의 이유가 기업환경 측면이나 국민 부담의 측면에서 조세를 제외한 부담이 얼마나 있느냐에 있기 때문에 기업환경 및 국민의 부담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러한 영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준조세가 조세와 비교할 때 기업의 예측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 가장 좋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조세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엄격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준조세의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무관하게 갑자기 신설되고 폐지되기 때문에 왜 이런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준조세 규모가 어떤지에 대한 모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가와 준조세 규모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경쟁국의 준조세 규모를 측정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연구의 목적이 기업환경 개선에

있기 때문에 경쟁국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부담금관리법 신설 이후 부담금의 규모는 매년 안정적으로 100개를 전후해서 유지되지만, 부담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 부문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준조세의 대부분이 기금에 귀속되므로 기금과 부담금을 연계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분야 준조세 통합시키고 확대해야

동종인 /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분야의 정책이나 시민단체 등에 관여하면서 환경분야의 조세·기금 등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발표를 듣고 환경 분야의 조세가 많은 데 놀랐다. 환경분야에 대한 개선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종류가 너무 많다. 환경분야 내에서도 산재된 분야들의 정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되면서 인구 밀도뿐 아니라 오염밀도도 높은 편이다. 환경문제는 심각하며 주어진 정부 예산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많다.

환경분야의 속성을 좁혀서 보면 다양한 성격들이 있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들도 많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 법적기준이나 오염물질 기준달성치 등이 있는데, 이는 기준부과금이나 초과부과금 등 경제적 유인책을 사용해서 지역 기준치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수도권인 경우 수도권총량유지제를 시행해서 많이 배출한 곳은 많이 내고 적게 배출한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전체 배출총량을 유지하고 있다.

교통세는 한시적인 제도로 준조세와 성격이 다를 수는 있다. 환경세는 신설해서 통합시키고자 하는 논의 있었지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유차의 경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데 이 미세먼지에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이 문제이다. 수송용 경유에 정확히 부과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어렵다. PPP(Polluter Pay Principle), 원인자 부담원칙을 고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부담금이 많이 걷혔을 때에도 사용목적 문제를 생각해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이 필요하다.

환경세는 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으로서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비자발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 강제성으로 표현하고 싶고 환경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싶다. 환경분야의 준조세 부분은 통합시키고 환경 부분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여 확대가 필요하다.

중복·불합리한 기준 부과 부담금, 개선 필요

양금승 /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준조세에 관한 연구는 한국조세연구원뿐만 아니라 전경련에서도 일선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전경련이 준조세 규모를 조사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전경련 제안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전경련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과 달리 준조세의 규모를 최협의·협의·광의·최광의로 나누어서

분류한다. 준조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서 지난 2008년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법인세의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준조세의 규모는 기업의 경쟁력과 부담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물론 부담금의 경우 공익목적 달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억제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순수한 세금 이외의 금전적 부담 의무로 준조세를 얘기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는 준조세의 규모에서 수수료가 제외되어 있지만 수수료의 세부 사항을 보면 수수료가 반드시 수수료가 아닌 경우도 있으며, 행정제재 수단인 과태료/과징금도 광의의 준조세로 파악되기도 한다.

2001년 98개였던 부담금은 2009년 99개로, 수에 있어 큰 변화는 없지만, 징수실적은 2배에 이르러,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에 비해 그 징수규모가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부담금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예산통제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부담금의 예산을 통제하거나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300조원이 넘는 조세에 비해 부담금은 15조원 가량이므로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가 미흡하다.

물론 전경련에서 부담금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개발부담금과 농지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성격이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과 물관련 부담금도 세금과 중복되는 부문이 있다. 이와 같이 부담금 중에서 중복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이나 부담금 부과시 불합리한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그 결과 3,000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이 삭제되었으며, 2009년 6월에는 부담금개선방안을 통해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부담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을 또한 관리하기 때문에 부담금 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부담금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부담금을 줄이게 되면 조세를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부담금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2009년 8월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부과요율 검토 작업반'을 구성해서 징수실적이 높은 16개 부담금에 대해 금년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부처의 특수 사정 및 이해관계와 기획재정부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인해 12월 1일 현재까지 관련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부담금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개인에게도 해당한다. 국민증진부담금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177배가 증가했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설치 당시와 비교할 때 38배 증가했다. 이렇게 부담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까닭은 요율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요율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조정될 뿐만 아니라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도 민간 구성원이 절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율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추가적으로 기부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기부금의 경우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문이 개발사업에 있어 기부체납부분이다. 복합 쇼핑몰을 짓고 있는 기업을 예로 들면 기부체납액이 사업비의 20%에 이른다. 따라서 기부금 규모에 기부체납액이 포함되면 그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준조세에 대한 엄밀한 용어 정의가 전제

김종수 / 중앙일보 논설위원

우선 준조세라는 용어와 분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준조세라는 용어는 비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의미가 강하며,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낸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용어의 정의를 엄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의의 부담금에서 수익자부담이나 원인자부담에 의한 부담금은 부당한 부담이 아니며, 기부금에서도 자발적인 기부금은 좋은 의미의 부담이다. 따라서 개선해야 하는 부담금은 협의의 부담금 및 비자발적 기부금과 사회보험료 중 기업부담금이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이나 기업체에서 일반적인 용도로 준조세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준조세는 협의의 준조세라는 것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부담금이 9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한 이유가 징수의 편의나 재원운용의 재량권을 감안할 때 조세에 비해 부담금의 형태로 신설하고 징수하는 것이 편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이 기업의 부담을 측정하는 것인데 분류과정에서 개인의 부담이 상당히 큰 부담금까지 기업의 부담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부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준조세 규모의 과장이나 축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이 적절하더라도 효율이 적정하지 않다면 이 역시 개선의 대상이다. 따라서 협의의 준조세의 개념에 이러한 것까지 포괄적으로 넣을 수 없는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최근 기업이 여러 형태의 공익 또는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이 최초의 출연금을 낼 뿐만 아니라 운용 수익을 통해 기부금을 납부한다. 이러

한 기부금을 이 연구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기업의 총수가 나서서 사재 출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금액을 어떠한 분류로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도 시계열적인 통계가 누적된다면 부담금에 대한 부당한 측면을 상당부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담금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설치 운용

안세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준조세의 개념과 이번 연구에서의 준조세 개념이 일치하는지 의문이다.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준조세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돈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과거 조세도 법률에 규정된 부분이 적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법률에 거의 모두 편입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담금이 조세의 선례를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담금의 경우 조세에 비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법률에 의해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효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등과 같이 개선방향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부담금은 당연히 준조세가 아니며, 수익자부담이 아닌 부담금도 나름대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설치된다. 세부적인 부담에서 위임사항이 많든지 하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각각의 부담금은 명백한 설치 이유

를 가지고 설치된다.

기부금에 대한 것도 본 연구와 견해를 달리한다. 독재정권이 아닌 요즘 시대에 기업이 기부금을 강제적으로 내지 않았을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일종의 간접광고의 일환으로 기부했을 것이다. 그리고 비자발적이라는 의미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러한 간접광고비 목적의 기부금을 비자발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건설업에서 비자발적 기부금이 높게 나타난 까닭도 건설업의 특성상 간접광고비가 다른 업종보다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 나름대로 연구를 다시 설계해 보자면, 비자발성의 정도를 백분율로 파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비자발성이라는 것이 주관적 느낌이기 때문에 미국의 특정 선거구처럼 일정 백분율을 넘으면 강제성이 있고 일정 백분율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발적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준조세가 많다면 법인세 인하의 논의와 준조세에 대한 논의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적인 비교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KIP



공공정책포럼

■ 제1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정운영 방향

제11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정운영 방향
- 일 시 2010년 11월 17일 19:00-21: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KDI 초빙연구위원
 - 08:05~08:45 주제 발표
이동우 청와대 정책기획관
 - 08:45~09:25 자유 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11월 17일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정운영 방향」을 주제로 공공기관정책 연구센터가 개최한 제11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 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 / KDI 초빙연구위원

지난 8·15 경축사 이후, “공정한 사회”와 관련한 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공정(公正)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되지 못하였었다. 따라서 오늘을 계기로 공정한 사회의 의미와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 요약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정운영방향

이동우 / 청와대 정책기획관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의 새로운 정책적 좌표를 설정한 배경과 그 방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명암을 끝내고 “고용 있는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선진화 원년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더 큰 대한민국”의 슬로건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 이로써 집권 이후 G20 공동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경제 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하고,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안전한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녹색성장에 앞장서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과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의 강화로 해외로부터 Textbook Recovery라는 긍정적

인 평가를 받는 등 경제적 위상 역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것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빈곤 차등 정서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공동체 정서가 사라지고 수혜층과 비수혜층이 나누어지며 발생한다. 글로벌화 심화에 따라 주식·부동산·전문인력 등에서 글로벌 동조현상이 높아지는데 반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되는 등 국민적 동질성이 약해짐에 따라 글로벌 차등 정서가 심해지기도 한다. 또한 과거 경제개발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중도 실용층 역시 위축되고 있다.

국가에 대한 기대감 및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상승하나, 중소기업·내수자영업·청년실업 등의 문제로 부터 개인의 미래·경쟁에 대한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는 반면, 책임의식이 미흡해지고 상대빈곤 정서가 확대되는 구조적인 문제 역시 취약한 공동체 의식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8·15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천명하게 된 것이다.

독일의 상황을 진단한 파울 놀테 교수의 견해 역시 이러한 고민의 근거를 뒷받침한다. 특히 글로벌 유목민이 급증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탈국가’ 현상과, 고령화·실업·복지 등에 있어 국가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증대되는 ‘국가의존’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삼는데 ‘공정’과 ‘책임’만이 강조되는 것은 옳지 않다.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유·자유·창의’를 달성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황금률이다.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패자에게 재기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 개의 가치는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어

야 한다. 교육 분야를 예로 들면, 입학사정관제·자율형 사립고 등과 같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모두에게 합당한 사회조건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인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통해 정부는 친서민 정책, 기업은 상생경영, 국민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국가·시장·가족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 청년실업, 고령화, 내수 중소기업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준비와 다문화 관리 등 DAC, G20 국가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정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칫 포퓰리즘과 차세대에 대한 희생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보다는 공정한 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국민·정부가 노력할 때 더 큰 가치가 발휘된다고 본다.

이는 결코 비즈니스를 중시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Textbook Recovery로 불릴 만큼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확대 및 금리·환율정책 등 정부 주도적 노력이 효과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수혜를 입은 대기업 등이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 상생경영 등을 실천해야 할 때인 것이다. 상생경영이 기업의 이윤 창출에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미국 경영학계의 흐름이다. 기업을 사회생태계의 일부로 보고, 고객·투자자 외에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가를 넘어 지구촌에 유익한 경영을 하는 것이 21세기 사랑받는 기업의 조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인도, 아프리카 등으로 비즈니스의 영역을 넓히는 데 있어서도 공정함을 중요시하는 마인드는 성공의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해야 한다. 또한 웹 2.0시대에 따른 정책의 프로슈머화로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새로운 균형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은 공정한 법·제도의 집행, 공정한 인사 및 공정문화를 정립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회복, 공정한 사회의 확립과 더불어 서울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기반을 갖추므로써, 기존의 경제 우등국을 넘어 국격을 갖춘 나라로 국위를 향상시켜야 하겠다.

■ 자유 토론

송대희/KDI 초빙연구위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져오는 사회적 공백은 이념적, 경제적으로 큰 문제이다. 또한 글로벌화에 따른 사회적 괴리의 확대와 그에 따른 갈등을 해결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재인/단국대학교 경영학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실제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그 성과 역시 향상된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논할 때 동등한 기회를 추구하는 ‘Equal Opportunity’와, 무조건적인 보상과는 다른 ‘Affirmative Action’ 간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용성/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선진국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정과 불공정의 구별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어 법제도를 통해 구분을 하거나, EO 등 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누가 공정과 불공정을 구별할 것인지, 또한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동우 /청와대 정책기획관(발표자)

교과서적인 Affirmative Action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제위기 이후 많은 재정이 조기집행됨으로써 적극적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최저생계비 비판 등 여론의 모순적인 태도 역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는 분배·중세 위주의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나 원칙적인 Affirmative Action과는 다르다. 대신 재정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나눔, 봉사의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업경영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동시에 국민이 정책의 프로슈머이자 판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1만여명의 주부모니터단이 1년에 두 차례 정책검증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정책 소비자와 정책 공급자 간 접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단히 실용적이며 현실에 적합한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진 /공공정책국 민영화과 과장

공공기관 역시 공정한 사회에서의 역할 및 실천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우 /청와대 정책기획관(발표자)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공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향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민영화를 최우선시 했으나, 이번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일자리 창출, 서비스 경영 등 공기업을 통한 Total Solution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은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 축으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외진출 등 필요한 분야에는 공기업의 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자 한다. 또한 인력의 축소보다는 임금피크제 활용 등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고용의 경직성 극복 및 조직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Job mismatch를 해결하는 방향의 정책적 접근도 시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공정한 사회의 틀 안에서 민간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상생경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 공기업 평가 역시 기관 및 기관장 평가를 합치하는 등 개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평가를 단순화 및 실질적으로 유형화하여 공기업 직원, 국민, 언론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것이다. 또한 신뢰지수로서의 브랜드 관리 등도 평가에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기업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민간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택환 /미래전략연구센터 소장

공정한 사회로의 정책기조가 사회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광범위한 부분

에 걸쳐 있는 개념인지 궁금하다. 이제까지 우리는 경제적으로 국격이 향상되는 진전을 이루었으나,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청년실업 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통해 이러한 부분의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동우/청와대 정책기획관(발표자)

공정한 사회는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친서민, 중도실용의 경제사회 정책이다. 이는 더 이상 국가 주도의 변화가 아니라, 나눔과 봉사를 사회 저변으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현재 공정한 사회로의 기조는 국가의 철학 및 정체성까지 포괄하는 의미는 아니다. 대신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자 기본적인 국민적 공감대 확보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구본진/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공정한 사회의 출발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프레임 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재확인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송대희/KDI 초빙연구위원

포럼을 통해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자칫 자만하기 쉬운 때에 우리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현재 우리가 21세기 글로벌 국가로서의 역

량을 쌓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이며, 내실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해중/공공정책국 국장

공정한 사회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에 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기관과도 논의할 예정이다. 물론 공정한 사회의 정책기조와 기존의 선진화, 시장기능 활성화 및 효율화 추구 등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시정, 사회적 취약 계층에 기회 제공, 나눔과 봉사의 실천 등 가능한 과제 등을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이다.

박정수/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공공기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12월에는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공공기관의 선진화 패러다임의 전환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발표할 것이다. 내년 1월에는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강만수 위원장을 초청,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마련할 것이다. **KIPF**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10-23

요약

- 이탈리아 과세관청은 2010년 10월 6일에 피지배 외국회사규정의 적용을 강화하는 적용지침(Resolution) 51/E를 발표함
- 포르투갈 정부는 2010년 10월 15일 201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각종 공제항목의 검토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임
- 헝가리 의회는 2010년 10월 18일 위기세제 법안에 승인함
 - 주요 내용은 에너지, 전자통신, 소매부문에 대한 특별세 도입,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단일세율 도입 등임
- 중국에서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부담금을 부과함

1. 이탈리아, 피지배외국회사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발표

- 이탈리아 과세관청은 2010년 10월 6일에 피지배외국회사규정(이하, CFC rule)의 적용을 강화하는 적용지침(Resolution) 51/E를 발표함
 - CFC rule은 지배권을 갖는 외국법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의제하는 제도임
 - 과세관청은 2010년 7월 27일에 조세정보교류협정 체결국가(이하, white list 국가)¹⁾를 발표하였으며, white list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실체(entities)와의 거래에 대해서 CFC rule을 적용하도록 함
 - 2010년 10월 6일에 발표된 적용지침(Resolution) 51/E는 white list 국가가 아닌 국가와의 거래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CFC rule의 적용을 강화하는 조치임
- 적용지침은 white list 국가가 아닌 국가와의 거래에 대해서 CFC rule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요건에 대

1) <http://www.agenziaentrate.gov.it/wps/portal/entrate/documentazione>

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음

- 즉, 적용지침에 따르면, white list 국가가 아닌 국가와의 거래시에 CFC rule의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 요건과 조세피난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활동 요건(active business test) : 외국실체는 실제로 조세피난처(blacklisted country)의 '시장 안에서' 제조업이나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
- 조세피난처 요건(localization test) : 외국실체는 조세피난처로 소득의 이전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가. 사업활동 요건(Active Business Test)

- 사업활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동은 실제로 능동소득(active income)을 발생시키는 활동임
 - 즉, 능동소득의 발생기준은 총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능동소득임을 의미함
- '시장 안에서' 의 주된 활동은 외국실체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으로 그 설립된 국가와 경제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활동을 의미함
 - 특히, 활동은 주로 그 국가나 지역의 공급자나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함
 - 지역(territory)은 피지배외국회사(이하, CFC)가 설립된 국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경제적, 지형학적, 또는 전략적으로 관련성 있는 지역을 포괄함
- 금융보험 활동에 대해서는 '시장 안에서' 에 관한 특례가 적용됨
 - 즉, 대부분의 예금, 투자, 또는 수입이 외국실체가 설립된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

나. 조세피난처 요건(Localization test)

- CFC 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사업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소득 중 유효세율이 이탈리아 법인세율의 50%에 미달될 경우의 소득임
 - 즉, 외국실체의 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유효세율이 그 외국실체가 이탈리아의 법인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CFC 소득으로 봄
 - 또한, CFC 소득은 현재 조세피난처가 아니거나 미래에 조세피난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국가에 설립된 피지배외국회사의 소득을 포함함
- CFC의 유효세율이 이탈리아에서의 조세부담 수준과 유사한 경우 조세피난처에 소득이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음
 - 특히,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지주회사의 소득이 조세피난처가 아닌 국가에서 조세를 부담한 능동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전액 발생한다면, 그 지주회사는 조세피난처 요건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음

2. 포르투갈 예산안 의회 제출

- 정부는 2010년 10월 15일 2011 예산안(2011 Budget Bill)을 의회에 제출함
 - 2011 예산안상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각종 공제항목의 검토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의 증세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 법인세 분야

- 과세특례(tax incentives) 총액한도를 과세특례가 없을 경우 법인세 납부세액의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납부세액이 과세특례가 없을 경우 법인세 납부세액의 75%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과세특례에 총액한도를 두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상기 비율을 75%에서 90%로 인상함으로써 과세특례 총액한도를 하향 조정할 방침임
 - 또한 총액한도를 적용받는 과세특례 항목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상 특정 항목으로 제한하던 것을 열거되지 않은 모든 항목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
 - 제외대상으로 열거된 항목으로는 연구개발, 자유지역, 세율인하, 고용창출, 지주회사, 벤처캐피탈 관련 과세특례가 있음
- 법인간 배당시 적용되는 배당소득공제 중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50%의 공제를 폐지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거주 법인간의 배당에 대해서는
 - i) 수취법인이 도관(transparent entity)에 해당하지 않고
 - ii) 배당금 수취법인이 배당 전 1년 동안 배당금 지급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또는 보유 지분가액이 취득가액 기준으로 2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완전면세가 적용되고 있음
 - 또한 10%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배당소득을 완전 면세하는 대신 50%만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 예산안에 의하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분율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50%의 배당소득공제를 폐지할 방침임
 - 이 외에도 순수지주회사(SGPSs)에 대해 배당소득

공제 적용시 일반법인과 같이 10%의 지분율 요건을 도입함

-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에 대해서는 특별과세를 도입함
 - 적용대상은 국내 신용기관 및 국외 신용기관의 국내 지점임
 - 납부세액은 신용기관의 대차대조표상 부채금액에 기초하여 특정 보증금 등을 공제한 후 0.01~0.0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또한 일부 부외파생상품(out-of-balance derivatives)에 대해서는 0.0001~0.0002%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 납부기한은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해 6월 30일 까지로 함
- 이 외에도 2011 예산안에서는 증세를 위해 법인세 분야에서 각종 공제혜택의 제한을 계획하고 있음
 - 대손금(bad debts) 및 주식양도이익의 재투자에 대한 공제를 제한함
 -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이용하여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형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청산절차(prior clearance procedure)를 도입함
 - 결손금 공제는 법상 요건에 따라 감사인의 승인하에 이루어질 것임
 - 그룹법인 간의 결손금 통산은 그룹법인 간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제한을 받게 될 것임

나. 개인소득세 분야

-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금소득공제 금액의 하향조정 및 각종 공제금액에 한도 도입 등의 증세정책이 계획되어 있음
 - 현행 연금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6천유로로, 연금소득이 30,24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3%의 비율로 공제금액이 감소하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연금소득이 22,5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의 비율로 공제금액을 줄일 방침임
 - 24.5% 이상의 한계세율²⁾이 적용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금액에 한도를 도입함
 - 금액한도 적용대상 공제항목으로는 생명 및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훈련비, 주택구입 이자, 자산관련 비용, 연금저축 납입액, 건물 개조비, 벤처캐피탈 투자비용 및 재생에너지 장비 구입비용 공제가 있음
- 이 외에도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는 여러 개정사항이 계획되어 있음
 - 이월결산금 공제기간을 5년(또는 6년)에서 4년으로 축소함
 - 개인소득세 세율 적용시 과세표준 구간을 2.2% 확대함
 - 예를 들어, 46.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개시점을 150,000유로에서 153,300유로(독신자인 개인)로 인상함
 - 주주 대여금 이자에 대한 과세를 종합 누진과세에서 21.5%의 단일세율 과세로 전환함

다. 부가가치세 분야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p 인상하고 일부 경감세율 항목을 표준세율 항목으로 전환함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 21%에서 23%로 인상함
 - 일부 재화(주로 가공식품 및 음료)에 대해서는 6%(또는 13%)의 경감세율 대신 23%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3. 헝가리 의회 위기세제 승인

- 의회는 2010년 10월 18일 위기세제(crisis tax package) 법안에 승인함
 - 주요 내용은 에너지, 전자통신, 소매부문에 대한 특별세(special taxes) 도입, 법인세 분야에서 세율 인하 및 단일세율 도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돕고 재정결손³⁾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

가. 특별세 도입

- 에너지(energy),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s), 소매부문(retail sectors)에 대해 수입금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특별세(special taxes)를 도입함
 - 에너지 공급업자에 대해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1.05%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세를 부과함
 - 전자통신 회사 및 소매부문의 경우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세를 부과함

2) 포르투갈에서 개인소득세 세율은 과세소득 금액에 따라 11.5%, 14%, 24.5%, 35.5%, 38%, 41.5%, 43.5%, 46.5%가 누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3) 헝가리 정부는 재정결손 규모를 2010년 GDP의 3.8%, 2011년 GDP의 3%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1〉 헝가리의 특별세(Special taxes) 세율

에너지 부문	전자통신 부문		소매부문	
	수입금액(HUF)	세율(%)	수입금액(HUF)	세율(%)
1.05%	~ 500million	2	500million ~ 30billion	0.1
	500million ~ 5billion	4	30billion ~ 100billion	0.4
	5billion ~	6.5	100billion ~	2.5

- 특별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는 지난 7월 통과한 금융세와 합산하여 2010년부터 3년 동안 연간 HUF343억으로 추산되고 있음

나.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단일세율 도입

- 2013년부터 법인세에 10%의 단일세율을 도입함
 - 현행 법인세 표준세율은 19%로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2013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함

〈표 2〉 헝가리의 법인세율

과세 표준(HUF)	개정 전			개정 후
	2010년 상반기	2010년 하반기	2011년 이후	2013년 이후
~ 50million	10% ¹⁾	10%	10%	10%
50million ~ 250million	19%			
250million ~ 500million		19%		
500million ~			19%	

주: 1) 요건 충족시 적용함

4.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특례조치 폐지

- 중국국가위원회(China's State Council)는 2010년 12월 1일부터 도시보호건설세(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와 교육부담금(education surcharge)의 대상을 확대하여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부담시키기로 함
 - 이 조치는 중국의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임
 - 재정부에서는 외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공평한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함
 - 이 부분은 개정 전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차이였으나, 이번 조치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차이가 없어짐
- 중국은 1980년대 초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자기업 등에 대한 특례를 제공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과세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해 왔음
 - 중국은 1980년대 초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을 국내에서 소유하느냐, 외국에서 소유하느냐에 따라 별도의 과세체계를 유지했었음
 - 중국은 1994년부터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과세 체계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점진적인 외자기업특례 조치에 대한 폐지를 시행해 오고 있음
 - 구체적인 세목으로는 VAT, 소비세(consumption tax), 사업세(business tax), 기업소득세(enterprise income tax), 토지이용세(land use tax), 교통시설이용세(vehicle and vessel use tax), 부동산세(real estate tax)에서 외자기업에 대

한 특혜를 폐지해 오고 있음

- 이번 조치로 외자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도시보호건설세(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와 교육부담금(education surcharge)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음
 - 과세표준은 VAT, 소비세, 사업세의 합계임
 - 서울은 도시보호건설세(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는 납세자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고, 교육부담금(education surcharge)은 3%임
- 도시보호건설세(urban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tax)의 세율은 시(city)는 7%, 현(country)과 향(town)은 5%, 그 외의 지역은 1%임

동향 10-24

요약

- 네덜란드는 외국 혼성체(Foreign Hybrid Entity)의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행령 등을 발표함
- 호주는 2010년 10월 27일에 과소자본세제의 한도(safe harbor) 내에서도 이전가격세제가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세무규칙(TR 2010/7)을 발표함
- 2010년 11월 5일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파트너십과 파트너에 관한 규정, 연금 관련 규정, 생애자본이득 공제(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규정 등이 있음

1. 네덜란드의 외국 혼성체에 대한 과세요건

- 국제조세상, 특정 국가에서 세무상 도관체로 분류되거나 다른 국가에서 세무상 비도관체로 분류되는 실체(entity)를 혼성체(Hybrid Entity)라고 함
 - 특정 국가의 혼성체에 대한 도관체 분류는 국제세법상 논란이 되어옴
 - 혼성체 분류의 통일성을 위한 OECD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실체(Foreign Entity)에 대한 분류는 국가별로 독자적으로 결정됨
- OECD는 OECD partnership report(march 17, 1997, IFZ97/204)에서 도관체 분류상 차이를 조정



할 것을 권고함

- 따라서 혼성체의 분류에 따라 이중과세(Double taxation)나 이중비과세(Double Nontaxioa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외국실체에 대한 도관체 분류는 국내 세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관체 분류에 관하여 국제 조세상 관례보다는 네덜란드 국내 세법의 규정이 중요함

- 이런 이유로, 네덜란드는 외국 혼성체(Foreign Hybrid Entity)의 분류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11일에 외국 혼성체의 분류에 관한 시행령(Decree CPP 2009/519M)을 발표함

가. 일반원칙

■ 외국실체의 분류는 “유사성 접근법(Similarity Approach)”에 따라 결정됨

- 유사성 접근법 : 외국 혼성체를 가장 유사한 네덜란드의 실체와 동일하게 분류하는 방법임
- 즉, 네덜란드 세무상 네덜란드의 실체로 간주할 경우 분류되는 바에 따라 분류되는 것임
- 따라서 외국 혼성체도 그 특성에 따라 네덜란드의 실체와 동일하게 분류하게 됨
- 이러한 특성은 네덜란드 민법, 회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네덜란드 법인세법에 따르면 모든 법적 실체는 법인세를 부담함

-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적 실체에는 모든 법인과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포함됨
- 또한 네덜란드 법인과 “비슷한(comparable)” 모든 외국법인도 네덜란드의 법인세를 부담함

- 여기서 네덜란드 법인과 “비슷한” 외국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지 않아서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2009년 12월 11일에 발표된 외국 혼성체의 분류에 관한 시행령(Decree CPP 2009/519M)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임

나. 외국 혼성체의 범위(Scope)

■ 위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혼성체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실체를 포함됨

- 혼성체에 포함되는 실체로는 법인, 파트너십 등 원칙적으로 모든 실체임
- 다만, 협회(association), 재단(foundation), 신탁(trusts) 및 이와 유사한 실체의 경우에는 제외됨
- 또한 위의 혼성체에는 주주나 파트너의 수가 하나인 법인, 파트너십 및 네덜란드 민법에 의한 경우 금융계약인 파트너십도 제외됨

다. 외국 혼성체의 분류

■ 외국 혼성체도 네덜란드 세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됨

- 네덜란드 세법에서는 법인을 비도관체, 파트너십을 도관체로 규정하고 있음
- 즉, 비도관체인 법인은 법인세 과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체인 데 반해, 도관체인 파트너십은 법인세 과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체가 아님

■ 외국 혼성체가 법인(비도관체)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 ① 다음 요건 중 적어도 3가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 ② 주주나 파트너가 유한책임을 지면서, 실체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운영에 있어 주주나

파트너의 위험부담이 없어야 함

법인 분류 요건

법인 분류 요건	
(A)	영업활동에 투입되는 자산에 대해 실체(entity)가 소유권이 있는가?
(B)	실체의 부채에 대한 주주나 파트너의 의무가 제한되는가?
(C)	법령에 따라 실체의 자본이 여러 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가?
(D)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주주나 파트너의 동의 없이 다른 주주나 파트너의 지분참여가 가능한가?

- 법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실체는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으로 분류됨

라. 분류의 효과

- 비도관체로 분류되는 외국 혼성체는 네덜란드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경우 네덜란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됨
 - 반면에 비도관체로 분류되는 외국 혼성체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네덜란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네덜란드의 법인세를 부담함
 -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세무상 거주한다”라고 말함
- 도관체로 분류되는 외국 혼성체의 경우, 그 혼성체의 소득은 파트너에 직접 할당(allocation)되므로 파트너는 그 할당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음

마. 분류를 위한 지원

- 외국 혼성체 분류는 혼성체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개별 혼성체의 분류는 각각 다를 수 있음

- 네덜란드 세무당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전형적인 외국실체에 대한 외국 혼성체 분류 리스트를 발표함
- 다만, 이러한 리스트는 원칙적으로 참고자료이며, 분류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요건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2. 호주의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의 조화

- 호주 과세당국은 2010년 10월 27일에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를 조화시키는 세무규칙(TR 2010/7)을 발표함
 - 이 규칙은 국외특수관계기업과의 재무계약(financial arrangements)에 영향을 줄 것임
- 이 규칙 이전에 이전가격과세와 과소자본세제를 조화시키는 규정은 없었지만 투자자들은 과소자본세제의 한도(safe harbor) 내에서는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세무규칙(TR 2010/7)에서는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순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순서는 이전가격세제를 먼저 적용하도록 하고 과소자본세제가 이전가격세제를 제한할 수 없음
 - 이전가격세제를 통하여 먼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무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성을 결정해야 함
 - 전 단계에서 결정된 재무비용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부채에 대한 재무비용의 공제가능성을 검토함
 - 이전가격세제는 과소자본세제의 한도(safe harbor)에 우선(override)하여 적용됨



- 납세자가 과소자본세제의 한도 내의 부채수준이더라도 정상가격(독립적인 제3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의 이자)으로 거래되지 않았다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때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대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않음
- 오히려 개별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 호주의 과소자본세제

- 과소자본세제는 자본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임
 - 과소자본세제는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자본금을 통한 자본조달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적인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거주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급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임
 - 외국인투자자가 호주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호주의 거주자가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도 적용함
 - 호주의 과소자본세제는 1987년에 도입되어 2001년에 상당부분이 개정됨
 - 지급이자가 공제가능한 한도(safe harbor)를 두고 있음
 - 통상적인 사업을 위해 투자된 자본금액의 3배가 한도임

3.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 2010년 11월 5일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의 기술적인 개정사항과 관련된 입법안을 발표하였음
 - 2010년 7월 16일에 재무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앞서 발표한 바 있었으나, 이번 11월에 추가된 개정사항을 공지하였음
 - 지난 7월 16일에 발표된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는 세부적인 조세경감(tax relief) 규정, 법인소득세율,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 소득세 시행규칙 개정 등이 있었음
- 2010년 11월 5일에 추가 발표된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파트너십과 파트너에 관한 규정, 연금 관련 규정, 생애자본이득 공제(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규정 등이 있음
 - 파트너십과 파트너에 관한 규정으로는 전문 파트너십(professional partnership)에 관한 정의 규정¹⁾이 신설되었고, 세무상 장부가액에 관한 계산 방법²⁾ 등이 개정됨
 - 연금규정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등록된 연금계획(registered pension plan)에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예정임
 - 자본이득에 대한 규정으로는 생애자본이득 공제(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와 관련하여 생애자본이득 공제가 인정되는 적격 농장 자산(qualified farm property)의 요건, 적격 어업 자산(qualified fishing property)의 요건에 대한 내용들

1) 개정안에 따르면, 한 명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가 영입하는 파트너십을 전문 파트너십(professional partnership)으로 정의하고 있음
 2) 파트너십 지분의 세무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ITA 53(1)(e) 참조

이 신설됨

- 적격 농장 자산(qualified farm property): 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자산인 적격 농장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실현된 자본이득 중 75만달러까지 비과세됨
- 적격 어업 자산(qualified fishing property): 어업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실현된 자본이득 중 75만달러까지 비과세됨
- 그 밖에 개인 의료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관련 각종 정의 규정, 트럭운전자의 음식물 비용에 대한 공제규정 등이 개정안에 포함됨

동향 10-25

요약

- 영국 정부가 2010년 11월 발행한 2011-2015 사업연도에 대한 국세청 사업계획에 의하면 국세청 조직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문화 및 효율화할 방침임
- 독일 하원은 2010년 10월 28일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한 은행세 도입, 재정회복을 위한 비행기 여행세 도입 및 담뱃세 인상 법안에 승인함
- 오스트리아 상원은 2010년 11월 17일 2011-2014년도 보충 예산법에 대한 검토를 마침
 - 주요 내용은 법인세 관련 그룹기업 간 지분보유 시 과세혜택 축소, 은행세 도입, 개인소득세 관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임
- 그리스 정부는 2010년 11월 18일 추가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인상(경감세율: 11% → 13%)할 계획임을 발표

1. 영국 국세청의 사업계획(HMRC business plan)

- 정부는 2010년 11월 2011-2015 사업연도에 대한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의 사업계획을 발행함
 - 정부는 사업계획을 통해 2014~2015 사업연도까지 연간 70억파운드의 세수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 국세청 사업계획의 목표는 약 420억파운드 규모의 세제상 결함(tax gap)을 막아 납세자로 하여금 현 조



세제도가 간소하고 공평하며 국세청이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조직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2015년까지 국세청 조직을 정비하여 납세자 대응에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징수 분야에서 서 역시 효율성을 개선할 방침임
 - 2015년까지 국세청의 조직규모를 줄이고 능률화함
 -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납세자 중심 전략(customer-centric strategy)을 취하고 납세자의 수요, 능력 및 동기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함
 - 예를 들어, PAYE(pay as you earn)제도¹⁾ 적용시 실시간 정보(real-time information)를 이용하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개선함
 - 조세회피 및 탈세, 조세포탈을 방지하는 업무분야에 집중 투자함
- 국세청 사업계획의 대부분은 재무부 장관이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의 예산으로 9월 19일 발표한 9억파운드를 사용하여 운영될 계획임
 - 정부는 2011년 4월 9억파운드의 지출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 상세 사업실행 계획을 제출할 것임
 - 또한 재무부 역시 국세청 및 조세간소화국과 협력하여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여 2011년 4월 이를 완성할 계획임

2. 독일 하원, 은행세 도입안 등 승인

- 하원(Bundestag)은 2010년 10월 28일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한 은행세의 도입, 재정 회복을 위한 비행기

여행세 도입 및 담뱃세 인상 법안에 승인함

- 법안의 체결을 위해서는 아직 상원(Bundesrat)의 승인이 필요한 상태임

가. 은행세(Bank tax) 도입안

-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구제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은행세를 도입함
 - 은행세의 적용 대상은 민간은행, 국영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건축조합(building society)임
 - 은행세는 은행의 규모, 체계적 위험, 금융시장의 통합 정도에 따라 부과되며, 서울은 중앙은행(Bundesbank)과 논의 후 결정될 예정임
 - 은행세 법안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은행구조조정기금(fund)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는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국(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Agency)에서 관리할 방침임
 - 은행세 세수는 연간 1억유로로 추정되며 이는 향후 금융위기시 금융기관의 구제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임
 - 참고로, 최근 금융위기 동안 정부는 일반 납세자로부터 거둬들인 4억 8천만유로의 세금을 금융기관 안정화 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음

나. 재정회복을 위한 세법개정안

- 하원은 2010년 10월 28일 은행세의 도입과는 별도로 연방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이를 약 20억유로까지 추가 확보하는 조치를 담은 법안에 승인한 바 있음

1) 소득이 발생할 당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시 사후 정산하는 제도임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중 하나는 비행기 여객세(air travel tax)의 도입임
 - 비행기 여객세는 독일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에 대해 부과됨
 - 화물 및 경유(transit) 항공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음
 - 세액으로는 비행기간에 따라 8, 25, 45유로가 부과됨
 - 비행기 여객세의 도입으로 연간 1억유로의 추가 세수확보가 기대됨
 - 단, 항공부문이 2012년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cheme) 대상항목에 포함될 경우 비행기 여객세는 폐지될 방침임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조치는 2011년 1월 1일부터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임
 - 흡연자의 감소, 저가 및 밀수 담배의 선호로 줄어든 담뱃세 세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함
 - 담뱃세의 인상은 흡연가의 저가 담배 구입 추세를 막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방침임

3. 오스트리아 상원, 2011-2014 보충 예산법 승인

- 상원은 2010년 11월 17일 2011-2014년도 보충 예산법(supplemental budget act)에 대한 검토를 마침
 - 주요 내용은 재정지출을 1.6억유로만큼 낮추고 세수를 1.2억유로 정도 증가시킨다는 것임
 - 이는 하원의 승인 및 대통령의 비준 절차를 거쳐 입법화될 예정임
- 오스트리아의 경우 경제 및 재정 상황은 다른 EU 국

가와 비교하여 양호한 상태이나 국가 경제규모가 작고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아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실업률과 재정결손액은 각각 5% 미만 및 GDP의 3.2%로 EU 평균인 10% 및 유로존 평균인 GDP의 6.8%와 비교하여 낮은 편에 속하고, 경제성장률은 2010년 1.3%로 예측되어 1%인 EU보다 높은 편에 속함

가. 법인세 분야

- 그룹기업 간 지분 보유에 대해 과도한 과세특례 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면세제도(participation exemption)관련 적용배제 요건을 추가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지분율이 10% 이상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참가면세제도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해외 자회사가 지급배당에 대해 비용으로 공제받은 경우 국내 모회사의 배당금 수취액을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 그룹기업 간 차입을 통한 지분 보유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면제 및 이자비용 공제라는 이중의 과세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그룹기업 간 차입을 통한 지분 보유에 대해 관련 배당수익은 과세면제하면서 관련 이자비용은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해 주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그룹기업 간 차입을 통한 지분 보유에 대해서는 관련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써 그룹기업 간 불필요한 자금대출 거래를 억제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함

- 향후 금융위기를 대비하여 안정화 부담금(stabilization charge)으로 은행세(bank tax)를 도입함
 - 은행세는 은행을 대상으로 그 대차대조표 및 특정 파생상품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됨
 -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 세액은 대차대조표 총액에서 자본금, 잉여금, 대표적 소비자의 저축계좌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세율로는 과세표준액 중 첫 1억유로에 대해서는 0%, 1억유로 초과 20억유로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0.055%, 20억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085%를 적용함
- 특정 파생상품을 기준으로 한 세액은 거래장부(trading books)상 특정 파생상품에 0.0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정부는 은행세의 도입으로 약 5억유로의 추가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국내 은행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나. 개인소득세 분야

- 자본이득(capital gains)과 관련하여 단기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것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함
 -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식, 증권 및 기타 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은 취득 후 1년(부동산의 경우 10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 한해 과세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주식, 채권 및 기타 투자(파생상품 포함)관련 자본이득에 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

일한 세율로 과세함

- 오스트리아의 경우 상속세가 없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임
- 25%의 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항목에 주식 및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을 추가함
 -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공개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으로부터 수취한 이자, 개인주주 및 지분율이 25% 미만인 법인주주가 수취한 배당에 대해 25%의 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주식 및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25%의 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를 적용함

다. 기타 분야

- 주요 세수증가는 담뱃세, 비행기 티켓세, 유류세 등에서도 기대되고 있음
 - 담뱃세에서 1억~1억 5천만유로, 비행기 티켓세에서 6천만~9천만유로, 광유세(mineral oil tax)에서 4억 8천만~5억 3천만유로, 가솔린 사용세(gasoline usage tax)에서 2천5백만~5천5백만유로의 추가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음

4. 그리스 추가 긴축재정 계획

- 정부는 2010년 11월 18일 추가 긴축재정(austerity measure)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인상할 계획임을 발표함
 -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통해 재정결손을 2011년 GDP의 7.4%로 대폭 줄여²⁾ EU/IMF 긴급구제시 약

2) 2010년 4월 30일 AP 보도에 의하면 당시 아테네의 재정결손은 GDP의 115%에 육박했음

속한 목표치인 7.6%를 초과 달성할 계획임

- 궁극적으로는 유로존에서 정한 한도인 GDP의 3%를 달성할 계획에 있음

- 부가가치세 인상안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적용될 예정임

- 제3차 부가가치세 인상계획에 의하면 식품 및 의약품에 적용되는 11%의 경감세율을 2%p 인상하여 13%를 적용함

- 단, 23%의 표준세율과 서적 및 신문에 적용되는 5.5%의 최저세율은 유지할 방침임

〈표 1〉 그리스의 2010년

구분	~ 2010. 03. 14	1차 인상: 2010. 03. 15 ~	2차 인상: 2010. 07. 01 ~	3차 인상안
표준세율	19%	21%	23%	23%
경감세율	9%	10%	11%	13% ¹⁾
최저세율	4.5%	5%	5.5%	5.5%

주: 1) 여행부문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11%에서 6.5%로 인하함

- 추가 긴축계획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외에도 의료보험제도 축소, 공익법인 경영비용 축소, 조세회피에 대한 엄중 단속,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 강화, 국방비 지출 축소, 명목연금액 동결 등의 내용이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축소 및 세수 확대 정책 외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일부 조세지원 정책 역시 계획되어 있음

- 배당하지 않은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24%에서 20%로 4%p만큼 인하함

- 국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행부문에 적용되는 경감세율의 경우 현 11%에서 6.5%로 인하함



정책흐름

- 2011년 예산 국회 확정 주요 내용
- 2010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서민생활 밀접품목 물가동향 및 대책
- 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 예고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품목 확대
- OECD, 경제전망 발표

2011년 예산 국회 확정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2010년 12월 8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발표한 '2011년 예산 국회 확정 주요 내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총량 지표

-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2조원, 총지출은 △0.5조원 감액
 - 총수입 : (정부안)314.6조원 → (최종)314.4조원 (△0.2조원)
 - ※ 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수입 △2,108억원 등
 - 총지출 : (정부안)309.6조원 → (최종)309.1조원 (△0.5조원)
 - ※ (주요 증감내역) 국방비(0.1조원, 4대강(△0.2조원), 예비비(△0.1조원) 등
- 국가채무는 △1.3조원(0.1%p), 재정수지는 △0.3조원 개선
 - 국가채무(GDP 대비) : (정부안)35.2% → (최종)35.1% (△0.1%p)
 - 일반회계 국채 : (정부안)22.0조원 → (최종)21.0조원 (△1.0조원)
 - 재정수지(GDP 대비) : (정부안)△2.0% → (△25.3) (최종)△2.0% (-) (△25.0조원)
 - ☞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 국방 및 민생현안 등에 적극 대처

	'10년 (A)	'11년		증감		
		정부안(B)	최종(C)	(C-B)	(C-A)	%
총수입	290.8	314.6	314.4	△0.2	23.6	8.1
총지출	292.8	309.6	309.1	△0.5	16.2	5.5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	△30.1 (△2.7)	△25.3 (△2.0)	△25.0 (△2.0)	0.3 (-)	5.1 (△0.7%p)	
재정채무(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	407.2 (36.1)	436.8 (35.2)	435.5 (35.1)	△1.3 (△0.1%p)	28.3 (△1.0%p)	6.9
일반회계 국채(순증)	29.3	22.0	21.0	△1.0	△8.3	

2. 주요 증감내용

- ① (국방예산)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1,236억원 순증, 증가율을 5.8% → 6.2%로 0.4%p 상향조정
 - * 국방비(일반회계) : (10) 29.6조원 → (11정부안) 31.3조원 → (11 최종) 31.4조원
 - 서북 도서 전력 및 타격전력 보강*을 위해 4,207억원을 증액하되 시급성을 감안, 이 중 착수금 성격의 492억원은 금년에 예비비로 지원 예정
 - *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추가 구입
 - 집행이 부진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 위주로 △2,479억원 구조조정
- ② (서해 5도 지원)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정주생활 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

원) 등 신규 반영

* 생활지원금(35억원, 월 10만원), 고교생 수업료(1억원), 생필품 등 해상운송비(24억원)

③(참전명예수당 등) 6·25,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 →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15만원 → 18만원으로 상향조정

* 참전명예수당 : (‘10) 2,380억원 → (‘11정부안) 2,534억원 → (‘11최종) 3,374억원

* 무공영예수당 : (‘10) 559억원 → (‘11정부안) 540억원 → (‘11최종) 648억원

④(4대강) 보·준설 등 주요 공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하되 집행률, 시급성 등을 감안 자전거도로 등 일부 사업비 조정(△2,000억원)

* (‘10) 32,200억원 → (‘11정부안) 32,800억원 → (‘11최종) 30,800억원

- 관련사업인 농림부 저수지 뚫높임(△250억원) 및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200억원), 환경부 총인처리시설(△250억원)도 일부 감액

* 저수지 뚫높임 : (‘10) 4,066억원 → (‘11정부안) 8,730억원 → (‘11최종) 8,480억원

* 영산강 하구둑 : (‘10) 500억원 → (‘11정부안) 3,200억원 → (‘11최종) 3,000억원

* 총인처리시설 : (‘10) 1,826억원 → (‘11정부안) 2,670억원 → (‘11최종) 2,420억원

⑤(복지)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전국 6만여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 436억원, 개소당 월 30만원씩 5개월간

-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증개축 지원 확대 (15개소, 70억원)

- 저소득 빈곤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확대(3,260개소, 월 350만원 → 370만원)

* (‘10) 831억원 → (‘11정부안) 939억원 → (‘11최종) 977억원

- 지방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3개소) 기능 강화

* (‘10) 313억원 → (‘11정부안) 310억원 → (‘11최종) 376억원

-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슈퍼 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리 사업 대폭 확대

* (‘10) 4억원 → (‘11정부안) 4억원 → (‘11최종) 44억원

- 식품안전 관리(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및 식중독 예방 사업 확대를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 강화

* HACCP제도 활성화 : (‘10) 37억원 → (‘11정부안) 46억원 → (‘11최종) 61억원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10) 24억원 → (‘11정부안) 26억원 → (‘11최종) 31억원

-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의 재취업 지원(신규 15억원, 16개소)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 지원기능 확충(신규 74억원)

⑥(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및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확대

* 근로장학금 지원 : (‘10) 750억원 → (‘11정부안) 750억원 → (‘11최종) 810억원

* 시간강사 단가(시간당) : (‘10) 4.25만원 → (‘11정부안) 5.25만원 → (‘11최종) 6.0만원

⑦(물가 안정)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 채소 수급안정 : (‘10) 200억원 → (‘11정부안) 400억원 → (‘11최종) 900억원

- 서민 체감물가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감 있는 정책대응을 위해 주부 물가 모니터단 운영(신규 2.6억원)

⑧(가축질병 예방) 구제역 등에 대한 방역장비 지원 등 상시 예방체계 강화

* 가축방역 : (‘10) 415억원 → (‘11정부안) 505억원 → (‘11최종) 530

억원

㉑ (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혼잡도로 및 선형불량 도로 중심으로 투자규모 확대 (2,601억원)

* 도로 투자규모 : '10) 8,0조원 → (11정부안) 7,2조원 → (11최종) 7,4조원

첨부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10년	'11정부안(A)		'11최종(B)		증감 (B-A)
		증가율		증가율		
1. R&D	13.7	14.9 (8.6)	14.9 (8.7)	-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유가완충준비금 제외시)	15.1 (14.4)	15.2 (0.4) (15.2) (5.2)	15.2 (0.3) (15.2) (4.8)	-		
3. SOC (4대강)	25.1 (3.2)	24.3 (△3.2) (3.3) (1.9)	24.4 (△2.7) (3.1) (△4.3)	0.1 ¹⁾		
4. 농림·수산·식품	17.3	17.7 (2.3)	17.6 (2.2)	-		
5. 보건·복지·노동	81.2	86.3 (6.2)	86.4 (6.3)	0.1 ¹⁾		
6. 교육 (지방교육교부금)	38.3 (32.3)	41.3 (8.0) (35.3) (9.3)	41.2 (7.8) (35.3) (9.2)	△0.1		
7. 문화·체육·관광	3.9	4.1 (5.0)	4.2 (7.8)	0.1		
8. 환경	5.4	5.7 (5.0)	5.8 (6.2)	0.1		
9. 국방(일반회계)	29.6	31.3 (5.8)	31.4 (6.2)	0.1		
10. 외교·통일	3.3	3.7 (9.0)	3.7 (9.0)	-		
11. 공공질서·안전	12.9	13.6 (5.3)	13.7 (5.6)	-		
12.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	48.7 (27.4)	53.2 (9.3) (30.2) (10.3)	52.4 (7.5) (30.2) (10.2)	△0.9		
총지출	292.8	309.6 (5.7)	309.1 (5.5)	△0.5		

1) 국회 심의과정에서 SOC분야는 1,334억원, 복지분야는 1,214억원 증액

2010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본 자료는 2010년 12월 7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0. 12. 7(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16개)과 의원 입법안을 심사하여 심의·의결하였음
-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조세소위를 11차례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 이번에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1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재정위 심사에 따른 2010년 세제개편 세수효과 수정

- (현행) +1,9조원 → (수정) +1,3조원
[수정금액 : △0,6조원]

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 ① 외국인 채권 투자소득 과세 전환 및 탄력세율 도입 (소득법 §119의2· 법인법 §93의2 삭제, 소득법 §156 ②· 법인법 §98② 신설)

현 행 (정부안 없음)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 비과세(원천징수 면제) • 대상채권 : 국고채·통화안정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 과세 전환(원천징수 부활) •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긴급한 필요시 탄력세율 허용(0%까지 인하 가능) * 2010. 11. 12 이전 취득분은 종전규정에 따라 비과세

* 법인세법 개정안에도 동일 내용 반영

수정이유 ▶ 거시건전성 제고 및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 대응

②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소득법 부칙)

현 행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 과세방법 :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20% • 과세 대상 :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회화·대생 등 미술품, 골동품 *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 • 과세시기 : '11. 1. 1. 이후 거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2년 유예 • (좌동) • (좌동) • 과세시기 : '13. 1. 1. 이후 거래분

수정이유 ▶ 미술품 거래 위축 등 미술업계의 어려운 사

정을 고려

③ 세무검증제도 도입 보류(소득법 §70·§81, 국기법 §81의6, 세무사법 §2, 조특법 §122의3)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검증제도 도입 •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 • 대상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등) •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 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 부실검증 등에 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 •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세무검증”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수정이유 내년 2월 임시국회시 추가 논의

법인세법

① 재외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인법 §24②)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교육기관은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하여 지원 * 법인은 소득의 50%, 개인은 100% 한도 내 기부금 소득공제 • 공공교육기관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등 (내국법인) ※ 그 밖의 법정기부금 대상 : 국가·지자체, 공공 의료기관,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외국법인) 추가

수정이유 한국학교의 재정 확충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①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조특법 §26)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공제율 : 7% • 대상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대상지역 : 수도권 과밀권역 외 지역 • 대상업종 : 농업, 축산업, 어업 등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청년 고용시 1,500만원] -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 가능 • 일몰기한 : '12.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권역의 투자 : 임투공제율 5%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1% •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 투자 : 임투공제율 4%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1% • (좌 등) • (좌 등) • (좌 등) • (좌 등) • 일몰기한 : '11. 12. 31

수정이유 기업의 투자 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

②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일몰 종료(조특법 §11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 감면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연접 시·군 : 50% - 그 외 : 100% • 일몰기한 : 2012.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종료

수정이유 ▶ 대중제 골프장과의 형평을 위해 감면제도 일몰 종료

3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 연장(조특법 §111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LPG 개별소비세 면제 • 일몰 : 2011.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 연장 : 2012. 12. 31

수정이유 ▶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지원

4 바이오디젤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대상 확대(조특법 §111)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 일몰기한 : 2012. 12. 31 (2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바이오디젤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 일몰기한 : 2011. 12. 31 (1년 연장)

수정이유 ▶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지원

※ 다만, 2012. 1. 1부터는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일몰 종료

5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 경비용역, 청소용역, 일반관리용역

수정이유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복지증진 지원

6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조특법 §94)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적용대상 추가 :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 직장보육시설 취득시 공제율 확대 : 7%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 (좌 등) • 적용대상 추가 및 공제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무주택종업원 임대용주택 및 종업원기숙사 용도로 취득시 취득금액의 10% 세액공제

수정이유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

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합리화(조특법 §25의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투자금액의 20% • 공제한도 및 이월공제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 한도 적용, 이월공제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 공제한도 폐지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수정이유 ▶ 과도한 공제율을 정상화하는 대신 공제한도로 인한 일부 기업의 세제혜택 축소 문제를 보완

8 6개시범 기업도시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21의17)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 • 대상 : 창업 · 사업장 신설 기업 * '09년 말까지 MOU를 체결하고 '12년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여타지역으로부터 이전시에도 세제지원 • 지원내용 : 소득세 ·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시범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충주, 원주, 무주, 태안, 무안, 영암 · 해남 • 대상 : 입주기업 * ① '12년 말까지 입주 또는 ② '12년 말까지 MOU를 체결하고 '14년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여타지역으로부터 이전시에도 세제지원 • 지원내용 : (좌 등)

수정이유 기존의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등의 신뢰보호 및 기업도시 개발 지원

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조특법 §6~7)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 감면 • 지원내용 : 4년간 50% 세액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2개 업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지원내용 : 지역별 · 업종별 4년간 5~30% 세액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34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지원내용 : (좌 등) • 대상업종 추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좌 등) • 지원내용 : (좌 등) • 대상업종 추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수정이유 「학원법」상의 직업기술학원과의 형평성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10 지방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확대(조특법 §7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 추 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입법안 내용 반영 * (현행 제도)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시 손금산입을 허용 - 설정 후 5년 내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법인세법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확대(50% → 80%) • (대상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인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시 · 군 지역 *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30만 이하일 것 - 대학병원이 없을 것 등

수정이유 지방 소재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과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11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지원대상 지출용도 확대(조특법 §8의3)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보 및 기신보(상생보증펀드) ②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동반성장기금) • 이 중 「동반성장기금」 출연금의 지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진출' 협력을 추가

수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도모

12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기간 연장(조특법 §101)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 일몰 : 2013. 12. 31(3년 연장) ※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 <할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간 조정 • 일몰 : 2013. 12. 31(2년 연장)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중소기업</th> <th>대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지분을 50% 이하</td> <td>10%</td> <td>20%</td> </tr> <tr> <td>지분을 50% 초과</td> <td>15%</td> <td>30%</td> </tr> </tbody> </table>		중소기업	대기업	지분을 50% 이하	10%	20%	지분을 50% 초과	15%	30%	
	중소기업	대기업								
지분을 50% 이하	10%	20%								
지분을 50% 초과	15%	30%								

수정이유 ▶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유지하되, 장기간 제도 운영을 배제

13 비인기종목 운동팀 창단·운영기업 세제지원제도 신설(조특법 §104조의22)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인기종목 운동팀 창단·운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법인세 : 인건비·운영비의 7% 세액공제(일몰 : '13. 12. 31) * 운동팀 창단 후 최대 3년간 지원 • 종합부동산세 : 기준면적 이내 체육시설용 토지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지원 수준 조정 • 법인세 세액공제율 10%로 상향 • (삭제)

수정이유 ▶ 비인기종목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 합리화

1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기간 확대(조특법 §104의24)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원내용 :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폐쇄 ②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 밖 에 신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지원내용 :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 지원요건 : (좌 등)

수정이유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기간 확대를 통해 해외고용이 국내고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15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조특법 §30의3)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임금감소분×상시근로자 수)의 50% 소득공제 - 근로자 : 전년 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소득 공제(한도 1천만원) • 일몰 종료 : 2010.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 일몰 연장 : 2011. 12. 31 (1년 연장)

수정이유 ▶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

16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 2년 연장(조특법 §16)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 종료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10% (종합소득의 30% 한도) 일몰 종료 : '10.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 2년 연장 (좌 등) 일몰 연장 : '12. 12. 31 (2년 연장)

수정이유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

17 벤처기업 주식 등에 재투자시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15)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주식 등에 대한 재투자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신설 요건 : 3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다른 벤처기업 주식에 50% 이상 재투자 일몰기한 : 2012. 12. 31 *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은 양도세 비과세(조특법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 제)

수정이유 ▶ 벤처기업 출자금 소득공제가 일몰 연장되는 점을 감안

18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한도 설정(조특법 §133)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일반채권보상 감면한도 설정 5년간 3억원 한도 * 만기보유채권 보상 : 5년간 3억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한도 조정 5년간 2억원 한도

수정이유 ▶ 만기보유채권 보상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19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06, 116, 118)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 등이 보전총회와 관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자세 면제

수정이유 ▶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 (고용요건) 상속 후 10년간 정 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상속직 전연도 1.2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상속공제 대상 조정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 중견기업 - (좌 등)

수정이유 ▶ 상속·증여세 세제지원 수준의 합리화

부가가치세법

1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1년 유예(부가령 §30)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시기 : 2011.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유예 : 2012. 7. 1

수정이유 ▶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의 학원비 부담 경감

개별소비세법

1 등유형 부생연료유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개소법 §1)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생연료유 개별소비세 과세 세율 : 90원/ℓ - 2012. 12. 31일까지는 66원/ℓ * 석유화학제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爐)의 연료인 석유제품 	- 2012.12.31.까지는 72원/ℓ

수정이유 ▶ 부생연료유가 등유의 열등대체제인 점을 감안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감면율은 축소 조정

2 외국군인 유희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기한 신설(개소법 §19의3)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희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신 설〉	• 일몰기한 : 2012. 12. 31.

수정이유 ▶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특례제도인 점을 감안 일몰기한 설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국조법 §31의2, §34, §35, §3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도입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은 다음 해 6월에 신고 - '11. 6월 최초 신고('10년도분부터)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10%('11년 : 5%)이하 과태료 -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정이유 ▶ 고소득자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

국세기본법·국제징수법

1 상속·증여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합리화(기본법 §47의2, 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관련 사전 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 가산세 합산신고 누락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20% 가산세 부과 * 사전 증여재산 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세액’의 계산방식 변경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수정이유 ▶ 사전 증여재산 합산불이행으로 인해 가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보완

② 조세 불복절차에서 대리권 범위 확대(기본법 §59)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범위 확대 • (현행) 변호사·세무사·회계사 • (개정)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대리 가능

수정이유 ▶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③ 공매공고 등기 제도 도입(징수법 §67의2)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 신설 •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 결정 후 공매개시결정하고, 공매개시결정등기 기입 촉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공고 등기제도 신설 • 세무서장은 공매공고 후 즉시 공매공고 등기 촉탁

수정이유 ▶ 민사집행법상의 '경매개시결정 등기'와의 혼란을 방지

서민생활 밀접품목 물가동향 및 대책

* 본 자료는 2010년 12월 7일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에서 발표한 「서민생활 밀접품목 물가동향 및 대책」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 상시물가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매주 “물가안정 대책회의”(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 주요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물가동향 및 불안요인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하였음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대책회의

- 구성(13개 부처) : 재정부 1차관(주재), 농식품부 · 지경부 · 행안부 · 교과부 · 복지부 · 국토부 · 문화부 · 방통위 · 공정위 · 국세청 · 통계청 1급

서민물가 안정대책 주요 내용

-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 서민 체감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적인 물가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임

- ① **(농산물 수급안정)** 관측기능 보강, 계약재배 확대 등 농산물 수급 안정화와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
 - 배추 · 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업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적정 생산량 유지
 - * 관측주기 단축 : 월 1회 → 3회
 - 조사표본 확대 : 2,557 → 3,657호(1,100호 ↑)
 -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재정 등에서 1,000억원 수준 추가지원 추진
 - 단체급식 식재료의 전자조달 등을 통해 직거래를 확대하고,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정가 · 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

- ② **(가격정보 공개 확대)**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현재 연 1회 → 분기별)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 확대*

* (현재) 주유소별 단순가격만 제공 → (개선) 다음 주 석유제품 가격 전망, 주유소 형태별 가격 차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 분석정보 제공 (오피넷)

- ③ **(시장감시 강화)** 주부모니터단 등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실시

* 김장철을 맞아 배추, 육류,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표시 점검(12월)

④ (관세인하)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경쟁촉진 및 물가안정 유도

- 당초 금년 말 종료예정이던 화장품·세제·비타민(6.5 → 4%), 설탕(35 → 0%), 타이어(8 → 4%)의 관세인하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 유모차(8 → 0%), 아동복(13 → 8%), 스낵과자(8 → 6%), 식용유(5.4 → 4%), 밀가루(4.2 → 2.5%), 마늘(50 → 10%)에 대해서는 신규로 관세인하 추진(11.상반기)

* 할당관세 품목(안) : (10)57 → (11)67개

(최종 품목 및 세율은 12월중 발표)

⑤ (유통구조 개선)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유통단계별·업체별 유통구조를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세제·화장지 등 생활용품군, 유모차·기저귀 등 아동용품군, TV 등 가전용품군 등에 대해 유통단계 축소, 신유통채널 활성화 방안 등 마련

⑥ (서비스요금 안정화)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가격안정화 유도

- 중앙공공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여 안정기조를 강력히 견지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안정 유도

* 공공요금 안정 우수지자체에 특별교부금·포상금 지원 및 표창 실시

- 대학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 연계(대학등록금), 무료통화량 확대 및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통신비), 자동차 보험료 안정대책** 등을 추진

* 음성·데이터 조절요금제 출시 등

** 보험사 사업비 절감, 보험료율체계 합리화 등

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 예고

* 본 자료는 2010년 11월 25일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에서 발표한 「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0. 11. 29(월)입법예고*'를 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①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하거나 반복적으로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세관에 수입품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만,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자료제출 요구

- ②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의 경우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③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2개월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최종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고, 재료에 대하여는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에 대하여만 1년간 반복사용을 허용

- ④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자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수출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 제거

- ⑤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typing error)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함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이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FTA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참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1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시행령안 §10②)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은 소액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재량) *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 반복 수입하는 동종·동질물품 등 * (§10③)관세탈루의 우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이 소액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강행) * (§10③)관세탈루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요구

개정이유 소액물품, 반복수입물품 등의 경우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부담 완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2 수출신고필증 사본 제출 생략(시행규칙안 §6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수출신고필증 사본 제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수출신고필증 사본 제출 •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개정이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편의 도모

적용시기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 수출신고 분부터 적용

3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시행규칙안 §6의3)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확인서 및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로 구분 운용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가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수출자에게 제출 * 1회에 한해 사용 •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1차 생산자가 중간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2차 생산자에게 제출 * 12개월 반복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확인서로 통합 • 생산자가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제출 * 12개월간 반복사용 가능

개정이유 동일한 물품의 경우에도 용도(최종물품 또는 원재료)에 따라 상이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제거

적용시기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 수출신고 분부터 적용

4 원산지소명서 및 증빙자료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시행규칙안 §6)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오류 또는 흠 등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정을 요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의 경우 보정 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

개정이유 생산자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를 수출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 수출신고 분부터 적용

5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시행규칙안 §16⑤)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소명서 및 그 증빙자료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 가능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생산자가 원한다면 원산지 소명서 및 그 증빙서류를 세관 등에 직접 제출 가능

개정이유 경미한 오류(typing error)에 대해서는 보정 요구 없이 수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품목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본 자료는 2010년 11월 18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품목 확대」 3/4분기 추진상황 점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관세 감면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를 현행 83개에서 88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 2010. 11. 19 ~ 2010. 12. 9

-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한정

- 현재 태양광(43개) 및 연료전지용(20개) 기자재 등 83개 품목이 감면대상으로 지정되어 금년 1~9월 중 112억원의 관세감면을 받고 있음

※ 참고 :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2)

- ☞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가스 에너지, 수소에너지가 해당
-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이 해당

-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감면수요를 반영하여 6개 품목을 신규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1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임

- (신규추가 품목) 태양광(3개), 풍력(1개), 바이오(1

개), 폐기물에너지(1개) 관련분야의 핵심기자재 6개*를 감면대상으로 추가

* 태양광(도가니, 단열재, 흑연구조물) : 태양전지 제조용으로 서 태양전지의 국산화 및 제조기술 향상을 위해 추가

* 풍력(슬립링) : 국내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의 핵심 제어 설비로서 발전기 제조기술 확보 및 국제품질인증 등을 위해 추가

* 바이오(바이오가스 정제장치) : 매립지에서 발생한 메탄 등을 정제하여 자동차용 연료나 도시가스로 이용하는 장치로서, 국산화 및 제조기술 향상을 위해 추가

* 폐기물(재활용 고품연료 전용보일러) : 폐기물을 압착하여 성형한 고품연료(RDF, Refuse Derived Fuel)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폐기물 신기술 향상 및 화석연료 절감을 위해 추가

- (기존품목 제외)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1개 품목(태양전지 리본)을 제외하여 국내산업 보호

- 관세감면 대상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분야 기술개발과 녹색투자를 촉진하여, 국내 녹색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한편, 기획재정부는 금년 말로 일몰이 예정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1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은 축소*(대기업 20% → 10%, 중소기업 40%

→ 30%)하고,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하였음

* '10년 세계개편안 발표시 既발표된 내용임

참고 1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기자재에 대하여 관세(50%)를 감면(조특법 §118①③)
- 구체적인 감면대상 품목은 별도 규칙*으로 규정하며, 업계의 신청(지경부 경유)을 받아 매년 개정(현재 83개 품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2 제도 내용

- **(감면율)** 해당 관세액의 50%
- **(일몰기한)** 2011. 12. 31
- **(관세감면 신청절차)** 지경부장관이 신청인 및 품목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감면 대상 물품)** 관세감면 대상은 국내제작 곤란한 물품 중 조특법 관세경감 규칙 별표 제3호에서 정함

3 감면실적

(단위: 억원)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1~9
품목 수	26	26	39	52	52	81	83
감면액	19	6	39	44	135	216	112

참고 2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 대상품목 조정

■ 총괄

구분 \ 분야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	해양	폐기물	계
현행품목 수(A)	4	43	11	20	3	1	1	83
신규추가품목(B)	-	3	1	-	1	-	1	6
삭제품목(C)	-	△1	-	-	-	-	-	1
계(A+B-C)	4	45	12	20	4	1	2	88

■ 신규 추가품목(6개)

분야	품 명
태양광 에너지(3개)	도가니, 단열재, 흑연 구조물
풍력 에너지(1개)	슬립링
바이오 에너지(1개)	바이오가스 정제장치
폐기물 에너지(1개)	재활용 고품연료 전용보일러

■ 현행 감면품목 중 제외품목(1개) : 국내제작 가능

분야	품 명
태양광 에너지(1개)	태양전지 리본

참고 3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 개요

1 개요

- 제조업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관세법 §95①4)
- 구체적인 감면대상 품목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며, 업계의 신청을 받아 매년 개정(현재 260개 품목)

② 제도 내용

- **(감면율)** 해당 관세액의 20%(중소제조업체는 40%)
- **(일몰기한)** 2010. 12. 31
 * 이번 개정안에서 감면율은 10%p 축소하되 일몰을 1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계속 지원
- **(관세감면 신청절차)** 지경부장관이 신청인 및 품목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감면 대상 물품)** 관세감면 대상은 국내제작 곤란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4에서 정함

③ 감면실적

(단위: 개, 억원)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1~9
품목 수	503	475	506	505	344	312	260
감면액	1,225	1,211	1,109	885	1,018	709	545

OECD, 경제전망 발표

* 본 자료는 2010년 11월 18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에서 발표한 「OECD, 경제전망 발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OECD는 11, 18(목) 프랑시간 11:00 (한국시간 19:00)에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
 - * OECD는 매년 2회(5월경, 11월경)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

방리스크가 존재

- OECD 국가의 실업률은 10년 8.3%에서 11년 8.1%, 12년 7.5%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5.5%)을 상회할 전망

OECD 경제전망 주요 내용

1.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2011년 4.2%, 2012년 4.6%로 성장할 전망
 - OECD는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주춤한 상태 (soft-patch)로 평가하고, 2011년 세계경제, OECD 국가의 성장률을 5월에 비해 각각 0.3%p, 0.5%p 하향 조정
 - 재정정책의 효과가 소멸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자생력 있는 회복흐름이 아직 미약하여 최근 생산·무역의 성장세가 둔화
 - 다만 신흥국의 성장세 지속,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
 - 향후 경기에는 하방위험 요인이 상방위험 요인보다 큰 상황
 - 일부 OECD국의 재정위기 재부각, 외환시장의 긴장감 조성 등 하방리스크와 기업이익 증가 등의 상

OECD국가의 경제 전망(%)

	2010		2011		2012
	10. 5월	10. 11월	10. 5월	10. 11월	10. 11월
세계 GDP 성장률*	4.6	4.6	4.5	4.2	4.6
OECD국가	2.7	2.8	2.8	2.3	2.8
미국	2.61	2.7	3.2	2.2	3.1
유로	1.2	1.7	1.8	1.7	2.0
일본	2.5 ¹⁾	3.7	2.0	1.7	1.3
OECD 산출량갭	△3.8	△3.5	△2.6	△2.9	△2.1
OECD 실업률	8.5	8.3	8.2	8.1	7.5
OECD 물가상승률**	1.6	1.8	1.3	1.5	1.4
OECD 재정수지 (對GDP)	△7.8	△7.6	△6.7	△6.1	△4.7

주: 1) 10. 9월 전망 (9월 G7국가에 대해 수정전망을 발표)

* PPP환율 기준 **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2. 한국경제 전망

※ OECD 발표내용 중 한국경제 관련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원문 참고 바람

① (전망) 한국경제는 10년 6.2%, 11년 4.3%, 12년 4.8% 성장

* 10. 5월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 (10) 5.8% (11) 4.7%

- 10년 상반기 7.3%에 이르렀던 성장세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둔화
-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의 수요 둔화 등으로 3/4분기 들어 수출 증가가 둔화되고 산업생산과 기업투자 증가세도 주춤
- 10년 상반기 성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던 재고확충도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
- 주거용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가격도 소폭 하락
- 최근의 둔화 이후 11년 말 경에는 5%의 성장수준을 회복할 전망
- 최근 다소 위축되었으나 기업 및 소비심리가 긍정적으로 유지
- 경쟁력 강화로 인해 수출은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업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책 등에 힘입어 (+)로 전환될 전망
- 노동시장의 유희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민간소비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내수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09년 GDP의 5.2% 수준이던 경상수지 흑자는 10년에는 3%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② (평가 및 권고) 재정·통화정책의 정상화, 환율 절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이 필요

- 경제가 공급능력 제약(capacity constraints)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중기재정전략(2010~14)상의 정부지출 감축목표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금리도 정상화할 필요
- 환율절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중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
- 특히 생존불가능한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도록 확대되었던 중소기업 지원을 정상화

③ (위험요인) 대외적·대내적 위험요인이 상존

- 세계 8대 수출 국가인 한국은 세계경제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수출의 1/3 수준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와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
-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어서 금리 상승시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가능성
- 위기극복 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속도가 불확실성으로 잔존

한국 경제전망(%)

	2010		2011		2012
	10. 5월	10. 11월	10. 5월	10. 11월	10. 11월
• GDP 성장률	5.8	6.2	4.7	4.3	4.8
- 민간소비	3.8	4.3	4.0	4.6	5.0
- 총고정자본 형성	6.7	7.9	5.0	5.7	5.3
- 수출	11.1	14.3	12.6	12.8	13.5
(순수출)*	△1.0	△1.3	0.7	0.0	0.1
• 실업률	3.6	3.7	3.3	3.4	3.3
• 소비자물가	3.0	2.8	3.2	3.2	3.4
• 경상수지 (對 GDP)	1.7	3.0	1.6	2.3	2.4

* 순수출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

OECD Economic Outlook: 주요국의 성장 전망

	2010년		2011년		2012년
	10. 5월	10. 11월	10. 5월	10. 11월	10. 11월
세계경제	4.6	4.6	4.5	4.2	4.6
미 국	2.6 ¹⁾	2.7	3.2	2.2	3.1
유 로	1.2	1.7	1.8	1.7	2.0
일 본	2.5 ¹⁾	3.7	2.0	1.7	1.3
독 일	3.01 ¹⁾	3.5	2.1	2.5	2.2
프 랑 스	1.3 ¹⁾	1.6	2.1	1.6	2.0
이탈리아	0.7 ¹⁾	1.0	1.5	1.3	1.6
영 국	1.7 ¹⁾	1.8	2.5	1.7	2.0
캐 나 다	3.1 ¹⁾	3.0	3.2	2.3	3.0
한 국	5.8	6.2	4.7	4.3	4.8
브 라 질	6.5	7.5	5.0	4.3	5.0
중 국	11.1	10.5	9.7	9.7	9.7
인 도	8.3	9.9	8.5	8.0	8.5
러 시 아	5.5	3.7	5.1	4.2	4.5
OECD	2.7	2.8	2.8	2.3	2.8

주: 1) 10. 9월 전망 (9월 G7국가에 대해 수정전망을 발표)

| 재정통계 |



■ OECD 국가의 총 총조세 세입 변동 추이

1. OECD 국가의 총 총조세 세입 변동 추이

구 분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호주	7.25	10.62	11.76	14.55	11.49	14.25	9.56	27.35	29.28
오스트리아	11.19	6.04	7.59	10.62	11.95	13.88	15.67	13.89	17.01
벨기에	14.73	9.34	9.54	11.49	12.53	13.28	11.45	17.29	20.23
캐나다	15.47	11.74	13.10	18.21	6.66	9.20	14.25	16.63	26.86
체코	-	-	-	-	-	-	-	-	-
덴마크 ¹⁾	19.33	11.73	21.32	12.72	24.95	19.11	13.25	13.38	16.87
핀란드	11.29	12.73	16.08	9.09	15.64	15.51	18.30	24.69	23.30
프랑스 ¹⁾	7.62	9.19	9.41	17.12	9.29	9.65	13.07	14.62	16.97
독일	8.31	1.33	7.73	17.88	9.95	12.75	14.11	16.31	7.82
그리스	19.76	13.17	12.67	13.68	10.37	10.00	15.02	20.21	20.47
헝가리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아일랜드	13.82	11.41	14.58	18.24	17.92	18.52	15.70	21.45	12.27
이탈리아	7.43	14.19	11.59	7.89	11.48	11.87	9.16	10.05	32.94
일본 ²⁾	14.08	20.15	19.89	20.56	21.30	11.77	20.44	31.29	21.42
한국	-	-	-	-	-	-	-	24.92	56.24
룩셈부르크	4.07	3.14	5.78	16.50	19.59	11.39	15.08	23.23	25.98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13.56	12.92	13.10	14.20	14.94	18.17	15.50	18.22	15.00
뉴질랜드	7.62	4.65	3.03	11.36	21.23	18.16	13.21	22.72	19.8
노르웨이 ¹⁾	12.20	15.63	9.96	13.06	15.43	20.54	16.76	14.77	14.63
폴란드	-	-	-	-	-	-	-	-	-
포르투갈	12.78	16.33	10.97	13.99	24.82	10.42	14.99	18.92	23.15
슬로바키아 ¹⁾	-	-	-	-	-	-	-	-	-
스페인 ¹⁾	7.57	40.62	7.27	17.14	13.26	14.75	23.90	24.60	18.44
스웨덴	11.16	11.48	12.22	11.41	11.79	10.35	13.17	9.08	16.22
스위스	11.40	7.67	11.65	14.07	12.33	11.91	15.51	22.83	12.64
터키	19.93	19.17	9.54	19.99	19.54	42.12	21.72	30.65	26.63
영국	9.15	11.50	12.43	13.07	12.67	5.70	6.48	8.37	24.19
미국	11.4	12.10	4.82	19.60	5.84	0.73	12.32	11.40	11.68
OECD TOTAL ³⁾	11.79	12.47	11.13	14.63	14.56	14.09	14.72	19.04	21.25
OECD AMERICA ³⁾	13.43	11.92	8.96	18.90	6.25	4.97	13.29	14.02	19.27
OECD PACIFIC ³⁾	9.65	11.81	11.56	15.49	18.01	14.73	14.40	26.57	31.69
OECD EUROPE ³⁾	11.96	12.65	11.30	14.01	14.91	15.00	14.94	17.92	19.15
EUROPEAN UNION (15) ³⁾	11.45	12.34	11.48	13.67	14.74	13.02	14.32	16.95	19.39
EUROPEAN UNION (19) ³⁾	11.45	12.34	11.48	13.67	14.74	13.02	14.32	16.95	19.39

(단위: %)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20.48	16.24	8.63	9.05	16.23	17.96	16.18	9.65	9.67	16.86	10.96	12.86
7.58	10.06	11.59	11.97	8.00	8.76	9.53	4.16	5.69	9.58	7.29	5.07
18.41	14.26	13.46	8.91	8.93	4.46	5.54	11.43	7.71	9.84	6.57	4.05
10.77	12.49	7.04	10.49	13.66	15.92	20.83	4.16	7.90	8.90	7.53	7.75
-	-	-	-	-	-	-	-	-	-	-	-
4.43	16.72	12.10	15.54	14.16	9.86	8.93	11.79	15.29	12.99	11.73	12.52
25.38	24.47	10.24	1.36	11.65	16.24	19.35	9.88	10.49	16.56	13.55	10.72
17.11	21.61	12.55	13.49	18.61	17.37	13.19	17.13	12.37	11.42	7.47	6.66
3.06	11.50	10.69	6.68	7.76	7.09	3.08	3.25	4.49	5.31	5.59	4.61
23.30	35.19	18.81	21.78	28.63	16.78	20.63	41.95	21.32	27.23	22.06	25.44
-	-	-	-	-	-	-	-	-	-	-	-
-	-	-	-	-	-	61.51	58.40	58.56	37.89	29.90	33.38
26.51	36.03	16.73	12.20	15.75	29.20	25.58	22.95	15.14	13.49	5.18	8.42
15.88	30.50	23.84	18.33	18.57	42.00	24.48	26.30	23.35	11.54	10.59	15.67
0.26	16.94	13.70	18.01	9.91	13.45	9.32	6.31	6.32	7.36	8.16	7.35
51.66	49.34	28.08	38.48	31.15	22.99	23.79	16.56	20.27	8.47	9.37	13.95
10.50	15.70	13.84	11.41	1.94	11.54	9.48	15.79	15.99	6.67	8.90	4.20
-	-	-	-	-	-	33.33	62.84	103.58	60.24	56.84	59.43
13.61	13.72	10.81	9.56	7.28	8.46	3.36	5.07	6.29	1.07	4.32	4.63
11.90	20.38	19.78	8.43	20.04	17.24	24.55	14.97	3.53	13.58	19.05	21.81
14.91	18.23	14.72	8.97	9.97	23.10	18.56	8.71	7.89	10.58	14.71	7.85
-	-	-	-	-	-	-	-	-	-	-	-
22.34	34.97	36.17	21.49	24.27	39.28	26.43	26.42	31.51	19.86	22.76	32.39
-	-	-	-	-	-	-	-	-	-	-	-
26.75	20.27	39.38	29.93	19.80	18.93	18.35	16.40	22.94	18.45	10.50	21.97
20.3	24.22	13.90	12.36	9.18	13.17	12.42	7.07	13.74	11.22	9.83	14.66
7.01	7.04	3.49	3.76	2.74	6.45	7.69	7.34	5.37	21.28	-7.97	9.21
46.44	29.93	33.61	45.29	65.29	109.1	60.04	28.61	23.7	31.98	71.84	65.25
29.21	17.70	14.64	9.90	14.89	27.55	14.45	16.53	4.72	7.72	9.51	9.00
6.63	8.34	16.88	11.84	12.62	10.29	14.00	4.60	0.16	11.56	9.91	5.43
18.10	21.08	16.86	14.97	16.29	21.13	19.41	17.63	17.62	15.83	14.85	16.32
8.70	10.41	11.96	11.17	13.14	13.10	22.72	23.87	37.22	26.90	24.76	24.20
21.07	25.73	17.55	18.49	19.33	17.91	18.46	11.87	9.95	11.57	11.88	13.99
18.49	21.23	17.25	14.61	15.97	22.74	19.08	17.85	16.14	14.98	13.91	15.56
17.63	21.80	17.25	13.66	13.96	18.05	14.32	15.74	14.07	12.20	10.39	12.00
17.63	21.80	17.25	13.66	13.96	18.05	14.32	15.74	14.07	12.20	10.39	12.00

1. OECD 국가의 총 총조세 세입 변동 추이 <계속>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호주	13.79	12.11	8.78	2.97	-3.30	2.86	6.93	9.79	9.69
오스트리아	2.85	4.88	4.25	8.42	8.47	9.72	4.31	5.02	2.42
벨기에	5.54	3.82	3.85	7.18	5.33	3.93	6.57	6.09	3.68
캐나다	13.39	7.20	10.03	5.46	2.66	1.31	2.56	6.06	4.94
체코	-	-	-	-	-	-	-	11.67	12.60
덴마크 ¹⁾	6.53	4.72	3.04	0.66	2.53	4.60	3.59	9.47	4.55
핀란드	3.93	22.66	10.86	9.40	-1.01	-3.49	-0.07	10.8	6.16
프랑스 ¹⁾	6.45	5.98	7.06	5.70	4.58	2.60	1.43	4.74	3.69
독일	4.02	4.48	7.72	4.55	21.61	10.05	2.93	5.68	3.92
그리스	14.64	9.79	15.19	32.51	24.00	19.40	14.52	14.53	16.08
헝가리	-	-	-	-	-	17.10	22.86	16.34	22.71
아이슬란드	31.73	34.05	23.63	14.83	9.38	2.64	-0.31	4.73	5.09
아일랜드	7.50	12.28	1.72	6.36	5.60	7.30	8.00	11.05	4.44
이탈리아	9.68	12.88	12.75	13.60	10.43	11.71	7.19	0.75	7.61
일본 ²⁾	9.31	8.56	8.38	5.76	3.57	-3.55	-0.19	-1.99	4.25
한국	20.07	19.1	19.05	32.20	18.54	13.84	15.86	19.28	17.75
룩셈부르크	4.59	7.41	11.60	8.68	3.61	7.76	18.40	8.11	4.66
멕시코	159.62	94.74	36.71	35.58	28.04	21.23	11.83	10.24	25.00
네덜란드	6.47	4.19	-0.18	5.85	11.18	3.43	3.32	0.41	1.70
뉴질랜드	23.25	6.01	14.19	-0.71	-3.77	4.32	8.78	8.56	6.54
노르웨이 ¹⁾	4.73	3.47	2.35	7.17	5.68	0.78	2.87	8.41	7.57
폴란드	-	-	-	-	-	46.00	50.47	37.59	34.15
포르투갈	10.35	27.66	20.64	18.51	19.43	20.54	0.09	11.30	13.37
슬로바키아 ¹⁾	-	-	-	-	-	-	-	-	-
스페인 ¹⁾	18.81	11.85	18.47	10.68	10.60	11.10	0.48	6.46	5.50
스웨덴	14.01	7.74	11.96	10.59	2.79	-5.37	-1.42	7.32	10.46
스위스	2.67	7.35	4.82	7.14	3.62	3.94	4.19	4.44	3.65
터키	56.99	63.62	84.57	85.40	68.01	85.44	83.2	91.49	103.57
영국	6.29	11.75	8.03	8.75	1.66	1.27	1.78	7.73	9.52
미국	10.58	6.96	8.52	8.63	2.32	5.13	5.94	7.78	5.88
OECD TOTAL ³⁾	17.99	15.97	13.77	13.69	10.21	10.91	10.22	11.86	12.45
OECD AMERICA ³⁾	61.20	36.30	18.42	16.55	11.01	9.22	6.78	8.03	11.94
OECD PACIFIC ³⁾	16.60	11.45	12.60	10.06	3.76	4.36	7.85	8.91	9.56
OECD EUROPE ³⁾	11.46	13.71	13.28	14.00	11.45	12.40	11.16	12.91	13.05
EUROPEAN UNION (15) ³⁾	8.11	10.14	9.13	10.10	8.72	6.97	4.74	7.30	6.52
EUROPEAN UNION (19) ³⁾	8.11	10.14	9.13	10.10	8.72	9.86	8.50	9.72	9.29

주: 1) 덴마크 1990, 프랑스 1992, 노르웨이 2000, 슬로바키아 1998, 스페인 2000년부터 자본이전은 총세입에서 제외.

2) 2005년 일본은 중앙정부의 수치만 나타냄.

3) 단순평균 기준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7.63	4.96	8.26	7.98	8.93	1.53	9.42	8.04	8.27	6.80	7.40	8.90
6.83	5.35	3.96	3.18	2.97	7.22	0.18	1.60	3.60	2.20	4.10	6.40
2.73	5.90	5.31	3.75	5.05	2.90	3.53	1.70	5.80	4.30	4.20	4.10
5.05	7.66	3.61	7.78	6.59	-0.96	2.60	4.10	6.80	5.90	4.90	5.00
10.02	8.71	5.84	7.07	3.71	8.41	6.70	7.52	10.6	5.40	6.40	10.60
5.68	4.81	4.12	5.96	5.07	1.30	1.49	2.40	6.66	9.30	2.70	1.60
6.36	6.73	8.37	4.09	11.15	-0.13	2.97	0.00	3.12	4.40	5.10	6.40
5.64	3.81	4.10	5.50	3.54	3.12	1.88	2.50	4.78	5.00	5.30	3.50
-0.39	1.17	3.26	4.29	2.73	-0.51	-0.46	1.15	0.08	1.50	5.90	6.10
36.43	-6.37	14.82	9.55	11.79	3.83	10.71	5.10	4.41	7.30	7.90	9.80
17.96	18.78	17.43	13.75	15.41	12.79	12.13	9.26	9.50	5.60	7.50	14.20
11.21	7.67	22.96	15.25	8.26	7.40	4.16	7.20	13.54	18.40	16.20	9.70
10.48	13.3	13.89	16.18	15.96	4.35	6.11	9.20	11.40	10.50	12.90	4.50
10.47	7.94	0.54	5.23	5.05	4.05	2.23	4.18	2.33	2.20	6.80	6.80
2.31	2.28	-3.29	-2.59	3.58	-1.18	-4.69	-0.98	3.26	5.20	3.70	2.30
16.00	14.55	-1.06	11.68	19.79	9.85	11.46	10.01	4.42	7.90	9.80	13.90
5.91	8.87	6.21	11.01	13.06	3.95	4.76	4.40	4.00	11.00	7.10	9.50
38.02	31.27	14.95	24.97	27.38	7.43	3.79	15.99	11.48	14.00	12.90	6.40
3.26	6.85	1.35	9.30	6.99	3.10	2.10	0.90	4.05	7.90	6.30	1.30
-0.63	3.14	-1.76	6.10	7.29	4.43	9.82	7.32	9.58	10.70	4.30	3.40
9.43	10.07	4.13	9.55	19.23	4.47	0.30	2.00	12.00	12.20	12.20	4.60
25.05	18.84	14.73	3.54	9.07	11.25	6.02	2.64	7.50	10.90	9.70	13.70
9.35	8.62	9.48	10.32	7.79	4.72	7.06	2.86	1.40	6.10	7.00	7.70
-	-	-	0.99	5.97	4.58	9.92	9.80	6.20	8.50	4.30	11.80
5.17	9.63	8.19	10.43	8.82	6.67	8.35	7.42	8.89	11.50	10.60	8.60
6.52	6.61	5.27	6.33	8.37	-0.73	0.26	4.69	5.13	5.80	5.10	4.00
2.39	0.08	6.28	2.51	9.61	0.21	2.08	-1.37	1.75	4.00	6.40	4.60
114.39	114.02	84.43	63.34	66.32	55.75	37.58	36.70	14.10	17.00	18.10	9.20
5.21	7.79	9.46	6.44	6.83	3.96	0.84	5.26	7.08	6.90	8.10	4.40
7.39	7.91	7.32	6.48	7.78	-0.44	-5.17	2.40	7.30	12.20	8.90	5.10
13.30	11.76	9.73	9.67	11.14	5.78	5.27	5.80	6.66	8.00	7.70	6.90
16.82	15.61	8.63	13.08	13.91	2.01	0.41	7.50	8.50	10.70	8.90	5.50
6.33	6.23	0.54	5.79	9.90	3.66	6.50	6.10	6.38	7.60	6.30	7.10
14.09	12.24	11.55	9.89	10.99	6.64	5.69	5.50	6.50	7.70	7.80	7.10
7.97	6.07	6.55	7.44	7.68	3.19	3.47	4.30	5.60	6.60	6.70	7.10
9.59	7.63	7.57	7.21	7.86	4.47	4.57	3.60	4.90	6.40	6.60	5.60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가족친화 중소기업에 법인세 4% 감면해야

● '가족친화 일터만들기' 토론회

“기업들은 가족친화경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감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4% 감면혜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족친화적 일터 만들기'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여건을 정부가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법인세 감면...가족친화제도 확산 유도”

전문가들은 가족친화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에 단순히 가점을 주는 정도로는 기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점 대신 성실하게 가족친화 정책을 펴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4%를 감면해 주는 등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을 통해 지난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들 기업이 가족친화 직장을 조성하는 데 쓴 평균 비용은 56억원으로 법인세의 6.7% 수준”이라며 “이들 중 비율이 4%인 기업이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면율을 4%로 잡는 것이 적절

하다”고 설명했다.

◆ “지도층이 가족친화 보여 줘야”

토론자들은 발표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의 홍보강화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탄력근무제 ·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진 대기업, 공기업이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소홀할 경우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정부 지원이 인증기업에 국한되기보다 일반 기업도 가족친화적 비용을 지출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2010-12-03일자)

준조세 32조 · 기부금 3조 넘어...경쟁력 발목

지난해 준조세 법인세의 94%
부담금 11.5조 · 사회보험 20.7조
대기업 “기부금 17%는 강제적”
일부 부담금 조세로 전환해야

◆ 준조세 부담 과중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법인세에 맞먹는다는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준조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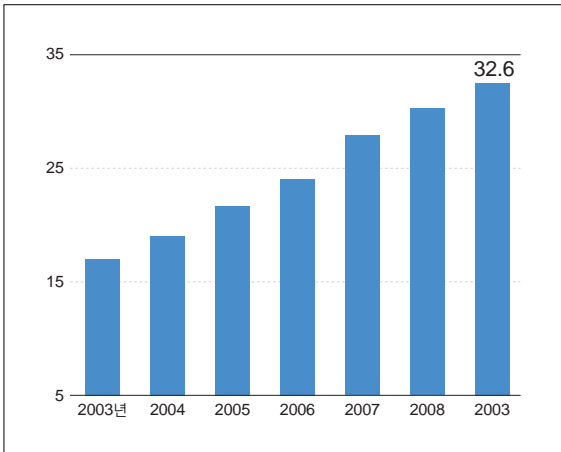
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기업들이 내는 기부금이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조세연구원은 준조세에 △사회보험료 △각종 부담금 △비자발적 기부금 등을 포함시켜 규모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 각종 부담금 부과 부가금 예치금 기여금 기금출연금 등을 아우르는 부담금은 지난해 11조5477억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부담금 납부에 따른 비용처리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얻는 이익을 감안해 산출했다.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효과까지 고려해 계산한 결과 20조71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비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부금(943억~3573억원)까지 더하면 준조세 규모는 지난해 최대 32조 6217억원에 이른다. 국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징수액은 34조854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법인세 징수액 대비 준조세(비자발적 기부금 포함) 비중은 지난해 93.59%에 달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준조세

(단위: 조원)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 비자발적 기부금도 많아

기부금(3조4007억원)은 조세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완전 강제적’ ‘다소 강제적’ ‘중립적’ 등 비자발적 성격

이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다. 법정기부금에서는 18.2%, 특례기부금에선 12.2%, 지정기부금에선 11.3%가 자발적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법정기부금과 관련해 20.0%가 비자발적이라고 밝혔으며 금융업(9.6%) 도소매업(12.5%) 제조업(10.0%) 등에서도 ‘강요를 받아 기부금을 내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았다. 법인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17.0%, 중소기업의 11.3%가 강제성이 있다고 응답해 대기업의 기부금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세 전문가는 “각종 국가 행사를 앞두고 기업들이 내보내는 공익적 성격의 광고 등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기부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같은 기부금은 준조세로 분류돼야 할 만큼 강제성이 강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조세전환 등 개선 필요

조세연은 준조세 전부를 개선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준조세를 내는 만큼 기업이 수혜를 받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기부금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2조3822억원으로 추정되는 부담금은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건강증진 부담금은 원래 취지에 맞는 국민건강증진사업 외에 건강보험재정에도 절반 이상이 쓰이고 있는 만큼 부담금 형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업에 써야 하기 때문에 부담금보다는 조세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가 부과 대상으로 돼 있는 등 모호한 측면이 있어 역시 환경세 형태로 바꾸는 게 낫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손원익 조세연 연구위원은 “부담금을 조세로 바꾸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명확한 부과가 가능하고 지출 역시 예산의 틀 안에서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2010-12-02일자)

조세연구 “2005년 부가세 탈루비율 9.4%”

2005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비율이 9.4%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21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추정’이란 보고서에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과세대상 소비지출을 계산한 결과 200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38조6천억원이며 이를 토대로 산출한 세액은 39조8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2005년에 실제 징수된 부가세 수입은 36조 원으로 산출세액과의 차이인 3조8천억원이 탈루 규모이며 탈루 비율은 9.4%라고 밝혔다. 또 같은 방식으로 2000년의 부가세 탈루 규모를 추정한 결과 산출세액은 27조8천억원이지만 실제 부가세 수입은 23조2천억원으로 탈루 규모는 4조6천억원, 탈루 비율은 16.8%로 계산됐다.

연구원은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추정한 부가세 탈루 비율은 1980년에 15%, 1985년 19%, 1990년 14%, 1995년 14% 등으로 부가세 탈루 비율은 2000년에 약간 상승했다가 2005년에는 9.4%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표〉 부가세 탈루 규모 및 탈루 비율

(단위: 십만원)

	2000	2005
추정한 부가세 과세표준(A)	306,784	438,634
추정한 부가세 산출세액(B)=(A/1.1)*0.1	27,890	39,876
실제 부가세 세수 규모(C)	23,212	36,119
탈루 규모(B-C)	4,678	3,757
탈루 비율(B-C)/B	16.8%	9.4%

연구원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현금영수증제도 등 현금거래 등에 따라 과세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세원을 양성화한 정책에 따라 부가세 탈루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원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세 탈루 규모

추정은 국민소득통계에 포착된 경제에 한정돼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불법적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0- 11- 21일자〉

〈기고〉 세율인하가 반드시 稅收 감소는 아니다

원윤희(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세수 단기 감소할 수 있지만 세율인하 따른 가격효과로 창업·투자 등 경제활동 촉진돼 장기적으로는 세수증가 기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세율 인하의 세수 효과이다. 즉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각종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수를 위축시키는 세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 전제는 세율 인하가 바로 세수 감소로 연결된다는 것인데, 이는 단기적인 시계 아래에서 세율 인하의 일차적인 결과에 초점을 둔 것이다. 세율 인하는 과세 대상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나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경제활동 촉진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무행정의 과학화 등을 통한 세수 기반 확충과 공정성 제고 등 제반 정책목표들을 동시에 포함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수 효과도 그 종합적인 결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는 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기본 방향에

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서 이 기간 세수 변화 모습은 현재의 논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이다.

1981년 40%이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5년 30%, 그리고 2010년에는 22%로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이러한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981년 1.8%에서 1995년 2.3%, 그리고 2008년에는 4.2%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81년 56%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08년 이후에는 15%로 유지되고 있는데 1981년 1.8%이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08년 1.9%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변화의 장·단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56%이던 최고세율이 50%, 40%, 20%, 15% 등으로 인하는 과정에서 인하 첫 해에 하락하던 세수 비중이 몇 년 후에는 다시 원래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소득세를 살펴보면 1981년 17개 과세 구간에 최고 62%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1989년에는 8개 구간 50%, 그리고 2005년에 4개 구간 35%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소득세 세수는 역시 크게 증가하였는데,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1981년 2.0%에서 1989년 2.8%, 그리고 2008년에는 4%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1년 70%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이 2008년에는 35%로 인하되었는데, GDP 대비 세수 비중은 10.7%에서 10.2%로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같은 기간 영국도 세율은 60%에서 40%로 인하되었지만 세수 비중은 10.7%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세율은 75%에서 40%로 인하되었지만 세수 비중은 6.5%에서 5.7%로 약간 하락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세율 인하가 바로 세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세수는 세율 인하에 따라 단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세

율 인하에 따른 가격효과로 인해 노동이나 개인기업 창업, 그리고 기업투자 등 제반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성장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다. 세수의 경우 이러한 세율 인하의 장·단기 효과는 물론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무행정의 과학화 등을 통한 세원 확충, 그리고 기타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른 세수 변화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재정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고 또 저출산 고령화 등 제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보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2010-11-18일자)

재정포럼

2010년 12월호 통권 제174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10년 12월 15일 발행 / 제15권 제12호(통권 제17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